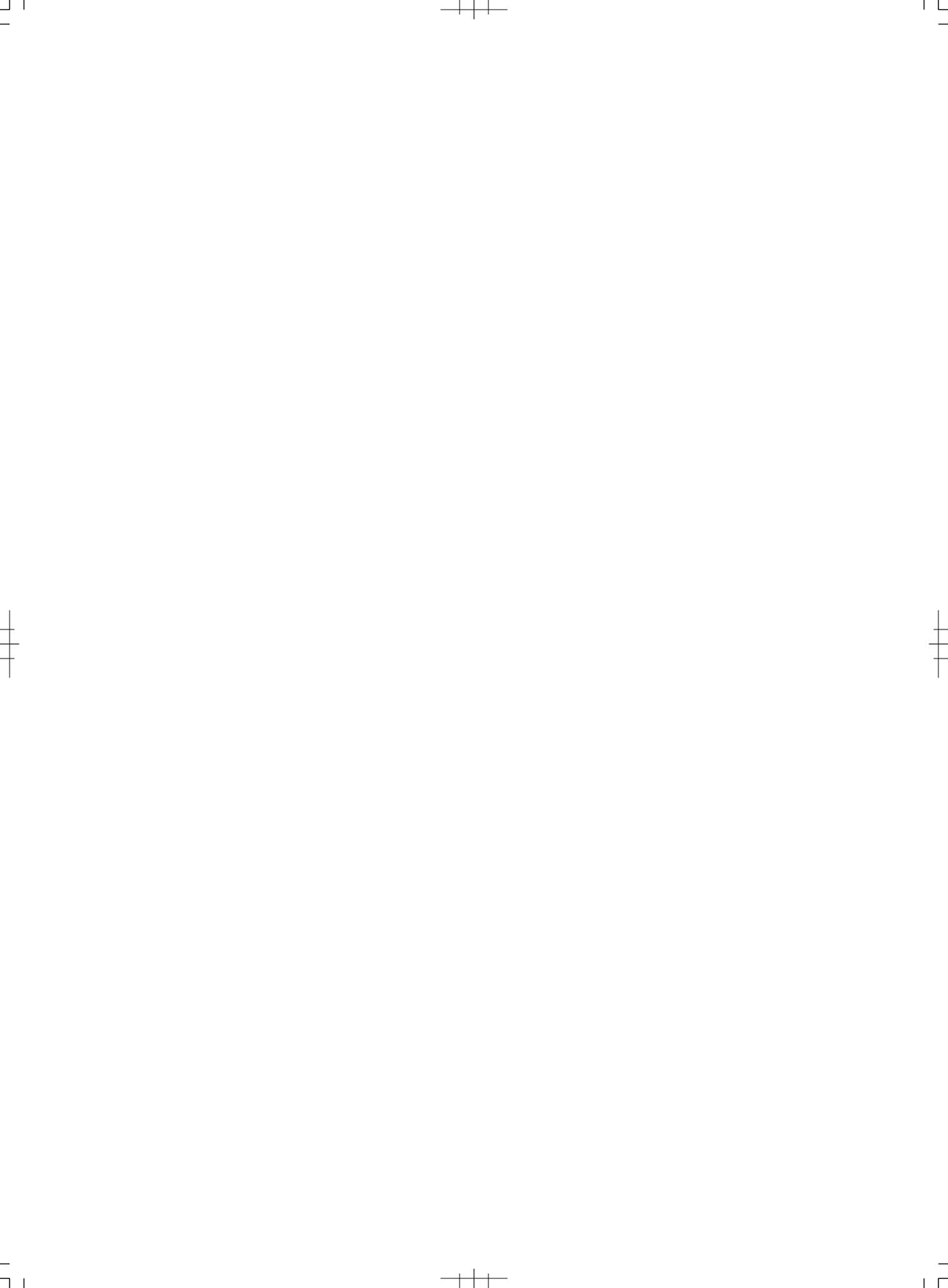


II



중국 수입제도



1 농산물 수출입정책

가. 농산물무역 촉진자금

-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경공업품, 방직품 무역촉진자금 임시시행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8년 농산물무역 촉진자금에 관한 관련 규정을 2008년 340호 문건으로 발표

1) 지원표준

-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농산물무역 촉진자금은 프로젝트 실제 투자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지역의 촉진자금은 50%를 초과하지 않음
- 산업 공공기술 플랫폼에 대한 지원자금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출농산물 품질추적 체계에 대한 지원자금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 각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도시, 신강생산건설병단)에서 신청한 지원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출산업조직, 중앙기업에서 신청한 지원자금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함

2) 신청서류

- 농산물무역 촉진자금 신청서
- 신청업체가 취득한 관련 인증인가문건
- 신청업체 영업집조 부분 복사본
- 신청업체의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복사본)
- 중개기구에서 회계감사를 한 2006년, 2007년도 재무보고서
- 프로젝트 자금 실제 지급 증빙
- 기타 제공해야 하는 신청증명서류

3) 비준절차

- 상무부는 재정부와 회동하여 “농산물, 경공업품, 방직품 무역촉진자금 임시시행 관리방법”과 “2008년도 농산물무역 촉진자금 신청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지원 자금을 확정하고 재정부는 관련된 성급 재정부서에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지급
- 지방기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성급 상무부서의 검수에 합격한 후에 동급 재정부서에 지원자금의 조달지급을 비준할 것을 신청하고 중앙기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대외무역발전사무국의 검수에 합격한 후에 재정부에 지원자금의 조달지급을 심사할 것을 신청함
- 검수업무는 2009년 4월 30일 전에 완료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검수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구체적 검수규정을 별도로 발급

나. 수출입 식품업체 등록제도

1)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제9조 : “화물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반드시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그 위탁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와 대외무역 주관부서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 구체적 등록방법은 대외무역 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대외무역경영업체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방법」 제4조 : “대외경영업체 등록업무에 대해 전국 네트워크와 속지화 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조건에 부합되는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서에 위탁하여 관할지역 대외무역경영업체 등록수속을 처리하며 위탁을 받은 등기기구는 기타 기구에 등록하도록 위탁하지 못한다.”

2) 등기절차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를 다운로드하거나 소재지 등록기구로부터 수령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모든 사항의 정보를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에 기입하며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동시에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 뒷면의 조항을 열람하며 법인대표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인하고 날인
- 등록기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
 -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공인)
 - 조직기구대마중 원본 및 복사본(공인)
 - 외상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및 복사본도 제출
 - 공상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독자경영자)는 공증기구의 재산공증증명을 제출
 - 공상등기를 한 외국기업은 공증기구의 자금신용증명을 제출
- 등록기구는 대외무역경영업체가 제출한 상기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에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함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등록인장을 날인한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를 30일 내에 소재지 세관, 검험검역, 외환관리, 세무 등 부서에 제출하여 대외무역업무와 필요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는 자동으로 실효됨

가. 화물 수출입 관리제도

1) 개요

- 국제적으로 수출입 관리제도는 관리대상에 따라 수입무역관리제도와 수출무역관리제도로 분류하며, 관리방법에 따라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분류
- 중국은 관리대상에 따라 화물수출입 관리제도, 기술수출입 관리제도, 국제서비스 관리제도로 분류
-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는 각종 제도, 조치, 세관 감독관리와 기타 관련제도로 구성된 종합적 관리제도로서 주로 세관 감독관리제도, 관세제도, 화물기술 수출입 허가증제도,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출입국 검험검역제도, 수출입화물 외환관리제도 등을 포함

2) 화물·기술 수출입 허가관리제도

- 화물·기술 수출입 허가관리제도의 관리범위는 수출입금지 화물과 기술, 수출입제한 화물과 기술, 자유수출입 기술 및 자유 수출입에서 일부 자동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포함

(1) 수출입 금지화물 관리

- 수출입 금지화물관리는 국무원 상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금지화물과 기술의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

【 수출입 금지화물의 관리 】

| 구 분 | 관리상품 |
|---------|---|
| 수입 금지화물 | - “수입금지 화물목록” 에 포함된 상품 - 국가 관련 법규에서 수입금지를 규정한 상품 |
| 수입 금지기술 | - “대외무역법”,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및 “수입금지와 수입제한 기술관리방법” 에 의해 확정된 수입금지 기술목록 |
| 수출 금지화물 | - “수출금지화물목록” 에 포함된 상품 - 국가 관련 법규에서 수출금지를 규정한 상품 |
| 수출 금지기술 | - “대외무역법”,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및 “수입금지와 수입제한 기술관리방법” 에 의해 확정된 수출금지 기술목록 |

(2) 수출입 제한관리

- 수출입 제한관리는 국무원 상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제한화물과 기술의 목록을 제정, 조절 및 발표

【 수출입 제한화물의 관리 】

| 구 분 | 관리방법 |
|---------|---|
| 수입 제한화물 | - 허가증관리 : 수입허가증, 멸종위기 물종, 이용 가능한 폐기물, 약품, 음향제품, 황금과 황금제품 - 관세할당관리 : 관세할당 세율로 관세징수 |
| 수입 제한기술 | - 허가증관리 |
| 수출 제한화물 | - 수출할당관리 : 수출할당 허가증관리, 수출할당 입찰관리 - 수출비할당관리(허가증관리) : 수출허가증, 멸종위기 물종, 민감한 물품 및 군용물 등 |
| 수출 제한기술 | - 허가증관리 |

(3) 자유 수출입관리

- 금지 및 제한 수입화물과 기술을 제외한 기타 화물과 기술은 모두 자유수입범위에 속하며, 일부 자유수입화물에 대해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진행하고 자유 수출입기술에 대해 기술수출입계약 등기관리를 진행

- 화물 자동수입 허가관리 : 수입업체가 수입하기 전 주관부서에 자동수입허가를 신청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서의 “자동수입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수속을 밟음
-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 : 자유 수출입 기술은 국무원 대외경제 주관부서에 계약등기를 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기술수출입계약을 등기하여 “기술수출입계약등기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기술수출입계약등기증”을 제출하여 외환등기,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밟음

3)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1) 관리제도

- 수출입업체는 수출입경영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하여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후에 허용된 범위에서 수출입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 구체적 등록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하며, 수출입업체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하지 않음

(2) 국영무역 관리

- 일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연관되는 중요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 관리를 진행하거나 일정한 기간에 일부상품에 대해 국영무역 관리를 진행
- 국영무역 관리를 시행하는 화물과 경영업체 목록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

4) 출입국 검험검역제도

(1) 직책범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가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목록”(약칭 : 법정검험목록)을 발표 및 조절하며, 법정검험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강제성 검험을 진행
- 수출입계약에서 약정하거나 수출입상품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검험검역을 신청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위탁접수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을 진행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법정검험 외 수출입상품에 대해 샘플링방식으로 감독 관리를 진행
-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과 연관되거나 가치가 비교적 높거나 기술이 복잡하거나 환경과 위생 및 전염병 표준과 연관되는 중요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반드시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 사전검험, 감독을 진행하며 화물 도착 후의 최종 검험과 배상청구의 조항을 약정해야 함

(2) 출입국 검험검역제도의 구성

- 출입국 검험검역제도는 수출입상품 검험제도, 출입국동식물 검역제도, 국경위생 감독제도를 포함

【 출입국 검험검역제도 】

| 구 분 | 관련법규 | 관리대상 | 관리방법 |
|----------------|------------------------|--|---|
| 수출입상품 검험제도 |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중량, 포장 | 법정검험, 계약검험, 공정 감정, 위탁검험 |
| 출입국동식물 검역제도 | 출입국동식물검역 법 및 그 실시조례 | 출입국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 | 입국검역, 출국검역, 중계 검역,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출입국 운송 공구 검역 등 |
| 국경위생 감독제도 |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 기, 항구 관할구역 공공장소, 환 경, 생활시설, 생산설비 | 출입국검역, 국경전염병검사, 출 입국위생감독 등 |

5) 수출입화물 외환관리제도

(1) 수출화물 외환회수 관리

-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수출외환확인서”를 수출화물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하며, 외환관리부서는 세관에서 의견을 제출한 “수출외환확인서”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외환회수확인서 페이지 및 그 관련 전자데이터에 의해 외환회수를 확인

(2) 수입화물 외환송금 관리

- 수입업체는 수입외환을 송금하기 전 송금은행에 “무역수입 외환송금 확인서”를 신청취득한 후 외환을 송금
- 화물이 수입된 후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외환송금 증명 페이지” 및 그 관련 전자데이터를 국가외환관리국이 지정한 은행에서 외환송금 확인을 처리

6) 대외무역 구제제도

- 중국은 2001년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WTO는 회원국이 수입제품의 덤핑, 보조와 가격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줄 경우에 반덤핑, 반보조와 보장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함

【 중국 대외무역 구제제도 】

| 구 분 | 실시조건 | 적용대상 | 실시형식 | 실시기간 |
|-------|-------------------------------|----------------|--------------------------|---------------------------|
| 반덤핑조치 | 저가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 | 불공정무역 불공평경쟁 | 현금보증금, 가격승낙, 보증서, 반덤핑 관세 | 임시반덤핑 : 4-9개월 최종반덤핑<5년 |
| 반보조조치 | 정부보조로 가격우위를 형성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 | 불공정무역 불공평경쟁 | 현금보증금, 가격승낙, 보증서, 반보조 관세 | 임시 반보조<4개월 최종 반보조<5년 |
| 보장조치 | 제품수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 | 공정조건에서 수량급증 | 관세징수, 수량제한, 관세할당 | 임시보장<200일 일반적으로 4-10년 |

나. 세관 관리제도

1) 관리체계

(1) 세관총서

- 세관총서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전국 세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세관업무를 관리하는 최고 영도기구로 현재 광주에 광동분서가 있으며, 세관총서의 파견기구로 천진과 상해에 특파원사무소가 설립됨

(2) 직속세관

- 직속세관은 세관총서에서 직접 영도하며 일정 구역범위의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관임
 - 현재 직속세관은 41개(북경, 천진, 석가장, 태원, 후허호트, 만주리,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상해, 남경, 항주, 영파, 합비, 복주, 하문, 남창, 청도, 정주, 무한, 장사, 광주, 심천, 공북, 산둥, 황포, 강문, 잠강, 남녕, 해구, 중경, 성도, 귀양, 곤명, 라사, 서안, 란주, 서녕, 은천, 우루무치)로 홍콩, 마카오, 대만 외에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3) 소속세관

- 소속세관은 직속세관에서 영도하며 구체적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세관으로 일반적으로 항구와 세관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소속세관은 580개임

(4) 세관 밀수단속 경찰기구

-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경찰조직으로 세관총서와公安부의 영도를 받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세관밀수단속국으로 명칭을 변경

2) 관련 법률체제

-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와 연관되는 법률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과 국제조약 등을 포함
 - 지방법규, 지방규정, 자치구 지방조례는 포함하지 않음

【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

| 분 류 | 주요법규 |
|--|--|
| 법 률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세관법 - 수출입 상품검역법 - 동식물검역법 - 고체 폐기물오염환경예방처리법 - 국경위생검역법 - 야생동물보호법 - 약품관리법 - 문물보호법 - 식품안전법 |
|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 야생식물보호조례 - 수출관리조례 - 외환관리조례 |
| 부서규정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수출외환회수관리방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정신약품관리방법 - 방사성약품관리방법 - 수입가축약품관리방법 - 외상투자기업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
| 국제조약 (국가와 기타 국제법 주체 사이에 체결하는 국제법을 준칙으로 하며 그 상호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국제 서면 협의서를 지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 무역정책검토제도 - 교토공약 -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협약 - 몬트리올 의정서 - 정신약품국제공약 - 런던지침 - 로테르담공약 - 바젤공약 - 국제방직품무역협정 - 세계지적재산권조직원설립공약 |

3) 세관 관리업무

- “세관법” 제2조는 “세관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수하물, 우송물과 기타 물품(약칭 :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을 감독 관리하며 관세와 기타 세금비용을 징수하고 밀수행위를 단속하며 세관통계를 작성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
- 세관의 4가지 기본업무는 감독관리, 세금징수, 밀수단속, 세관통계임

(1) 감독관리

- 감독관리는 세관의 4가지 기본업무의 기초이며 기타 세관의 업무도 감독 관리의 기초에서 진행
 - 세관의 감독관리는 관리제도 및 절차에 따라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의 출입국할 등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관리임
- 감독관리의 대상에 따라 세관 감독관리는 운송공구 감독관리, 화물 감독관리, 물품 감독관리 3개 체계로 분류되며 체계별로 규범화된 관리절차와 방법이 있음

(2) 세금징수

- 세금징수는 대외무역 관리제도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세금징수는 관세징수와 수입부분에 대한 세관 대리징수가 있음
- 세관은 수입 화물과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기타 기구를 대리하여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 수입부분세금을 징수함

(3) 밀수단속

- 밀수단속은 세관에서 감독관리와 세금징수 등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보장조치임

- “세관법”에는 “국가에서 연합 밀수단속, 통일적 처리, 종합적 처리의 밀수단속 체제를 실시하고 세관은 밀수단속을 책임지고 조직, 협조, 관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4) 세관통계

- 세관통계는 세관의 감독관리, 세금징수의 기초에서 진행하며 세관통계는 실제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서 또는 세관에서 비준한 기타 신고서류를 수집, 정리, 가공, 처리하여 수출입화물의 품목, 수량(중량), 가격, 국가(지역), 업체, 목적지, 화물 공급원, 무역방식, 운송방식, 세관별 등의 항목을 각각 종합 분석함

다. 관세 평가제도

1) 과세가격 평가방법

- 과세가격 평가 법률근거

| 구 분 | 법률, 법규 |
|------|-------------------------------|
| 법 른 | 세관법 |
| 행정법규 | 수출입관세조례 |
| 부서규정 | 수출입화물과세가격심의회방법 세수징세관리법실시세칙 |

(1) 수입화물

- 과세가격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하여 확정하며 또한 수입화물이 중국 수입지점까지 도착되어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송비용과 보험비 등을 포함
- 거래가격 : 중국 내에서 수입화물 판매시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서 직접 및 간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 과세가격 영향요소 】

| 구분 | 내역 |
|------|--|
| 추가비용 | (1) 화물 구매 커미션 외의 커미션과 중개 수수료 (2) 그 화물과 일체로 보는 용기비용 (3) 포장 재료비용과 포장 노무비용 (4) 수입화물 유지비용 (5) 납세할 특허권 사용료(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6) 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운반, 처분, 사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7) 수입화물로 인해 공급업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협조와 관련된 비용 (8) 수입화물 중에 설치한 재료, 부속품, 부품 및 기타 유사한 항목과 관련된 비용 (9)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및 유사한 품목(분담) (10)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모되는 재료비 (11) 수입화물의 생산에 필요하여 수입국가 외에서 종사하는 공정기술, 개발, 설계, 계획과 관련 비용 |
| 면제비용 | (1)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할당액, 허가증 및 유사한 비용 (2) 수입관세와 기타 국내 세금 (3)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이자 (4) 수입 후의 창고저장과 운송비용 (5) 경외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화물 수입 후의 설치, 시운전, 건축, 기술지원과 연관되는 비용 (6) 경외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함으로써 지급하는 비용 (7) 국내의 기술교육 및 경외 고찰비용 |

■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

-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수입화물 거래가격법, 동류 화물 거래가격법, 유사 화물 거래가격법, 감점가격법, 계산가격법, 합리한 방법 등 방법을 차례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세관의 동의를 받아 감점 가격법과 계산 가격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음

【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

| 구분 | 분류 | 평가방법 |
|----|----------------------|--|
| 1 | 수입화물 거래가격법 | “수출입세관조례”와 “수출입화물과세가격심의방법”에서 규정한 첫 번째 평가방법으로 우선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
| 2 | 동류 화물 또는 유사 화물 거래가격법 | 평가할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 동시에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동류 화물과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
| 3 | 감점 가격법 | 세관에서 수입화물, 동류 또는 유사 수입화물이 중국시장에서 처음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

| 구분 | 분류 | 평가방법 |
|----|--------|---|
| 4 | 계산 가격법 | 세관에서 수입화물 생산국 또는 생산지역의 생산원가를 기초로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
| 5 | 합리한 방법 | 세관에서 상기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평, 통일, 객관의 평가원칙에 따라 객관적 수량화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

■ 특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

- 가공무역(수출가공구, 보세구를 포함)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의 일반 평가방법

【 특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

| 무역방식 | 화물유형 | 평가방법 |
|------------------------------------|------------------------------|---|
| 원료수입가공 (비보세부분) | 원료 |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정 |
| 원료수입가공 (보세부분) | 원료 | 원료 기준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 완제품 (불량품, 부산품) | 원료 기준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위탁가공 | 원료 또는 완제품 (불량품) |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수출가공구 | 완제품, 불량품 |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 조각, 부산품 |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
| 보세구 가공기업 |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불량품) |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 원료수입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 완제품에 포함된 경외 구입한 원료의 기준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준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 위탁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
| | 조각, 부산품 |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
|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 보세물류센터 입국 | - | 원료 및 그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확정 |

- 수출하여 수리한 후 다시 수입한 화물
 -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할 경우 경외 수리비와 원료비로 평가하여 확정
 -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하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으로 확정
 - 수출하여 가공한 후 재수입한 화물
 - 정상적으로 재수입할 경우 경외 가공비, 원료비, 재수입 운송비, 보험비로 평가하여 확정
 - 정상적으로 재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으로 확정
 - 임시 수입한 화물
 - 납세해야 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으로 확정
 - 남겨서 판매할 경우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확정
 - 임대방식으로 수입한 화물
 - 임대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확정
 - 남겨서 판매할 경우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확정
 - 일회로 납세할 경우 규정한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거나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확정
 - 감세, 면세 화물
 - 비준을 받아 매각, 양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은 세금을 보충할 때에 징세함
 -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부분의 가치를 공제한 후에 과세가격으로 확정됨
- * 과세가격 =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그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 × (1 - 세금 징수(또는 보충)시 실제 수입한 월/감독연한 × 12)

■ 거래가격이 없는 화물

- 물물교환 무역, 위탁판매, 기증, 증여 등 방식의 수입화물에 대해 거래가격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기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

■ 소프트웨어 매질

- 매질 자체 가치 또는 원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확정

■ 수입화물 과세가격에서의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

| 구 분 | 계산방법 |
|----------|--|
| 운송비 |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자체 동력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계산하지 않음 - 불확정일 경우, 수입 동기에 발표된 운송비로 계산 |
| 보험비 |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불확정 또는 실제 미발생일 경우, 보험비=(화물가격+운송비)×3% |
| 우송화물 운송비 | - 그 우편료를 운송비, 보험비로 확정 |
| 변경항구 운송비 | - 경외 변경항구가격의 1%로 운송비, 보험비로 계산 |

(2) 수출화물

- 과세가격 :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하며 화물이 수출지역까지 운송하기 전 운송비, 보험비를 포함
- 거래가격 : 화물을 수출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업체가 그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 구매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대금 총액

【 과세가격 영향요소 】

| 구 분 | 내역 |
|------|--|
| 추가비용 | (1) 화물 포장비 |
| 면제비용 | (1) 판매 수수료 (2) 화물이 수출지역에서 적재한 후의 운송비 (3) 화물이 수출지역에서 적재한 후의 보험비 (4) 수출관세 |

- 수출화물의 과세가격 평가는 기본상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같으며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의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은 다음과 같이 화물 거래가격으로 수출화물 과세가격을 확정함

【 수출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

| 구분 | 평가방법 |
|-------------|--|
| 동류 화물 거래가격법 | 평가할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 동시에 동일 국가(지역)에 수출하는 동류 화물의 거래가격 |
| 유사 화물 거래가격법 | 평가할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 동시에 동일 국가(지역)에 수출하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
| 계산 가격법 | 경내에서 동류 화물 또는 유사 화물의 생산할 때의 원가, 이윤, 일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포함), 경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와 보험비로 계산한 가격 |
| 합리한 방법 | 세관에서 기타 합리한 방법으로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 수출화물 과세가격=FOB가격-수출관세 |

(3) 세관 평가시 가격 질의절차와 가격 협상절차

■ 가격 질의절차

- 과세가격확정 과정에서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질의가 있거나 매매 쌍방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세관 가격질의 통지서”를 발송

■ 가격협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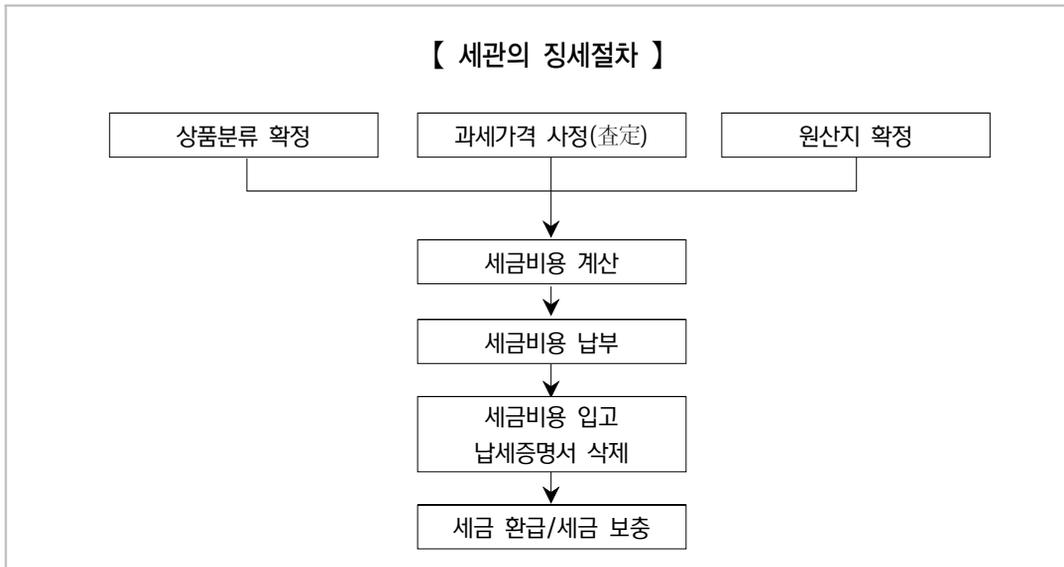
- 가격협상은 세관에서 거래가격법 외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업비밀을 지키는 기초에서 납세 의무자와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데이터자료를 교환하는 행위임
- 납세 의무자가 서면신청하면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 질의와 가격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 같은 계약에서 분할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에서 일부 화물의 가격을 평가했을 경우

-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인민폐 10만원 이하 또는 관세와 수입세금 총액이 인민폐 2만원 이하일 경우
- 수출입화물이 위험물, 신선한 물품, 부식되기 쉬운 화물, 실효되기 쉬운 화물, 폐기물, 낡은 화물 등에 속할 경우

2) 관세비용 계산

(1) 징세절차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과세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과세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며 세관의 징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2) 징수화폐

-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 수입증치세, 수입소비세, 선박톤세, 체납금, 신고 지체금 등의 세금과 비용은 모두 인민폐로 계산·징수하며 인민폐 50위안부터 징수하며 과세가격 및 관세는 사사오입하여 산정

-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과 관련비용을 외화로 계산할 경우, 세금을 계산하기 전 세관에서 화물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날의 적용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
- 세관에서 매달 적용하는 환율은 지난달 셋째 주 수요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개한 외화 기준 환율이며 인민폐 위안 이하는 사사오입

(3) 수입관세 계산

| 구 분 | 계산공식 | 계산절차 |
|--------|--|--|
| 종가관세 | 수입관세=과세가격×종가관세세율 |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 종량관세 |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 복합관세 |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 슬라이딩관세 | 수입관세(종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종량)=화물수량×잠정세율 |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4) 수출관세 계산

| 계산공식 | 계산절차 |
|---|--|
| 수출관세=과세가격×수출관세 세율 과세가격=F0B/(1+수출관세 세율) 과세가격=[CFR-운송비]/(1+수출관세 세율) 과세가격=CIF-운송비-보험비 | - 화물 FOB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5) 수입 소비세 계산

| 구 분 | 계산공식 | 계산절차 |
|------|--|--|
| 증가징수 | 소비세=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 증량징수 | 소비세=소비품 수량×소비세 세율 | |
| 복합징수 | 소비세=증가 소비세+증량 소비세 | |

(6) 수입 증치세 계산

| 구분 | 계산공식 | 계산절차 |
|------|---|--|
| 추가징수 | $\text{증치세} = \text{징세가격} \times \text{증치세 세율}$ $\text{징세가격} = \text{과세가격} + \text{관세율} + \text{소비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

(7) 기타 비용 계산

■ 체납금

- “세관법”과 수출입 “관세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어 납부하는 수출입화물의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에 대해 세관은 매일 0.5%의 체납금을 징수

* 체납금 = 납세액 × 0.5% × 체납일

■ 신고지체금

- 법정 신고기간 동안 세관에 수입화물을 신고하지 않은 수하인에 대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경제 제재 성격의 비용임

* 신고지체금 = 수입화물 과세가격 × 0.5% × 연기일

라. 관세 추가징수와 추가납세, 환급 및 감면

1) 관세 추징징수와 보충징수

-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확정하여 징수한 관세가 과세관세보다 적을 경우 세관에서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부족한 관세를 보충 납부할 것을 요구함

- 만약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보충 징수함

(1) 추가징수와 보충징수의 기한과 요구

- 수출입화물이 통관된 후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견될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인으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
-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했을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한 세금의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발견일까지)
- 감독관리 화물이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했을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한 세금의 0.5%의 체납금을 추가징수(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발견일까지)
- 상기 관세 보충징수 납세서 발급한 후, 15일 내에 보충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금을 징수

2) 관세환급

- 관세 환급제도는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한 관세를 납세인에게 환급하는 제도임

(1) 관세환급의 경우

- 수입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반품하여 재수출된 경우
-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원인으로 원래 상태로 반품되어 재수입되어 수출로 인해 환급된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
-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떤 원인으로 수출되지 않아 수출이 철회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여 통관된 산적 수출입화물이 부족하여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부족한 부분의 화물대금을 반환 또는 배상했을 경우

- 수출입화물이 파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관련 화물대금을 배상했을 경우
- 세관에서 잘못 징수하여 납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2) 관세환급 기한과 요구

- 세관은 반드시 관세 환급 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여 납세인에게 관세 환급수속을 밟도록 통보해야 함
- 납세인은 반드시 상기 통보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세 환급수속을 밟아야 함
- 관세 환급은 반드시 관세를 징수한 세관에서 처리해야 함

3) 관세감면

- 중국 “세관법” 제56-57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입 관세감면을 법정 관세감면, 특정 관세감면, 임시 관세감면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법정 관세감면

- 법정 관세감면은 “세관법”, “관세조례”와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감면을 가리키며, 세관에서 법정 관세감면의 화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후속관리를 하지 않음
- 법정관세감면 범위
 - 관세가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화물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화물 샘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기 전에 파괴 또는 파손된 화물

- 출입국 운송공구가 적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 자재와 음식물
-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화물, 물품
- 법률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기타 화물, 물품

(2) 특정 관세감면

- 특정 관세감면은 세관에서 국가 규정에 의해 특정지역, 특정용도, 특정 기업에 대해 관세와 세관이 수입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지칭하며 정책성 관세감면이라고도 함
- 특정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업체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신청해야하며, 세관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함
 - 세관은 관세감면관련 정책에 부합될 경우, 관세감면 증명을 발급하고 업체는 관세감면 증명 및 관련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밟음
- 특정 관세감면의 화물은 지역, 업체와 용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후속관리를 해야 함
- 특정관세감면 범위
 -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투자한도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외에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국내투자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특정지역 물자
 - 과학교육용품
 - 과학기술 개발용품
 -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장애인용품
 - 원양어업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어획 수산물
 - 원양선박 및 설비부품 프로젝트

- 집적회로 프로젝트
- 해상 석유, 육상 석유 프로젝트
- 대출 낙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부품
- 구제, 기증 물자
- 자선, 기증 물자

(3) 임시 관세면제

- 임시 관세면제는 법정 관세면제와 특정 관세면제 외의 기타 관세면제를 지칭하며, 국무원에서 어떤 업체, 어떤 상품, 어떤 시기 또는 화물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에 의해 특별한 임시적인 관세면제 혜택을 줌
- 임시 관세면제 화물은 단위, 품목, 기한, 금액, 수량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시효가 비교적 짧고 혜택정책이 집행되면 종료
- 임시 관세면제의 신청업체가 소재지 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은 사실을 심사한 후 세관총서에 보고하며, 세관총서 또는 세관총서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에 문건을 발급하며, 세관총서는 관련 세관에 관세감면 수속을 밟도록 통보

(4) 관세감면 비준원칙과 비준관리

- 현재 중국 세관의 관세감면 정책에서 특정 관세감면에 관한 규정이 많고 관련된 분야가 다양함
- 관세감면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가에서 배려해야 할 특정지역, 특정기업, 특정용도, 특정자금과 무역방식 등을 지칭하며, 감면범위는 주로 생산물자 등에 제한
- 현재 세관은 초심, 재심, 삼심의 “3급 비준” 원칙으로 관세감면을 비준
- 세관의 관세감면비준관리 시스템은 주로 관세감면 항목등록, 관세감면 증명비준, 관세감면 데이터검색, 통계분석과 관세감면 화물의 후속관리 등을 포함

마.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1) 세관 행정처벌 종류

- “세관법”,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관 행정처벌은 경고, 벌금, 몰수,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임시 중단,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중지, 행정구류, 압수가 있음

【 세관의 행정처벌 종류 】

| 구분 | 종류 | 정의 및 해석 |
|----|-----------------------|--|
| 1 | 경 고 |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 질책과 경고를 주어 당사자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 |
| 2 | 벌 금 |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강박하여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아 향후 불법행위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처벌 |
| 3 | 몰 수 |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불법 출입국 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여 공유로 소유시키는 처벌로서 밀수화물 등 불법재산과 불법소득을 몰수 |
| 4 | 당 사 자 일부권리 임시중지 | 기업 또는 자연인이 세관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종사한 후, 불법행위를 하여 세관에서 일정한 기간에 업무권리를 박탈하는 처벌 (“세관법” 과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에 의해 세관은 통관업체의 통관업무를 임시중지, 통관인원의 보고업무를 임시중지, 세관에서 허용한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임시중지) |
| 5 | 당 사 자 일부권리 중 지 | 세관에서 당사자가 일부 경영활동의 권리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처벌로서 세관에서 일반적으로 세관 등록을 철회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
| 6 | 행정구류 | 국가기관(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연인에게 인신자유를 단기로 박탈하는 처벌 |
| 7 | 압 수 | 세관은 특수상황에서 압수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는 몰수와 유사하지만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음 |

2) 세관 행정처벌 절차

- 2007년 3월 2일 “세관행정처벌사건처리절차규정”을 발표하여 일반규정, 사건조사, 행정처벌의 결정, 행정처벌결정의 집행, 간단한 사건처리절차 등을 규정

(1) 일반규정

- 세관에서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건 이송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제 때 관련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조사시 업무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관련증서를 제시해야 함
- 사건 조사처리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배제됨
 - 당사자의 친족일 경우
 -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2) 사건조사

- 사건조사는 입건, 조사 및 증거 수집, 조사 중지와 종결, 사건 심사, 통보, 재심사와 청문 순으로 진행

(3) 간단한 사건처리

- 우송물, 특급화물, 화물관리, 보세 감독관리 등 업무현장과 불법사실이 명확하며 불법상황이 가벼운 사건은 간단한 사건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간단한 사건처리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직접 행정처벌 통지서를 발급하여 당사자가 현장에서 사인하도록 할 수 있음

3) 관세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행위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세관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를 적용

【 관세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

| 위반사항 | 제재조치 |
|---|--|
| 금지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 반송 및 100만 위안 이하 벌금 |
| 허가증이 없이 제한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 통관 불가능,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
| 자동허가증이 없이 자동수출입허가관리의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 통관 불가능 |
| 품명, 세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 위안~1만 위안 벌금 - 세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3만 위안 벌금 -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화물가치의 5~30% 벌금 - 국가의 세금 징수에 영향을 줄 경우, 탈세액의 30~100% 벌금 -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 환급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신고가격의 10~50% 벌금 -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 |
| 송수하인이 통관업체에 위탁한 통관사항을 허위 제공하여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제15조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탁인을 처벌 |
|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위탁인의 제공서류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제15조에서 규정한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업체에 대해 화물가치의 10% 이하 벌금, 6개월 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업무의 대행이 불가능 - 엄중할 경우, 등기증명을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송, 교환, 개조, 담보, 저당, 유치, 양도, 표기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가치의 5~30% 벌금, 불법소득 몰수 - 제한화물의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화물가치의 |

| 위반상황 | 제재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 구역 외에 저장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화물의 분실, 수량 부족 또는 기록 허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수탁, 교부, 이월, 확인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련계약을 해제, 연장, 변경, 양도할 경우, 세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세관에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허위 신고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통과, 증계운송, 통행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경내에 보관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임시로 수출입화물을 경외로 재운송하거나 경내로 재운송하지 않고 경내외에 보관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감독관리를 할 수 없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 <p>30% 이하 벌금, 탈세할 경우, 탈세액의 1배 이하 벌금</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허가가 없이 통관하지 못한 수출입물품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나 개인용 출입국 제한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 감독관리를 회피 또는 세관에 미신고할 경우 -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허위 신고할 경우 - 세관 등록을 거쳐 임시면세의 출입국 물품으로 허가 받은 경우, 경내외로 다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p>경고처분, 물품가치의 20% 이하 벌금, 불법소득 물</p> |

| 위반상황 | 제재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허가가 없이 통과인원이 물품을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 금지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방식으로 출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형식으로 세관 감독관리를 회피 또는 미신고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을 몰수, 화물을 반송, 세관 감독관리 하에 소각 또는 기술처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공구가 세관을 설치한 지역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국할 경우 - 세관 허가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구역에 정박한 출입국 운송공구를 이탈시켰을 경우 -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세관 허가가 없이 중도에 경내외 세관 미설치 지점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 출입국 운송공구가 세관을 설치한 지역에 도착 또는 이동할 때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공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처분, 10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허가가 없는 출입국 운송공구가 수출입화물, 물품을 하역 또는 출입국 관광객을 운송할 경우 - 세관 동의를 없이 수출입 운송공구가 경내 여객운송을 경영,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세관 수속절차가 없이 출입국 운송공구가 경내 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세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데이터를 미전송, 전자데이터가 부정확, 전자데이터를 미저장할 경우 - 입국 운송공구가 세관에 신고하기 전 또는 출국 운송공구가 세관 수속절차를 밟은 후 출국 전에 교통 주관부서 또는 세관의 지정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선적한 선박, 차량이 세관 지정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처분, 5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 |

| 위반상황 | 제재조치 |
|--|--|
| <p>설치하지 않은 지점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 물품을 경내에 하역할 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사정이 없이 출입국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시간, 정박지점 또는 변경된 시간, 지점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 세관의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 검사 및 조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봉인을 개봉 또는 훼손할 경우 - 세관의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출입국 운송공구,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중단할 경우 | 경고처분, 3만 위안 이하 벌금 |
| 세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 | 5만~50만 위안 벌금, 불법소득 몰수,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
|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몰수,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
| 송수하인/대리인이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으로 허위로 신고 또는 합법적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 | 5만 위안 이하 벌금 |
| <p>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받아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체불 또는 납세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 통관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하여 수출입화물 통관납세 관련사항을 처리하게 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관련업무 또는 업종을 임시 중지해야 할 기타 불법행위 | 시정을 명령, 경고처분, 6개월 이내 관련업무 중지 |
|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 허가를 받아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

| 위반상황 | 제재조치 |
|--|---|
| <p>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내에 3회 이상 세관에 의해 업무를 중단된 경우 - 세관에 의해 관련 업무를 회복한 후 1년 내에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26조 규정을 재위반할 경우 - 기타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 또는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위법행위 | |
| <p>통관업체, 통관인원이 불법으로 통관업무를 대행 또는 세관에서 허용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통관수속을 대행할 경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을 명령, 5만 위안 이하 벌금, 6개월 이내 통관업무 또는 관련업무 중지 - 엄중할 경우,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
| <p>승수하인,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세관 요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10만 위안 이하 벌금 -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통관업체로 재등록 불가능 |
| <p>세관에 통관대행을 등록하지 않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이 없이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p> | <p>즉시 단속하며 불법소득 몰수, 10만 위안 이하 벌금</p> |
| <p>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세관에 통관업체로 등록 또는 통관 자격을 취득할 경우</p> | <p>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30만 위안 이하 벌금</p> |
| <p>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세관법을 위반할 경우</p> | <p>법인이나 조직에 처분, 주관인원과 책임자에게 경고처분, 5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p> |

바. 납세분쟁 처리방법

1) 납세분쟁 범위

- 세관 납세분쟁은 세관의 세수 관리직책을 행사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발생하는 행정분쟁임
- 세관 납세분쟁의 범위는 비교적 넓으며 “수출입관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자가 세관의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에 질의를 제출할 경우 등임
-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자는 세수 감독관리 결정을 내린 세관의 상급 세관에 행정재심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세관 행정재심의

(1) 정 의

- 세관 행정재심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과 그 인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세관 재심의기관에 재심을 신청하며 세관 재심의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기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며 결정을 내리는 활동임
- 세관 행정재심의 특징
 - 세관 재심의 신청인은 세관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이해관계자임
 - 세관 재심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세관임
 - 세관으로부터 구체적 행정행위를 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관 재심을 제출

- 세관 행정재심의 재심의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세관의 상급 세관이 세관총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세관총서에 재심의를 제출

(2)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 구분 |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
|----|--|
| 1 | 세관의 경고, 벌금, 화물·물품·운송공구와 특별제조 설비 몰수, 몰수할 수 없는 화물·물품·운송공구의 등기대금 추징, 특정 감면세 우대를 임시중지 또는 취소, 관련 업무 또는 자격 임시중지, 등록 철회, 통관신고 자격 취소 및 기타 행정처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 2 | 세관의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공구, 특별제조 설비에 대한 압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
| 3 | 세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 4 | 세관의 관련 화물, 물품, 운송공구, 장부, 증서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 관련 수출입화물, 장부, 증서에 대한 밀봉 보존 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 5 | 세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 6 | 세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
| 7 | 세관에서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 기타 세금 징수와 관련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 8 |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세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비준사항을 신청했지만 세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
| 9 | 세관에서 운송공구와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물품을 검사하거나 기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할 경우 |
| 10 | 세관의 반품 명령, 통관 불가, 시정 명령, 해체 명령과 매각 등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
| 11 | 세관 검사 결정 또는 기타 검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2 | 세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그 분류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
| 13 | 세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에서 채택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
| 14 | 세관에서 법에 따라 통관신고, 통관 등 세관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 15 | 세관에서 불법으로 신고지체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고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경우 |
| 16 |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 17 | 세관에서 정부정보 공개업무에서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 18 | 세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3) 세관 행정재심의 절차

■ 세관 행정재심의 신청

-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60일 내 관할권이 있는 세관에 행정재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음

■ 세관 행정재심의 신청의 수리

-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결정을 내리며 “행정재심의 수리통지서”와 “행정재심의 담복통지서”를 발급해야 함

■ 세관 행정재심의 심리

- 세관 행정재심의 사건은 3명 이상의 홀수 행정재심의인원이 합의제 심리를 실시하며 그 중에서 1명 행정재심의인원이 주심을 담당
- 사실이 명확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분쟁이 크지 않는 사건에 대해 합의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명 이상 행정재심의인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함

■ 세관 행정재심의 결정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특별 상황에서 30일 연장 가능)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며 신청인에게 송달

■ 세관 행정재심의 집행

-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세관 행정재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자체로 강제 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음

(4) 행정재심의 기한

■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신청기한

- 신청인이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기한을 지체할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를 해소한 날로부터 계산
- 재심의기관의 수리 결정기한
 - 세관 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리를 결정할 경우에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일을 수리일로 정함
- 행정재심의 신청서류 보정기한
 - 행정재심의 신청서류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보정할 것을 통보
 - 신청인은 보정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에 보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재심의 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팩스, 이메일방식으로 행정재심의 신청서류 원본 제출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신청인이 팩스, 이메일방식으로 제출한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신청인에게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함
- 피신청인의 서면 답복과 증거서류 제출기한
 -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분 또는 신청기록 복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 답복을 제출하며 최초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증거, 근거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인에 대한 “행정재심의 답복서” 부분 송달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재심의 답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 상황에서는 재심의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최대로 30일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인의 행정소송 제출기한

- 신청인이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심의기관이 기한을 넘어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 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납세분쟁 등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세관 행정소송

(1) 정 의

- 인민법원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청구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며 판결하는 국가 소송활동임

(2) 세관 행정소송 범위

| 구 분 | 상세내역 |
|-----|---------------------------------|
| 1 | 세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
| 2 | 세관의 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
| 3 | 세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 4 | 세관의 강제성조치에 불복할 경우 |
| 5 | 세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 6 | 세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
| 7 | 납세분쟁에 불복할 경우 |

| 구 분 | 상세내역 |
|-----|--|
| 8 | 행정허가 관련사항에 불복 |
| 9 | 세관의 검사와 검사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0 | 세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
| 11 | 세관 검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
| 12 | 세관의 기업분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 13 | 세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4 | 세관에서 통관신고, 통관 등 세관수속 등 처리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5 | 세관에서 불법으로 체납금, 보증금과 기타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6 |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7 | 세관에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
| 18 | 세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3) 행정소송 법정기한

-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4) 세관 행정소송 기본절차

- 세관 행정소송 수리절차는 제1심 절차, 제2심 절차, 심판감독 절차를 포함하며 제1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전체 심판절차의 기초임
- 제1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세관 행정소송 사건을 수리한 후 그 사건 수리에 적용하는 절차로서 개정 준비, 법정 조사, 법정 변론, 합의법정 평의, 판결 선고 등을 포함
- 만약 제1심에서 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제2심 절차에 들어가며 제2심에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를 할 수 있으며 제2심 법원의 판결은 종심 판결로서 상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함
- 행정소송판결 감독관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검찰기관의 항소를 통해 또는 인민법원에서 스스로 발견한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다시 수리하는 절차임

사.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제도

1) 법률근거

| 구분 | 법률, 행정법규, 규정 |
|----|--|
| 1 | “세관법” |
| 2 | “형법” 제3장 제7절 “지적재산권 침해죄” 관련 내용 |
| 3 | “상표법” |
| 4 | “특허법” |
| 5 | “저작권법” |
| 6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형사사건 처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 (법석[2004]19호) |
| 7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형사사건 처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2)” (법석[2007]6호) |
| 8 | “올림픽로고보호조례” (국무원령 제345호) |
| 9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국무원령 제395호) |
| 10 |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20호) |
| 11 | “세계박람회로고보호조례” (국무원령 제422호) |
| 12 | 세관에서 “지적재산권보호조례” 에 관한 실시방법(세관총서령 제114호) |
| 13 | “올림픽로고 세관보호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 (공고 2002년 제6호) |
| 14 | “올림픽로고 전용권 등록목록을 발표할 데 관한 공고” (공고 2002년 제8호) |
| 15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비를 수취할 데 관한 공고” (공고 2004년 제15호) |
| 16 |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 물품의 출입국 금지에 관한 사항의 공고” (공고 2005년 제48호) |
| 17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총담보를 접수할 데 관한 공고” (공고 2006년 제31호) |
| 18 | “세관총서 ‘올림픽로고 보호조례’ 를 실시할 데 관한 문제의 통지” |

2) 세관보호의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2010년 수정, 제572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보호의 지적재산권은 수출입화물과 관련하여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 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특허권이어야 함

【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 】

| 구 분 | 세 부 사 항 |
|-----|--|
| 1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등록 비준한 상표 |
| 2 | 세계지적재산권조약에 등록하여 중국까지 확대된 국제등록상표 |
| 3 | 국가지적재산권국(기존 중국특허국을 포함)에서 특허권을 수여한 발명, 외관설계, 실용신안 특허 |
| 4 | “문학과 예술작품을 보호할 데 관한 베른공약” 회원국의 국민 또는 조직이 소유한 저작권과 저작권과 관련되는 권리 |
| 5 | 올림픽마크와 세계박람회 마크 |

3)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은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법률 현황, 관련 화물의 현황, 지적재산권 합법적 사용현황과 권리침해화물의 수출입현황을 서면으로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의 감독관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임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 】

| 절 차 | 세 부 사 항 |
|-------------|--|
| 시스템 등록 | 신청인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신청 시스템” 에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명의로 시스템 고객으로 등록해야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을 할 수 있음 |
| 등록신청 데이터 입력 | 등록 신청란에 등록 신청한 지적재산권과 기타 관련 정보를 입력 |
| 등록비를 납부 | 은행 이체 또는 전신환방식으로 등록비(항목별 등록비 800위안)를 세관총서 계좌로 송금하며, 송금할 때에 비교란에 권리수권번호 또는 등록신청번호를 표기 |
| 서면 신청서 제출 | 입력한 등록신청 데이터를 서면 신청서로 프린트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등록비 납부증빙 복사본과 기타 관련 서류를 세관총서 정책법규사 지적재산권 보호처로 우송 |
| 신청 보정 | 신청인은 세관총서의 등록신청 기각의견에 따라 등록신청을 보정할 수 있음 |
| 비준 또는 기각 통지 | 세관총서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통보하며, 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4)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치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따라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는 권리침해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압류, 화물의 권리침해 등을 조사, 권리침해 화물의 수하인, 발송인에 대해 처벌,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 및 처리 등이 있음
- 권리침해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는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있는 화물을 압류할 권한이 있음
 - 신청에 따른 압류 :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 화물이 수출입되는 것을 발견한 후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신청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을 압류
 - 직책에 따른 압류 :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주도적으로 채택하는 압류와 조사처리의 조치를 일컫음

【 신청에 따른 세관보호절차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신청수리 | - 세관은 권리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접수 결정여부를 서면으로 권리인에게 통보 |
| 화물검사 | - 권리인이 세관에서 화물을 압류하기 전에 화물 검사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동의하에 관련 기록을 작성 - 세관의 동의를 받아 권리인은 세관의 화물 압류 전에 신청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 화물압류 | - 화물 압류를 결정할 경우, 서면 통지와 압류 증빙을 수하인과 발송인에게 송달하며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수하인과 발송인이 세관의 화물 압류 후에 화물 검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반드시 동의해야 함 |
| 샘플링 | - 합리적인 수량의 샘플을 추출하며 화물 사진을 찍어야 함 |
| 반담보 통관 | - 화물 압류 후 20일 내에 수하인과 발송인의 청구를 접수한 후 세관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물통관을 시키며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 화물처리 | - 화물 압류 후 20일 내에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중지 또는 재산보전조치의 협력집행을 명령한 서면 통지를 접수한 후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화물을 통관시켜야 함 |
| 등 록 | - 현장에서 세관은 화물 관련 통관신고서류와 첨부한 관련 문건, 증거 복사본을 세관 법규부서에 제출하며 법규부서는 등록해야 함 |

【 직책에 따른 세관보호절차 】

| 절 차 | 설 명 |
|-------------------|--|
| 지적재산권 등록DB 검색 | - 세관총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록신청 관리시스템에서 검사하여 확인 |
| 지적재산권현황의 보충신고를 요구 | - 등록관리시스템을 검색한 후 화물의 권리침해를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수하인과 발송인에게 3일 내에 지적재산권현황의 보충신고하며 관련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 |
| 보고 및 연락 | - 권리인이 3일 내에 수권을 서면으로 확인할 경우, 세관 법규부서는 즉시 화물 통관을 통보하며 서면 확인서를 현장 세관에 팩스로 발송 |
| 담보금액 확정 | - 화물가치<2만 위안일 경우,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받음 - 화물가치가 2만 위안~20만 위안일 경우, 담보금액은 화물가치의 50% - 화물가치>20만 위안일 경우, 담보금액은 10만 위안 |
| 담보 수취 | - 권리인이 제출하는 담보형식은 담보금,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구의 담보서를 포함 |
| 화물 압류 | - 수하인과 발송인이 화물 검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반드시 동의해야 함 |
| 공안기관에 중대한 사건정보 통보 | - 세관 법규부서는 중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의 정보를 소재지 시급 공안기관에 통보 - 공안기관에 사건정보를 통보할 경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을 조사 |
| 반담보 통관 | - 수하인과 발송인이 수출입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세관에 화물 통관을 청구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화물 압류일로부터 50일 내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금을 수취해야 함 |
| 조사 인정 | - 화물을 압류한 후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인정 |
| 처리의견 확정 | - 세관 법규부서는 화물 압류일로부터 30일 내에 침해여부를 인정하며 권리인에게 “지적재산권현황 조사결과통지서”를 발급 |
| 사건 처리 | - 세관 법규부서는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확정할 경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와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 - 처벌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처벌결정서 복사본을 등록 |
| 권리침해 화물, 물품 압수 | -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와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몰수해야 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 물품에 대해, 공고를 발표 - 세관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에 세관에서 화물을 몰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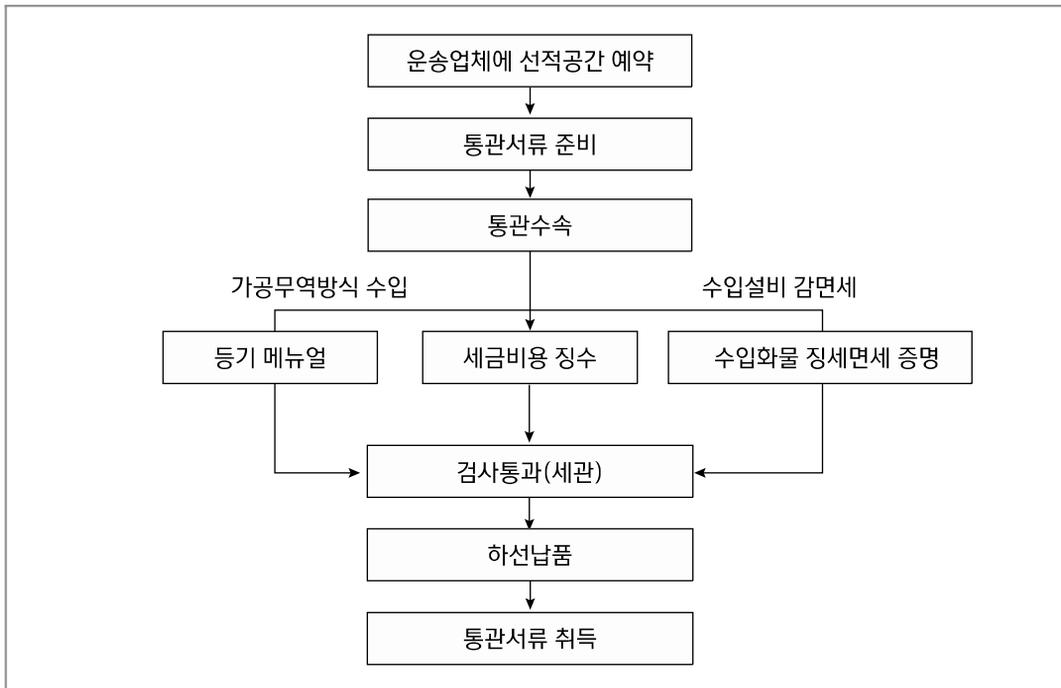
아.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

【 화물별 수출입화물 통관절차 】

| 구 분 | 초기단계 | 출입국단계 | 후속단계 |
|---------|----------------|---|------------|
| 일반수출입화물 | / | 수출입신고 협조검사 세금비용 납부 화물 수령 또는 선적 | / |
| 보세수출입화물 |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 | 심의삭제 |
| 특정감면세화물 | 감면세증명 신청 | | 세관 감독관리 해소 |
| 임시출입국화물 | 전시품입국 등기 | | 사건 취소 |

【 수입화물 통관절차 】



【 수출화물 통관절차 】



2) 일반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

(1) 일반 수출입화물 범위

- 특정 감면세 화물을 제외하고 실제 수출입화물은 모두 일반 수출입화물의 범위에 속함

【 일반 수출입화물 범위 】

| 구분 | 세부내역 |
|----|-----------------------------------|
| 1 | 일반무역 수출입화물 |
| 2 | 보세가 아닌 일반무역 수입화물, 실제로 수입된 보세 수입화물 |
| 3 | 실제로 수입 또는 수출된 임시 출입국 화물 |
| 4 | 구상무역 또는 보상무역 수출입화물 |
| 5 | 보세가 아닌 위탁판매 또는 수탁판매의 무역화물 |
| 6 | 청부공사의 실제 수출입화물 |
| 7 | 중국주재 외국상업기구의 수출입 진열용 샘플 |
| 8 | 외국관광객의 소량 주문 수출상품 |
| 9 | 전시품과 동시에 입국한 소매품 |
| 10 | 면세 수입화물 |

(2) 통관절차

- 일반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는 수출입 신고, 협조 검사, 세금비용 납부, 화물 수령 또는 선적으로 구성

【 일반 수출입화물 통관절차 】

| 절 차 | 설 명 |
|----------|--|
| 수출입신고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한 기한과 장소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상황을 보고하며 세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 |
| 협조검사 |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성격, 가격, 수량, 원산지, 화물상황 등이 통관서류의 신고내용에 부합여부를 확정하며 화물을 실제로 검사하는 행위 |
| 세금비용 납부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세, 소비세, 증치세, 선박톤세와 세관감독 관리 수수료 등 세금비용을 납부하는 행위 |
| 화물 수령/선적 | 세관의 화물 감독관리, 세관 통과, 화물 수령 또는 선적, 증명발급 신청 |

【 통관 신고서류 】

| 구 분 | 세 부 내 역 |
|-------|---|
| 기본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수출 선적서류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등 |
| 특별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허가증서 -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 가공무역등록매뉴얼 - 감면세증명 - 외환송금심사증서 - 담보증서 등 |
| 예비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수출입업체 관련 증명서류 등 |
| 통관신고서 | - 통관 신고인원이 세관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작성한 신고서 |

3) 품목별 통관제도

(1) 일반포장식품

-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직접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검사신고 자격이 없을 경우에 검사신고 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최초 입국검사 신고시 제출서류 】

| 분류 | 신고서류 |
|----------|--|
| 필수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계약서 - 신용증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결합제품 소환승낙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증서” 또는 “수입식품 화장품라벨등록증명” 또는 라벨등기 신청서류 [라벨심사 신청서, 중문 라벨 샘플, 기존 라벨과 중문 번역본, 원산지증명/자유판매증명 원본, 제품 특성속성의 증명서류, 제3자 검사측정기구에서 발급한 검사측정합격보고서 원본 등] |
| 필요시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입국검역비준수속을 봐야 함) - 수출국가 또는 지역 정부의 검역증서(규정이 있는 동식물성식품) - 수출국가(지역) 정부의 위생증명서류 또는 제3자 검사측정기구에서 발급한 합격검사측정보고서의 원본 - 검사측정보고서(라벨에 구체적 수치를 표기) - 수출국가(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 가축약, 첨가제, 훈증제 등 관련 자료와 검사보고서 - 수출국가 품질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 및 관련 표준과 기술자료(품질증서 신청할 경우)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련 국가(지역)와 협의서를 체결했을 경우, 협의서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 - 검험검역기구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향후 입국검사를 신고할 경우, 라벨등기 신청서류[라벨심사신청서, 중문 라벨 샘플, 기존 라벨과 중문 번역본, 원산지증명/자유판매증명 원본, 제품 특성속성의 증명서류, 제3자 검사측정기구에서 발급한 검사측정합격보고서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제출서류는 최초 입국검사 신고 때와 동일

- 입국검사 신고 접수 후 검험검역이 진행되며, 합격시 “위생증”을 발급하며, 중문 라벨 등록이 필요할 경우 검험검역에 합격 후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등록증명”을 취득
 - 중문라벨의 샘플은 GB 7718-2004(포장식품라벨통칙), GB10344-2005(포장음료주 라벨통칙) 등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

(2) 쌀

■ 쿼터취득

- 수입업체가 쌀 수입쿼터를 신청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권기구에서 접수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제출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전에 각자 수권기구를 통해 최종 고객에게 “농산물수입관세쿼터증”을 발급하며 “상무부 농산물수입관세쿼터증 전용장”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산물수입관세쿼터증 전용장”에 날인

■ 검험검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04년 8월 30일 발표한 2004년 제111호 공고에 의해 쌀 수입업체는 검험검역기구에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험검역을 신고
- 검험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합격되면 “입국화물검험검역 증명”을 발급

■ 통관수속

- 수입업체는 세관에 “수입관세쿼터증”과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 등을 제출하며 세관은 관세징수 후 통관시킴

(3) 건강식품

- 건강식품은 비타민, 광물질을 보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지칭하며 인체기능은 조절하지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체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주지 않는 식품임
- 수입 건강식품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부서에서 발급하는 “수입건강식품비준증서”를 취득해야 수입수속을 밟을 수 있음
- 화물이 입국할 때, 항구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수입건강식품비준증서”에 따라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표준에 따라 검험에 합격되면 통관을 허용
- 처음으로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반드시 식품라벨의 검험에 합격되어 “수출입식품라벨등록증서”를 취득해야 통관이 허용됨

(4) 가축육제품

- 수입 가축육제품은 가축 도살가공 후 식용 가능한 부위를 가리키며, 신선, 냉장 및 냉동한 가축 몸통, 육류, 내장, 부산물 및 상기 제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통조림을 포함하지 않음)을 포함하며 가축은 돼지, 소, 양, 말, 당나귀, 사슴, 낙타 등을 포함
- 수입 가축육제품은 아래와 같은 특별 요구사항이 있음
 - 수입 가축육제품의 화주는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비준수속을 밟아 입국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신청하여 초심수속을 밟아야 하며, 위탁가공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신청하여 지정생산기업의 인가수속을 밟아야 함
 - 가공무역방식의 수입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한 가축육제품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기업이 생산 및 이용, 저장해야 함

- 검험검역기구는 지정생산기업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해 검험검역 감독 및 전염병 발생과 확산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공업체는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제품 출입국 창고수량을 심의하여 제한된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가공 폐기물의 처리가 가축 약물 위생방역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함
- 일반무역방식의 가축육제품 수입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입국항구 직속 검험검역국의 등록자격을 취득한 지정저장창고와 저장협의서(또는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수입가축육제품은 검험검역에 합격되기 전에 반드시 지정저장창고에 저장해야 함
- 검험검역기구는 지정저장창고의 저장과정에 대해 감독하고, 저장창고는 사실대로 “입국육류제품 지정저장창고 품질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냉장창고는 불법 입국한 가축육제품을 저장하지 못함
-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전염병이 유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농업부에서 공동 발표하는 공고를 기준)으로부터 관련된 가축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경고통보에서 임시 중지한 국외 생산가공업체로부터 관련된 가축육제품의 수입 또한 금지

(5) 식량과 식용유식품

- 식량과 식용유는 식량, 식물유 원료, 식물유의 총칭을 가리키며 수입식량과 식용유는 다음과 같은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함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하는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 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증서” 또는 “수입 유전자변형 농산물 임시증명”(유전자변형의 대두, 콩기름, 유채씨, 유채기름, 옥수수, 옥수수기름을 지칭),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라벨 심사인가 비준문건”(유전자변형 대두, 콩기름, 유채씨, 유채기름, 옥수수, 옥수수기름을 지칭)

- 국가 법률법규에서 규정하는 검역과 관련되는 기타 허가입국증명

(6) 가금육제품

- 수입가금육제품의 화주는 무역계약 체결 전 검역 비준수속을 밟아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입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직접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초심을 신청하고,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방식으로 수입하는 가금육제품은 반드시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지정생산기업 인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함
-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방식의 가금육제품 수입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 가금육제품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에서 생산, 사용, 저장해야 함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 생산, 가공, 저장 등 과정에 대해 검험검역 감독과 전염병 검사를 진행하며 지정가공업체는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록하며, 제품 출고와 입고 수량을 심사하여 제한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가공 폐기물 처리는 수의 위생 방역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일반무역방식으로 가금육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입국항구 직속 검험검역국으로 부터 등기자격을 취득한 지정 저장냉장창고와 저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입 가금육제품은 검험검역에 합격되기 전에 반드시 지정저장냉장창고에 저장해야 함
 - 검험검역기구는 모든 수입 가금육제품을 저장하는 냉장창고에 대해 등기를 하며, 등기자격을 취득한 냉장창고만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수입 육류제품을 저장할 수 있으며 등기된 냉장창고는 일률적으로 유효한 검험검역증명에 따라 수입 육류제품을 입고시키고, 냉장창고는 반드시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입고 등록을 책임지게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하고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검험검역기구와 연락해야 함

- 냉장창고는 이상상황 발생시 검험검역기구에 이를 통보하고 각종 불법 수입 육류제품의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으며 등기된 냉장창고는 반드시 저장한 수입 육류제품의 출처, 행방, 수량을 상세히 기록하며 수시로 검험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전염병 유행국가 또는 지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농업부에서 공동 발표한 명단을 기준)으로부터 관련된 가금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경고 통보로 임시중지한 외국 생산가공업체로부터 관련된 가금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

(7) 소시지

- 위탁가공 또는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입업체는 수입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기업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소시지는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기업 내에서 생산, 사용, 저장해야 함
-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전염병 발생국가 또는 지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농업부에서 공동 공고한 리스트를 기준)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조기경보 통보에서 임시로 수입을 중지한다고 규정한 국가/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 관련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

(8) 분유와 유제품

- 분유와 유제품의 수입 감독관리 조건은 검험검역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화물통관증”을 취득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화물통관증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함
- 수입 유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호주, 브라질, 폴란드,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스위스, 스페인, 뉴질랜드, 칠레 등 국가 관련 부서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기 국가의 對 중국 수출 유제품은 반드시 상기 정부로부터 고정된 양식의 위생증서를 취득해야 중국 세관에 통관을 신고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에 수입 가능

- 수입분유와 유제품은 수입지역 검험검역국에서 검험검역 신고수속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6년 제44호 공고(수출입식품, 화장품 라벨 심사제도 조절에 관한 공고)에 따라 수입지역 검험검역부서에서 수입 분유와 유제품의 검험검역을 진행할 때에 라벨내용이 관련 법률, 법규 요구의 부합 여부를 검사하며 품질에 관련된 내용의 진실성을 검사
 - 검험에 합격될 경우에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검험증명서류에 “라벨은 심사에 합격”을 표기하고 수입분유와 유제품 라벨관련 사항은 “수출입 포장식품, 화장품 라벨 검험규정(시행)”을 참조
- 유아용 분유는 특수식용식품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아용 분유를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지역 검험검역국으로부터 특수식용식품의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검험검역부서에 검험검역을 신고할 수 있음

(9) 수산물

- 해양어업,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후 재수출할 경우 원료증명을 제출하며, 양식류 제품은 양식지역과 양식과정의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수산물 원료는 전염병이 없는 지역 또는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공급되어야 함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심사비준제도를 시행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심사비준수속을 밟아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없이 수산물 수입불가
- 검험검역부서는 수입 수산물을 저장한 모든 저장창고에 대해 심사하여 등록하며, 등록자격을 취득한 저장창고에서만 저장할 수 있으며 등록 저장창고에는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출입고 등기를 책임지고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하며 검험검역부서와의 연락을 책임지며 저장창고는 이상 상황 발생시 검험검역부서에 통보하며 각종 수산물 불법 수입행위를 신고해야 함
- 2010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업체는 농업부로부터 “합법 어로제품 통관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세관에 “합법 어로제품 통관증명”을 제출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자. 라벨링 규정

1) 라벨링 관리체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직책범위 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라벨의 감독관리를 책임
- 라벨링 관련법규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식품라벨관리규정”
 -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 심사제도 조절에 관한 공고”
 -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검험규정(시행)”
 -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
 -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 “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GB16740-1997)

2) 식품라벨표준

- 1987년 5월 국가기술감독국은 GB7718-1987 “식품라벨통용표준”을 발표하고 이 표준을 통해 식품라벨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증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 1994년과 2004년의 수정을 거쳐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GB7718표준의 시행기초에서 중국 현실, 식품 종류, 라벨 관리 등 문제를 고려하여 GB10344-1989 “음료주라벨표준”과 GB13432-1992 “특수영양식품라벨” 표준을

발표

- GB7718-2004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에 GB10344-1989 표준을 수정하여 2005년 12월 GB10344-2005 “포장음료주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002년 GB13432-1992 표준을 수정하여 2004년 5월 GB13432-2004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

- GB7718-2004 표준은 국제식품법전위원회 CODEX STAN 1-1985 (1991년과 1999년에 수정) “포장식품라벨통용표준(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을 참조하고 동시에 미국연방법규 제101부분 “식품라벨”을 참조
- GB7718-2004 표준은 포장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포장식품라벨에 적용

(2) GB13432-2004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

- GB13432-2004 표준은 포장특수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 허용표시내용, 추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일부 특정인의 생리요구 또는 일부 질환환자의 영양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수 배합으로 가공한 포장식품라벨에 적용

(3) GB10344-2005 “포장음료주라벨통칙”

- GB10344-2005 표준은 알코올(에탄올 함량) 농도가 0.5% 이상의 모든 포장음료주의 라벨에 적용하며 주로 표준의 적용범위,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

(4) 관련 식품표준이 라벨에 대한 특별규정

- 상기 3개 라벨표준 외에 많은 제품표준도 라벨에 대해 특별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특징성분 함량에 대한 표시를 규정
 - GB2746-1999 “요구르트(yoghurt)” 표준과 GB5408.1-1999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 표준은 제품의 종류와 단백질, 지방, 무지방 우유고체의 함량 등도 규정했으며 GB8537-1995 “음용천연광천수” 표준은 제품라벨에 반드시 광천수원지의 명칭 및 일부 이온의 함량범위 등을 표시해야 함

【 특수표시내용을 규정한 제품표준 】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2746-1999 | 요구르트(yoghurt) |
| 2 | GB5408.1-1999 |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 |
| 3 | GB5408.2-1999 | 살균우유(sterilized milk) |
| 4 | GB5410-2008 | 분유 |
| 5 | GB5415-2008 | 크림(cream) |
| 6 | GB5417-2008 | 연유 |
| 7 | GB8537-1995 | 음용천연광천수 |
| 8 | GB10765-1997 | 유아 처방분유 I |
| 9 | GB10755-1997 | 유아 처방분유 II, III |
| 10 | GB10767-1997 | 영아/유아 처방분 및 영아/유아 보충곡분 통용조건 |
| 11 | GB10769-1997 | 영아/유아 이유기 보조식품 |
| 12 | GB10770-1997 | 영아/유아 이유기 보충식품 |
| 13 | GB10792-2008 | 탄산음료(사이다) |
| 14 | GB15266-2000 | 운동음료 |
| 15 | GB16740-1997 |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 |
| 16 | GB17946-2000 | 소흥주(소흥황주) |
| 17 | GB18186-2000 | 양조간장 |
| 18 | GB18187-2000 | 양조 식초 |
| 19 | GB/T19343-2003 |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
| 20 | QB/T2300-2006 | 식물단백질음료 야자주스 및 복원성 야자주스 |
| 21 | QB/T2301-1997 | 식물단백질음료 호두주스 |
| 22 | QB/T2438-2006 | 식물단백질음료 아몬드(almond)주스 |
| 23 | QB/T2439-1999 | 식물단백질음료 땅콩주스 |
| 24 | SB/T10013-2008 | 아이스크림(ice cream) |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25 | SB/T10014-2008 | 아이스마이어(ice mire) |
| 26 | SB/T10015-2008 | 아이스케이크(ice cake) |
| 27 | SB/T10016-2008 | 하드아이스크림(hard ice cream) |
| 28 | SB/T10018-2008 | 캔디(candy) 경질캔디 |
| 29 | SB/T10329-2000 | 케이크장식(decorating cake) |
| 30 | SB10336-2000 | 조제 간장 |
| 31 | SB10337-2000 | 조제 식초 |
| 32 | SB10338-2000 | 산분해 식물단백질 조미료(액체) |

3) 라벨 표기방법

(1) 라벨 표기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하면,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법률, 행정법규에서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식품을 제외) 아래와 같은 기본사항을 표기해야 함

【 라벨 표기사항과 금지사항 】

| 구 분 | 세 부 사 항 |
|------|---|
| 표기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칭 - 식품원산지 -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 - 식품의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저장조건 - 순함량, 고형물 함량(정량포장 식품일 경우) -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 리스트 - 생산업체가 적용하는 제품표준코드 -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 -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생산허가증이 필요할 경우) -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 |
| 금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건강식품이 아니지만 건강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오도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내용 - 첨부한 제품설명이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내용 - 문자 또는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 설명하는 내용 - 국기, 국장 또는 인민폐 등으로 표기하는 내용 -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 |

【 식품라벨 불법행위 】

| 구분 | 세 부 사 항 |
|----|---|
| 1 |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위조하거나 허위 표기 |
| 2 | 식품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기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 |
| 3 |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를 위조, 사칭, 변조 |
| 4 |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

(2) 주의사항

- 식품라벨은 식품 또는 그 포장과 분리하지 못하며, 반드시 최소판매단위의 식품 또는 그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함
- 1개 판매단위의 포장에 서로 다른 품목, 몇 개 독립포장 식품에 대해 각 독립포장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표기해야 함
 - 판매단위의 외부포장을 통해 각 독립포장 식품의 모든 또는 일부 강제성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판매단위의 외부포장에 각각 표기해야 하지만 각 독립포장 식품의 모든 또는 일부 강제성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부포장에 관련내용을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며, 라벨 뒷면과 바탕색은 서로 비교가 되는 색깔을 채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라벨의 모든 문자는 반드시 규범화된 중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등록상표는 제외되며 식품라벨은 동시에 한자 병음 또는 소수민족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중문과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며 외국어는 대응되는 중문보다 크지 않아야 하나 등록상표의 경우는 제외
-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이 20cm² 이상일 경우, 식품라벨에서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은 10cm² 이하일 경우, 식품라벨은 식품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순함량 및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만 표기할 수 있음
 -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함

4) 품목별 라벨링규정

(1) 수입식품

① “식품안전법” 제66조의 규정

- 수입 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함
-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식품안전법과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야 함
- 포장식품이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어 라벨, 설명서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 불가

②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 의 규정

- 수입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와 강제성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2006년 4월 1일부터 수입식품의 라벨심사와 수입식품의 검험검역을 결합시켜 사전 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미 취득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며, 수입식품 라벨과 심사증서에서의 표기내용이 서로 부합되면 라벨검험을 면제할 수 있음

(2) 포도주

- 일반적으로 주류라벨에는 원산지 생산업체의 라벨(정면 라벨)과 수입업체 또는 원산지 생산업체가 수입업체 및 정부의 규정에 따라 부착한 중문 라벨(뒷면 라벨) 2가지가 있음
- 포도주 라벨은 일반적으로 포도 품목, 포도주 명칭, 수확 연도, 등급, 생산지역, 포장업체, 생산업체 명칭, 생산국, 순함량, 알코올 농도 등을 포함

【 포도주 라벨 표기사항 】

| 표기사항 | 설명 |
|---------|---|
| 포도품종 | - 모든 포도주병에 포도품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님 - 전통적인 유럽 포도주 생산지역은 서로 다른 규정이 있음 |
| 포도주 명칭 | - 포도주 명칭은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명칭이며 장원 주인이 특정한 명칭, 심지어 생산지역 명칭일 수도 있음 |
| 수확 연도 | - 병에 표기하는 연도는 포도의 수확 연도이며 연도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서로 다른 수확 연도의 포도를 혼합하여 양조한 것임 |
| 등급 | - 포도주 생산국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며 라벨을 통해 제품의 등급을 알 수 있음 |
| 생산구역 | - 전통적 포도주 생산지역에 대해 라벨에서의 생산구역 명칭은 하나 중요한 정보이며, 어떤 포도주 생산지의 명칭은 포도주의 지명도를 거의 결정 |
| 포장업체 | - 포장업체는 양조업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 양조업체는 스스로 생산한 포도주는 "기존 생산업체가 생산"이라고 표기 |
| 생산업체 명칭 | - 유명한 양조업체는 품질의 보증이며,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와 포장업체는 같은 업체임 |
| 순함량 | - 일반적으로 용량은 모두 750ml이며 비교적 작은 375ml, 250ml, 185ml 용량의 포도주도 있으며 연회용으로 1,500ml, 3,000ml, 6,000ml 용량의 제품도 있음 |
| 알코올 농도 | - 일반적으로 () 또는 (%)로 알코올 농도를 표기하며 포도주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8-15% 임 |

(3) 쌀

- 포장된 쌀은 검험검역인원이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과 수입식품 라벨심사 관련규정에 따라 라벨을 심사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발표한 신규 국가표준인 “쌀”(GB1354-2009)은 기존 “쌀”(GB1354-1986)을 대체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신규 국가표준은 라벨에 대한 요구를 추가하였음
- 쌀을 구매할 때 반드시 포장에 표기한 제품 명칭, 순함량,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품질등급, 제품표준번호, 특별표기내용 등에 주의해야 함

(4) 수산물

- 수산물 제품의 라벨은 제품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위탁생산일 경우에 위탁을 받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표기), 제품표준번호, 제품위생허가비준번호, 생산날짜 또는 생산비준번호, 제품 특징에 따라 표기하는 주요 품질지표와 주요 기술 파라미터를 표기해야 함
- 수산물 포장에 표기할 내용은 품목명, 생산지, 생산업체, 생산날짜, 품질등급, 품질보증기한 등이 있으며 제품라벨에 표기할 내용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품 종류와 규격 등임

3 수출입 검사제도

가. 검험검역 관리체계

1) 관리체계

(1) 관리부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를 관리
-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 :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했고 약 300개 분국과 200개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험과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책임지며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성급 품질기술 감독국을 설립

【 출입국검험검역기구, 세관, 품질기술 감독관리의 역할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출입국검험검역기구 |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소속 - 출입국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수출입상품검험의 주관부서 -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한 신고와 검험검역만 책임 |
| 세 관 | - 세관총서에 소속 -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징세와 합법성 감독을 진행 |
| 품질기술감독관리부서 | - 국내 제품품질, 표준계량과 특종설비 등의 감독관리를 책임 |

(2) 출입국검역검역 주요업무

| 업무분류 | 업무내용 |
|-----------------|---|
| 수출입상품 검험 |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포함된 출입국상품과 기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검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상품에 대한 검험 |
| 수입상품 인증관리 | 국가에서 인류건강과 동식물건강 및 환경보호와 공공안전과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성인증제도 |
| 입국폐기물원료 선적전의 검험 | 국가에서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폐기물에 대한 선적전 검험제도 |
| 수출상품 품질허가 | 국가에서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허가제도 |
| 식품위생 감독검험 | 수입식품(음료, 주류, 설탕류를 포함), 수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공구와 설비에 대한 위생감독검험 |
| 동식물 검역 |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 깔개재료, 동식물 전염병지역의 운송공구, 입국시 해체한 폐기 선박, 식물 종자와 증묘, 기타 번식재료에 대한 검역허가제도 |
| 출국상품 운송포장 검험 |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운송포장에 대한 성능검험 |
| 외상투자재산 감정 | 외상투자 재산 감정은 상품의 가치감정, 손실감정, 상품의 품목, 품질, 수량에 대한 감정 등을 포함 |
| 화물 적재와 파손 감정 | 선박과 컨테이너로 식량과 식용유식품, 냉동품 등 부식되기 쉬운 식품을 적재하여 수출할 경우,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한 감정 |
| 위생검역과 처리 |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컨테이너, 수하물, 화물, 우송물 등에 대한 의학검사와 위생검사 |
| 섭외검험검역감정 심사절차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설립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수출입상품 검험, 감정, 인증회사에 대한 심사 |
|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협력 | WTO/TBT협약서와 SPS협약서 자본업무, UN, APCE과 ASEM 등 국제조직과의 연락업무, 정부 간 검험검역 협력협약서, 인증인가 협력협약서, 검험검역 협약서 집행의정서 등의 체결과 실시를 책임 |

(3) 수출입상품검험, 출입국동식물검역, 국경위생검역

【 법률근거, 검험검역내용, 검험방식 】

| 업무 | 항목 | 세 부 내 역 |
|----------|------|--|
| 수출입상품검험 | 법률근거 | - “수출입상품검험법”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 | 검험내용 | -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
| | 검험방식 | - 법정검험 - 계약검험 - 공정감정 - 위탁검험 |
| 출입국동식물검역 | 법률근거 |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
| | 검역내용 | -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
| | 검역방식 | - 입국검역 - 출국검역 - 중계검역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 출입국 운송공구 검역 |
| 국경위생검역 | 법률근거 |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 | 검역내용 | -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경, 생활시설,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와 샘플링검험 |
| | 검역방식 | - 출입국 검역 - 국경 전염병 검사 - 출입국 위생감독 |

2) 법률체계

| 구 분 | 관련법규 |
|--------------|--|
|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식품안전법” 등 |
| 행정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특별규정” - “유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등 |
| 행정규정과 규범성 문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식품생산업체위생등록등기관리방법” - “출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국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식품표기관리규정” - “수출음료생산업체등록위생규법” - “식품첨가제사용위생표준” - “식품중농약최대잔류물 제한량” - “식품중오염물제한량 표준” 등 |

나. 검험검역 형식 및 방법

1) 법정 검험검역

- 법정 검험검역은 “수출입상품검험법”과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험검역법”과 그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과 그 실시세칙,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출입국 인원, 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통칭 :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해 검험, 검역, 감정 등 검험검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일컫음
- 수출입상품의 법정 검험검역은 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약칭 : 법정검험검역목록)에서 기재되어 있음

| 구분 | 검험검역 범위 |
|----|---|
| 1 | 법정으로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수출입상품, 출입국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
| 2 |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하는 적재용기와 포장물 |
| 3 | 동식물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운송공구,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운송설비 및 검역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

2) 검험검역 형식

●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상품의 공동 검험, 위탁 검험과 인가 검험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① 자체검험

- 자체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 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

② 공동검험

- 공동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 기업, 수입 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 검험은 수출입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임

③ 위탁검험

- 위탁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자 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방법이

결핍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업체)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④ 인가검험

- 인가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 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며 그 검험결과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한 기초에서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3) 검험검역 방법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방법은 ① 각종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화학성분과 특성 등 각종 품질특징 및 안전, 위생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 ② 각종 방법으로 저장운송, 하역과정에서의 상황 및 포장, 운송공구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분류

-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샘플 추출 및 실험실에서 진행하며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의 검험으로 진행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방법은 감각기관 검험방법, 물리화학 분석, 위생학 검사 등이 있으며, 주요 분석방법은 중량 분석법, 적정 분석법, 색층 분석법, 분광 광도 분석법, 미생물법 등임

① 감각기관 검험방법

- 감각기관 검험법은 검험검역인원이 본인의 감각기관(눈, 귀, 코, 혀, 손)의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식품의 형태, 색깔, 맛, 냄새, 경도에 대해 위생 평가임

② 중량 분석법

- 중량 분석법은 검사할 성분을 일정한 방법으로 샘플에서 분리한 다음에 검사할 조(組)의 중량 또는 샘플에서 기타 성분의 중량에 의하여 검사할 조가 샘플에서의

함량을 계산하며 중량 분석법은 기화(氣化)법, 추출법, 침전법 등임

③ 적정 분석법

- 적정 분석법은 일종 이미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표준 용액)을 샘플 용액에 떨어뜨려 검사할 물질과 충분히 반응을 일으키며(즉, 표준 용액의 당량수와 검사할 물질의 당량수가 같음), 표준 용액의 농도와 소모한 체적에 의하여 검사할 물질의 함량을 계산하며, 적정 분석법은 산알칼리 적정법, 산화환원 적정법, 침전 적정법, 화합 적정법 등임

④ 크로마토그래프법

- 색층 분석법은 식품 위생검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리화학 분리분석법으로 그 원리는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물리화학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이 서로 다른 2개 상(相)(고체 상(相)과 유동 상(相))에 분포되게 하여 각 성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여 분리하며, 색층 분석법, 종이 층 분석법, 얇은 층 분석법 등이 있음

⑤ 계기 분석법

- 계기 분석법은 주로 미량, 초미량 성분의 검사에 사용되며 속도가 빠르고 효율과 민감도가 아주 높은 선진적 분석 검험검역방법이며, 광학분석법(분광광도분석법, 원자흡수법 등), 전기화학 분석법(전위법 등), 크로마토그래프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액상 크로마토그래프법 등)과 기타 분석법(질량스펙트럼법 등) 등이 있음

⑥ 생물학 검험법

- 생물학 검험법은 미생물학검험방법(현미경관찰법, 번식법, 순종분석법, 형태관찰법), 생물학검험법(조직학분석법, 생리시험법)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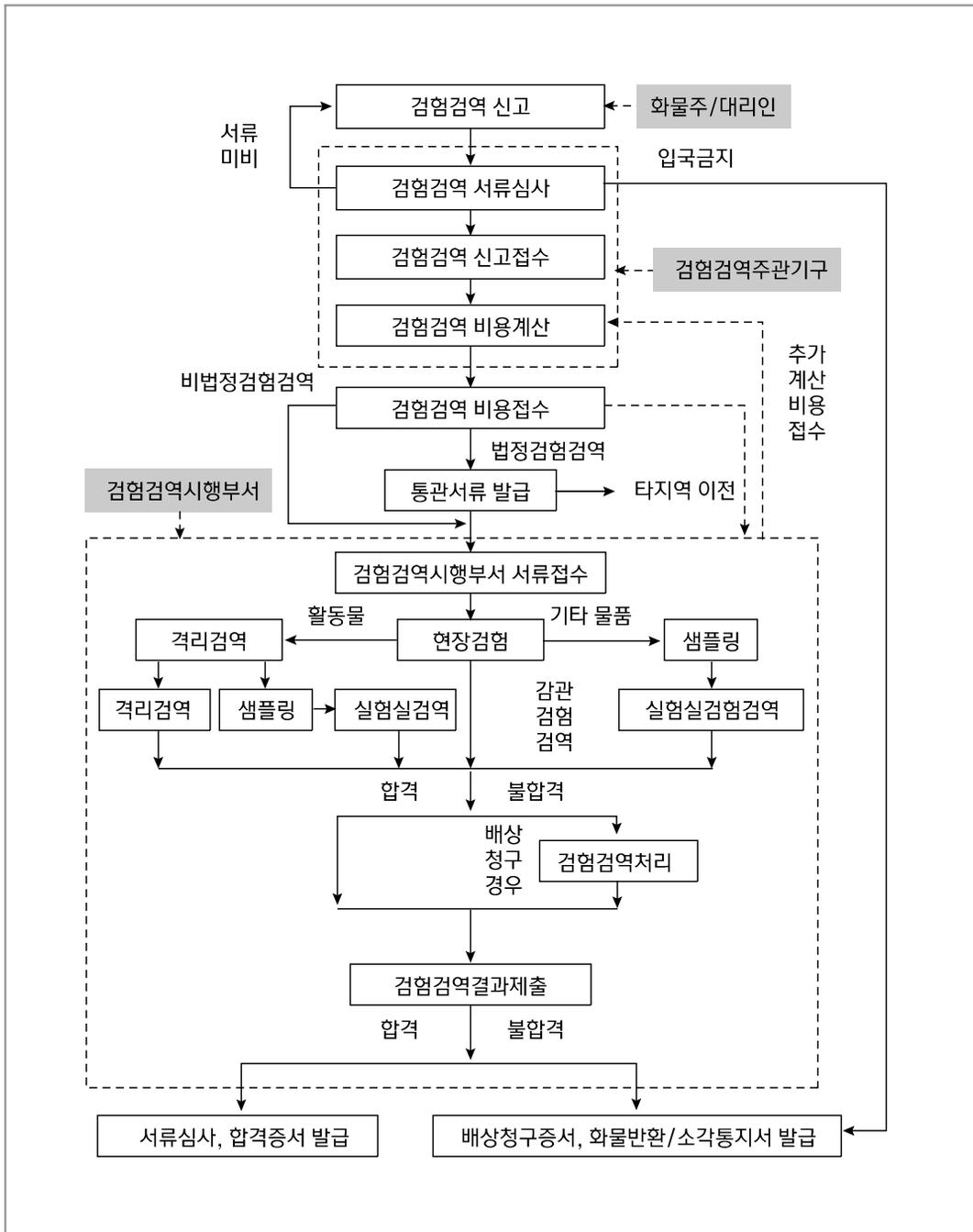
⑦ 유해·유독물질 검험법

- 유해·유독물질 검험법은 식품의 유해·유독물질(농약, 짐승 약, 유독 중금속, 유독 화합물 등 잔류량)에 대해 검사하며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해 검험하는 방법이며, 가스 또는 액상 크로마토그래프법, PCR검사기술 등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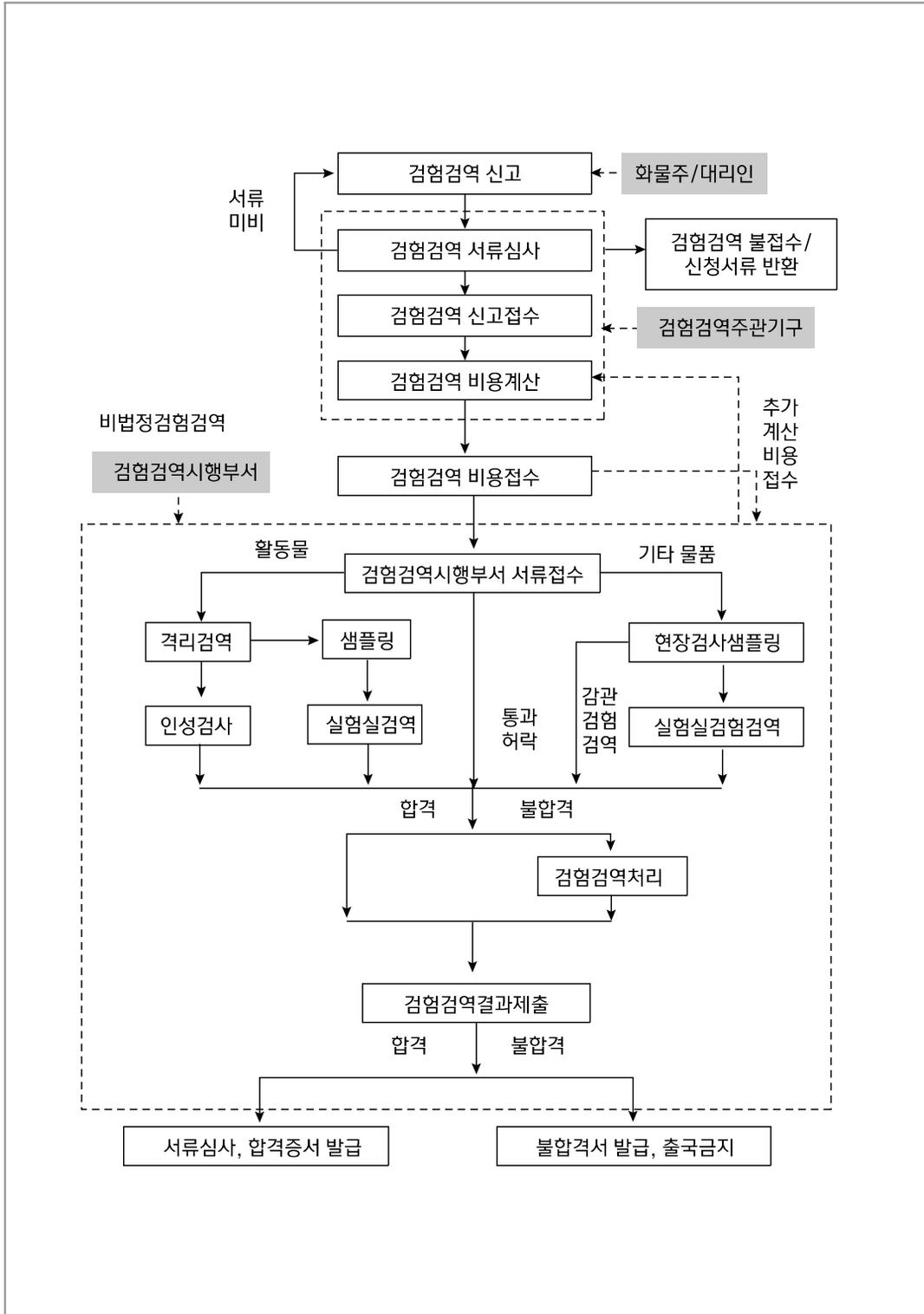
다. 검험검역 절차 및 제도

1) 출입국화물

【 수입화물 검험검역절차 】



【 수출화물 검험검역절차 】



2)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1) 검험검역 범위

| 구 분 | 검험검역 대상 |
|------|--|
| 수입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식품첨가제 - 식품용기 - 포장재료 - 식품용공구 및 설비 -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
| 수출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식품 - 식품첨가제 |

(2)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수입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
| 수출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

(3) 검험검역 신고기한

| 구 분 | 신고기한 |
|--|---------------------|
|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 종자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 수정란을 수입할 경우 | 입국 30일 전 |
|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 입국 15일 전 |
|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 입국 7일 전 |
| 입국화물의 대외 배상청구에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 배상청구 유효기간의 최소 20일 전 |

(4) 검험검역 신고장소

- 비준, 허가증 등 관련 증서에 검험검역 장소를 규정한 경우, 규정한 장소에서 검험검역을 신고
- 대중상품, 부식변질하기 쉬운 상품, 폐기물품 및 하선할 때에 포장파손 또는 수량부족이 발견된 상품은 반드시 하선항구 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신고
- 설치시운전과 연관되어 검험을 진행해야 하는 플랜트 설비, 기계전기계측기제품 및 항구에서 개봉한 후 포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품은 반드시 수하인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
- 기타 입국화물은 반드시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지역 검험검역기구에 신고
- 직통식 통관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입국지의 선택에 따라 항구 검험검역기구 또는 목적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음

(5) 검험검역비용

① 계산근거

- 출입국검험검역비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2003년 12월 31일에 발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 “출입국검험검역요금방법”을 계산 근거로 함

② 비 용

- 출입국검험검역비용은 출입국화물의 검험검역비, 등기, 인증인가, 증서발급, 출입국 동식물의 실험실검역 항목비, 감정업무비, 검역처리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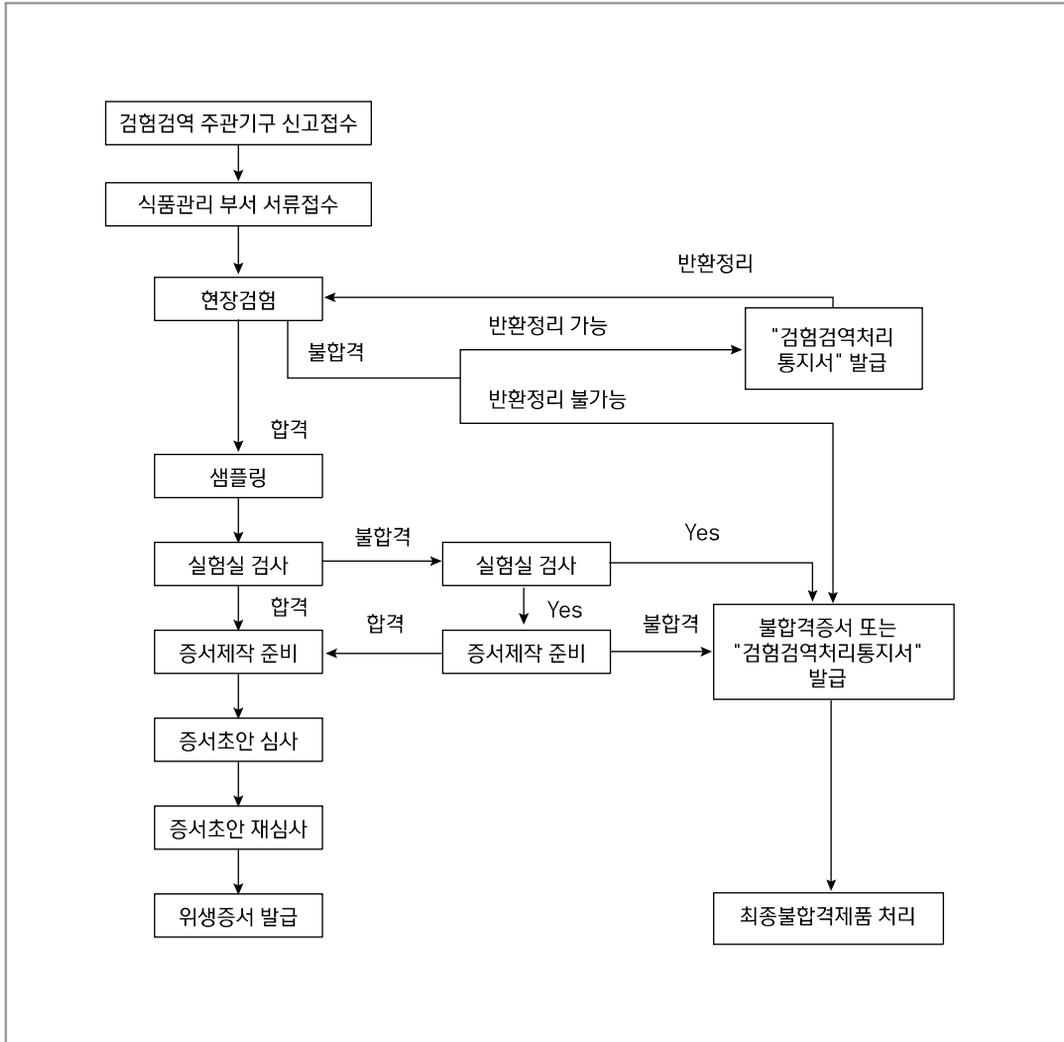
③ 계산기준

- 기본상 화물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요금비율 또는 중량, 수량, 검험검역 또는 감정항목을 기준으로 정액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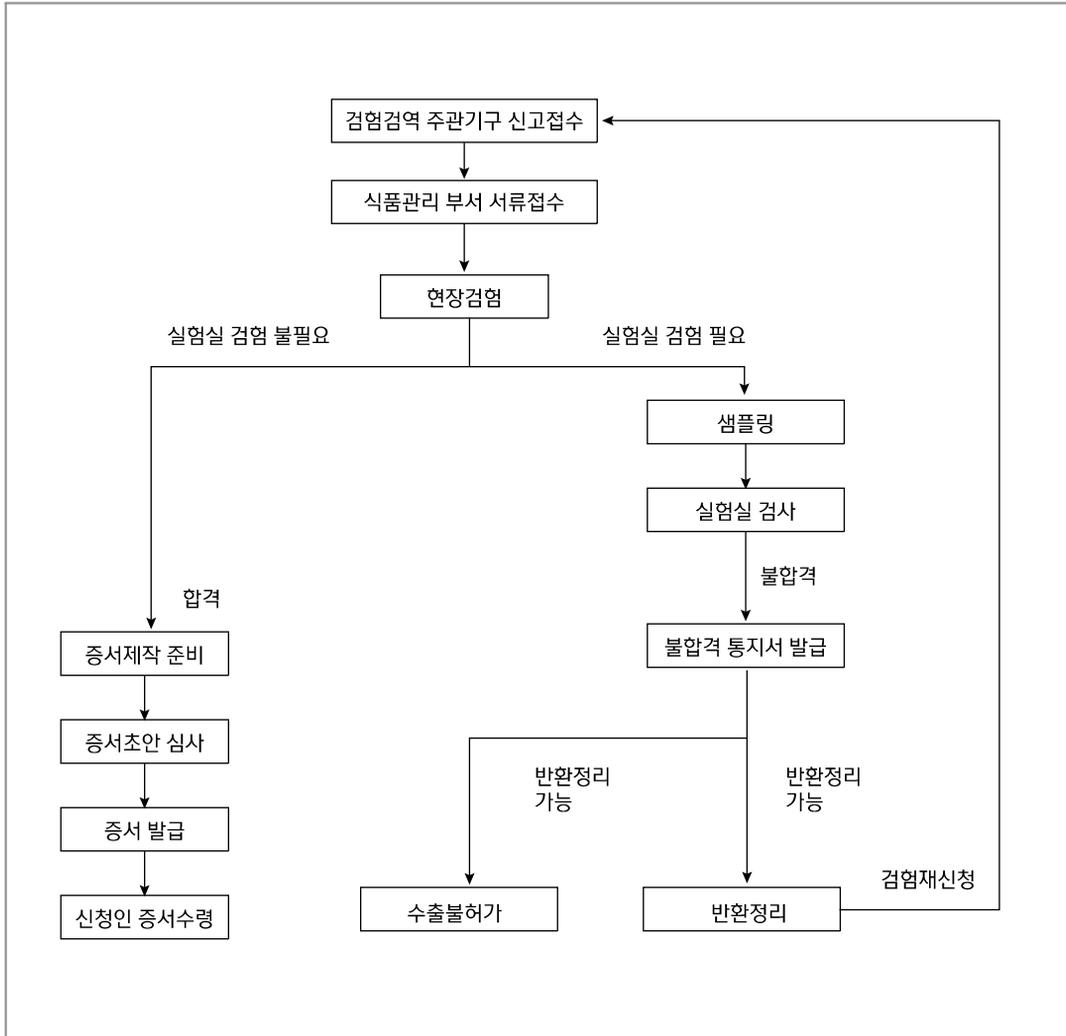
(6) 검험검역제도 위반시 제재조치

| 구 분 | 관련규정 | 제재조치 |
|---|--------------------|--|
|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 -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의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
|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 또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제품 신제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 | - 불법 생산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5만 위안 벌금 -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10배 벌금 -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
| 위생등기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 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 “상품검험법실시조례” | - 수입중지를 명령 - 불법소득을 몰수 - 상품가치의 10~50% 벌금 |
|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 | - 시정을 명령 및 경고 - 거절할 경우, 2천~2만 위안 벌금 - 엄중할 경우, 생산중지를 명령, 허가증 취소 |

【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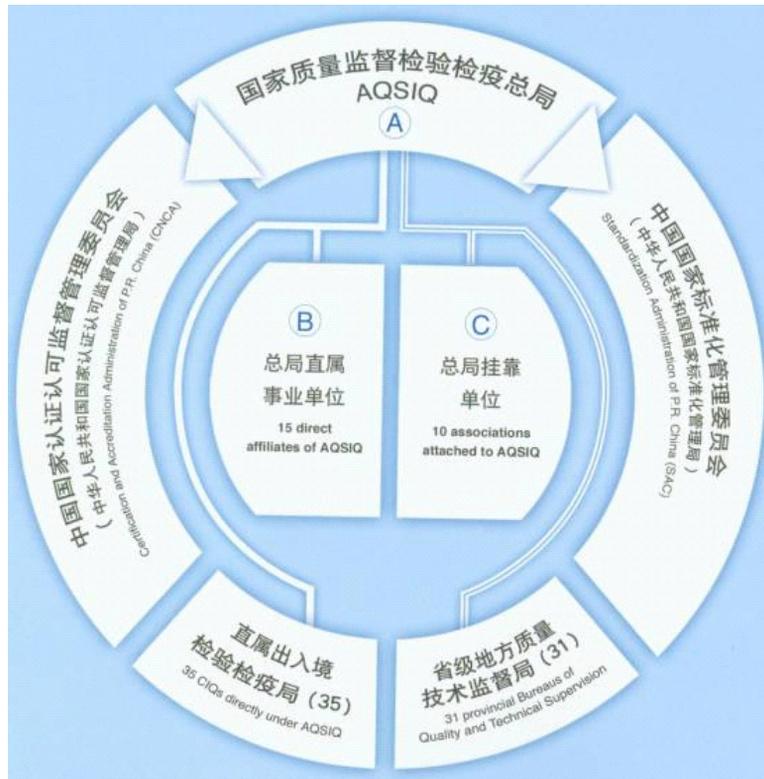
【 수출식품 검험검역절차 】



라. 검험검역 관련기관

1)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수출입 동·식물 검역과 인증 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사무청, 법규사, 품질관리사, 계량사, 통관업무사, 위생검역감독관리사,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 검험감독관리사, 수출입식품안전국, 특종설비안전감찰국, 제품품질감독사, 식품생산감독관리사, 법률집행감독검사사, 국제합작사(WTO사무실), 과학기술사, 인사사, 계획재무사, 감찰내부감사사, 기관당위원회와 퇴직간부국 등 20개 사(청, 국)로 이루어짐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국)에 대한 관리를 진행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인증인가업무를 관리, 감독, 종합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표준화업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임

3)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직속 사업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기관서비스센터, 정보센터, 국가검험검역표준과 기술법규 연구센터, 중국섬유검험국,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중국표준화연구원, 중국계량과학연구원, 중국품질인증센터,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센터, 중국특종설비검사 연구센터, 인력자원개발교육센터, 중국품질신문사, 중국국문시보신문사, 중국표준출판사와 중국계량출판사 등 15개 직속 사업기관을 설치하여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정책결정과 실시에 있어 기술 등을 지원 제공

4)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 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중국출입국검험검역협회, 중국국제여행위생보건협회, 중국품질검험협회, 중국계량협회, 중국인증인가협회, 중국표준화협회, 중국계량측정학회, 중국위조방지협회, 중국설비감리협회, 중국품질관리행촉진회 등 10개 소속 기관을 설치

5)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직속 출입국관리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하고 항구와 화물 집산지에 약 300개 분지국과 200개 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직식 관리를 진행

6) 성급 기술감독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품질기술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하고 약 2,800개 행정부서를 설치

7) 국가수출입식품안전국

- 2001년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식품안전국을 설립하여 수출입 식품, 화장품 안전의 관리업무를 책임짐

가.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제도

1) 법률체계

(1) 법률

- 2009년 2월 28일 제11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한 “식품안전법”은 중국 식품 법률체계에서 법률효력 등급이 가장 높은 규범성 문건으로서 식품안전위생 법규, 규정과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근거임
 -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률은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농업법”, “수출입상품검험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광고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부정당경쟁법”, “상표법”,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임

(2) 행정법규

- 행정법규는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지방성 행정법규가 있으며 그 법률효력은 다음과 같음
 - 식품관리 행정법규는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지칭하며 행정법규의 명칭은 조례, 규정, 방법이 있음
 - 지방성 식품 행정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등에 저촉하지 못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
- 현재 식품과 관련된 행정법규는 “식품유통관리조례”, “수출식품생산업체위생등기등록관리규정”, “식품라벨불법행위 조사처리규정”, “음식업식품위생관리방법”, “출입국동식물 검역법실시조례”, “식품첨가제위생관리방법”, “보건식품등록관리 방법” 등임

(3) 부서규정

- 부서규정은 공무원 행정부서에서 제정한 부서규정과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규정을 포함하며, “신자원식품위생관리방법”, “유기식품인증관리방법”, “유전자변형 식품 위생관리방법” 등임

(4) 기타 규범성 문건

- 규범성 문건은 법률, 행정법규와 부서규정에 속하지 않으며 표준 등 기술규범에도 속하지 않으며, 공무원 또는 행정부서에서 발표한 각종 통지, 지방정부 관련부서에서 제정한 식품위생허가증발급관리방법 등임

(5) 식품표준

- 식품공업의 각종 표준을 지칭하며 식품제품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분석방법표준, 식품관리표준, 식품첨가제표준, 식품용어표준 등임

2) 식품 법률집행부서

(1) 식품감독관리부서

- 식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보건품,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로 중국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성급(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시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을 포함

(2) 식품위생행정부서

- 위생행정부서는 헌법과 행정조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생행정 직책을 이행하는 부서로서 위생부, 성급(자치구, 직할시) 위생청(국), 시급 위생국, 현급 위생국을 포함

(3) 식품품질기술감독검험부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 품질, 계량, 출입국상품검험, 출입국위생검역, 출입국동식물검역, 인증인가와 표준화 등을 주관하는 부서임

(4) 공상행정주관부서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와 관련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직속 기관임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직

-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식품 법률집행조직은 주로 각급 식품감독관리, 위생방역, 품질기술감독, 공상관리 등임

(6) 연합 법률집행주체

-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감독관리부서가 기타부서(품질기술감독부서,公安부서, 공상관리부서 등)와 공동으로 식품법률을 집행할 경우, 동 부서가 연합 법률집행주체가 됨

3) 식품생산경영허가제도

(1) 개요

- 식품생산경영허가는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생산경영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심사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생산 경영장소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한 후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행정행위임

- 식품생산 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업체는 생산 장소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유통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됨
 - 음식서비스 허가를 취득한 자는 음식 서비스장소에서 제작 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생산과 식품유통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농민이 자체로 생산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식품유통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2) 식품생산경영안전의 감독관리

- “식품안전법”은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
 - 생산경영장소에서 현장검사 실시
 - 생산경영 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험을 진행
 -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열독, 복사
 -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불법 사용한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및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거나 오염된 공구, 설비를 봉인, 압류
 - 불법으로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봉인
- 현급 이상의 농업 행정부서는 “농산물품질안전법”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용 농산물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감독검사관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 감독검사 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
 -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신용서류를 작성하고 허가 발급, 일상 감독검사결과, 불법행위 조사처리 등을 기록
 - 각자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 정보를 발표
 -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할 정보에 대해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
 - 동급 감독관리부서는 서로 식품안전 정보를 통보

(3) 식품안전 행정처벌

- “식품안전법”과 행정처벌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규정한 직책 범위에서 식품안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정처벌법” 제8조는 행정처벌을 경고 및 기한 내 시정, 벌금, 생산경영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령,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 허가증을 임시 압류 또는 취소, 업무를 임시 중지 또는 취소, 행정구류 등으로 분류하며, 그 외에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이 있음

4) 식품생산시장진출제도

(1) 식품품질안전시장진출제도

- 식품품질안전시장진출제도는 식품생산허가, 강제성 검험, 시장진출마크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식품의 품질안전을 보증하며 규정한 조건을 갖춘 생산업체만 생산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규정한 조건을 갖춘 식품만이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감독제도임
- 중국은 등급 분류관리, 강제성 검험, 감독 표본조사, 리콜, 연도검사 등 감독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식품 품질안전을 보증

(2) 식품양호생산규범

- 중국 GMP “식품기업통용위생규범”은 주로 식품업체의 공장구역, 생산현장, 창고의 배치와 건축설계, 생산시설, 설비, 저장과 운송설비의 위생통제, 기업의 환경, 위생과 소독 요구와 기업직원의 건강위생 관리 등에서 식품 생산가공업체에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식품업체가 식품 생산가공에 종사하는 양호한 생산위생규범임
- GMP는 생산위생체계로서 시설, 설비의 위생요구를 강조하지만, 식품시장진출제도의 “현장확인표”에서 규정한 각종 기본요구는 식품 생산업체의 품질안전관리에서 체계화한 기본요구임

(3) HACCP관리체계

- HACCP는 식품가공, 식품미생물학, 식품품질통제와 위해평가 등 관련 원리와 방법으로 식품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잠재성 위해를 분석 판단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통제부분을 찾으며 관련된 통제조치를 채택하여 위해 발생을 예방
- HACCP 계획은 위해분석 진행, 핵심 통제 포인트를 확정, 핵심 극한치를 작성, 모니터링체제로 모든 핵심 통제 포인트의 통제현황을 모니터링, 핵심 통제 포인트가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수정조치를 수립, HACCP시스템이 유효하게 운영된다는 검증절차를 수립, 상기 원칙과 그 응용의 필요절차와 기록을 수립

5) 식품시장진출제도

(1) 식품시장진출의 내용

- 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생산허가증제도 : 기본 생산조건을 갖추고 식품 품질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 허가범위의 제품을 생산
- 기업이 생산한 식품에 대한 강제성 검토허가증제도 : 검토허가증을 하지 않거나 검토허가증에 불합격한 식품은 출고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자체검사 조건이 없는 생산업체에 대해 위탁 검토허가증을 진행
- 식품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진출마크제도 : 검토허가증에 합격된 식품에 시장진출마크(QS마크)를 부착하며, QS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2) 식품시장진출마크

- 식품시장진출마크는 식품품질안전시장진출제도의 전용마크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표한 식품품질안전시장진출 제도를 실시하는 식품
 - 식품 생산업체가 “식품생산허가증”을 이미 취득했으며 유효기간에 있을 경우
 - 출고 식품이 제품표준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는 출고 제품이 자체 검험에 합격하거나 위탁 검험에 합격할 경우, 식품시장진출마크를 부착한 후에 출고하여 판매할 수 있음

나. 식품표준 체계

1) 식품표준 현황

(1) 식품표준 분류

- 표준의 속성에 따라 식품표준을 강제성 식품표준, 추천성 식품표준, 지도성 기술문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강제성 식품표준은 식품안전 제한량 표준, 식품안전성 독리학 평가요구와 방법, 식품첨가제제품 및 사용요구표준, 식품라벨마크 표준, 유아식품제품표준, 지리마크제품표준, 국가의 통제관리가 필요한 중요제품표준 등이 있으며 기타는 추천성 식품표준임
- 표준 내용에 따라 식품표준은 식품 기초표준, 식품안전 제한량 표준, 식품통용 시험과 검험방법표준, 식품통용 관리기술표준, 식품라벨마크표준, 중요한 식품 제품표준, 기타 표준 등으로 분류

(2) 국내외 식품표준 비교

- 경비투입, 국제교류, 표준제정 등에서 중국 식품표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표준의 연구와 제정을 매우 중시

- 국가표준에 대한 증시와 참여가 부족
- 국가표준의 채용비율이 낮음
- 중국 표준에서 농약(가금약) 잔류물 제한량은 국가표준과 외국 선진국표준보다 낮으며 과학적이 아님
- 현행표준이 적음
- 가공과정에서의 품질안전 모니터링표준이 부족

2) 식품 기초표준

- 식품기초표준은 주로 통용 식품기술용어표준, 관련량과 단위표준, 통용 부호코드표준 등을 포함

(1) 식품용어표준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15091-1995 | 식품공업 기본용어 |
| 2 | GB18007-1999 | 커피와 커피제품 용어 |
| 3 | GB8869-1998 | 식량, 유료 및 가공제품의 명사용어 |
| 4 | GB/T12140-2007 | 케이크 용어 |
| 5 | GB/T12728-2006 | 식용버섯 용어 |
| 6 | GB/T12729.1-2008 | 향신료와 조미료 명칭 |
| 7 | GB/T14487-2008 | 차입 감각평가 용어 |
| 8 | GB/T15109-1994 | 백주공업 용어 |
| 9 | GB/T8873-1988 | 유지공업 명사용어 |
| 10 | GB/T12104-1989 | 전분(파생물과 부산물을 포함) 용어 |
| 11 | GB/T19480-2004 | 육류와 육류제품 용어 |
| 12 | GB/T21922-2008 | 식품 영양성분 기본용어 |
| 13 | QB/T1079-1991 | 맥주기계 용어 |
| 14 | QB/T3921-1999 | 유제품기계 명사용어 |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5 | SB/T10034-1992 | 찾잎 가공기술 용어 |
| 16 | SB/T10175-1993 | 곡수류 생산공업 용어 |
| 17 | SB/T10252-1995 | 건과 용어 |
| 18 | SB/T10291.1-1997 | 식품기계 용어 제1부분 : 음료기계 용어 |
| 19 | SB/T10291.2-1997 | 식품기계 용어 제2부분 : 케이크 가공기계 용어 |
| 20 | SB/T10295-1999 | 조미료 명사용어 종합 |
| 21 | SB/T10298-1999 | 조미료 명사용어 간장 |
| 22 | SB/T10299-1999 | 조미료 명사용어 장류 |
| 23 | SB/T10300-1999 | 조미료 명사용어 식초 |
| 24 | SB/T10301-1999 | 조미료 명사용어 절인 채소 |
| 25 | SB/T10302-1999 | 조미료 명사용어 삭힌 두부 |
| 26 | SB/T10325-1999 | 조미료 명사용어 콩식품 |
| 27 | SC/T3012-2002 | 수산물가공 용어 |
| 28 | ZB X 10004-1986 | 절인 채소 명사용어 |
| 29 | JB/T7863-2007 | 찾잎기계 용어 |

(2) 식품부호코드표준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T13385-2008 | 포장도안 요구 |
| 2 | GB/T12529.1-1990 | 식량과 식용유공업 도형부호, 코드 통용부분 |
| 3 | GB/T12529.2-1990 | 식량과 식용유공업 도형부호, 코드 정미공업 |
| 4 | GB/T12529.3-1990 | 식량과 식용유공업 도형부호, 코드 제분공업 |
| 5 | GB/T12529.4-1990 | 식량과 식용유공업 도형부호, 코드 유지공업 |
| 6 | GB/T12529.5-1990 | 식량과 식용유공업 도형부호, 코드 창고저장공업 |

(3) 식품분류표준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T4754-2002 | 국민경제 산업분류 가공식품부분 |
| 2 | GB/T7635.1-2002 | 전국 주요제품 분류와 코드 제1부분 : 운송가능제품 |
| 3 | GB/T2760-2007 | 식품첨가제 분류와 코딩 |
| 4 | GB/T14156-1993 | 식품용 향료 분류와 코딩 |
| 5 | GB/T17204-2008 | 음료주 분류 |
| 6 | SB/T10007-2008 | 냉동음료 분류 |
| 7 | GB/T21725-2008 | 천연 향신료 분류 |
| 8 | GB/T10784-2006 | 통조림식품 분류 |
| 9 | GB/T8887-1988 | 전분 분류 |
| 10 | GB/T20903-2007 | 조미료 분류 |
| 11 | SB/T10171-1993 | 식인 두부 분류 |
| 12 | SB/T10172-1993 | 장류 분류 |
| 13 | SB/T10173-1993 | 간장 분류 |
| 14 | SB/T10174-1993 | 식초 분류 |
| 15 | SB/T10297-1999 | 절인 채소 분류 |
| 16 | SB/T10346-2008 | 건과 분류 |
| 17 | SC3001-1989 |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 분류와 명칭 |

- 상기 표준에서 GB/T4754-2002 “국민경제 산업분류” 표준과 GB/T7635.1 -2002 “전국 주요제품 분류와 코드 제1부분 : 운송가능제품” 표준만 전반적인 식품분류가 있으며 나머지 표준은 모두 단일 분류 표준임

3) 식품안전표준

- 식품안전표준은 식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량 표준, 식품첨가제표준, 식품라벨표준, 식품안전검사방법표준, 식품안전 기초표준, 식품안전통제와 관리표준 및 기타 표준으로 분류

(1) 식품안전 제한량 표준

- 식품안전 제한량 표준은 농약 최대 잔류물 제한량 표준, 가축약 최대 잔류물 제한량 표준, 오염물 제한량 표준, 생물독소 제한량 표준, 유해미생물 제한량 표준 등을 포함

① 식품 중 농약 최대 잔류물 제한량 표준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GB15193.15-2003 | 식품 안전성 독리학 평가절차 |
| GB4285-1989 | 농약 안전사용표준 |
| GB2763-2005 | 식품 중 농약의 최대 잔류물 제한량 |

- 중국 농약 잔류물 제한량 국가표준은 100가지 오염물을 포함하며 산업표준은 90가지 오염물을 포함하지만 몇 가지 농약에 집중
- 중국 농약 잔류물 제한량 표준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존재
 - 1) 오염물 범위가 작다 2) 잔류물 제한량이 적다 3) 표준이 명확하지 않다 4) 표준 사이에 모순된다

② 식품 중 가축약 최대 잔류물 제한량 표준

- 농업부 235호 공고 “동물성식품 중 가축약 최대 잔류물 제한량 표준”은 중국 최신 가축약 잔류표준이며, 가축약 검사항목은 1999년 전의 45가지에서 2002년 12월의 96가지로 증가
- 최근 동물원성식품 수출무역에서 무역국가의 가축약 잔류물 제한량 표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많은 경제손실을 받았다. 중국은 가축약 최고 잔류물 제한량을 수정하여 현재 잔류량의 수량과 수치는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

③ 식품 중 오염물 제한량 표준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GB2762-2005 | 식품 중 오염물 제한량 |
| GB13106-1991 | 식품 중 아연 제한량 위생표준 |
| GB15199-1994 | 식품 중 등 제한량 위생표준 |
| GB15200-1994 | 식품 중 철 제한량 위생표준 |

- 2005년 위생부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GB2762-2005 “식품 중 오염물 제한량”을 발표하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불소, 벤조피렌, N-니트로아민, 폴리염화비페닐, 나이트리트, 히토 등 13가지 오염물이 식품 중에서의 제한량을 규정

④ 식품 중 생물독소 제한량 표준

- 2005년 1월, 중국은 GB2761-2005 “식품 중 진균독소 제한량”을 발표하여 식품 중의 AFT B1, AFT M1, DON, 파툴린의 제한량을 규정
- 2005년 9월까지 생물독소 최대 잔류물 제한량과 연관되는 식품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은 각각 42개, 68개임

⑤ 식품 중 유해미생물 잔류량표준

- 중국 식품 중 유해미생물 잔류량과 연관되는 식품은 주로 통조림식품, 계란제품, 냉동음료, 유제품, 조미료, 전분류 제품, 발효와 비발효성 콩제품, 천연광천수, 견과 등임
- 2005년까지 유해미생물 최대 잔류물 제한량 표준과 연관되는 식품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은 각각 142개, 303개

(2)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 현재 중국 식품첨가제는 2,000여 개 품목이 있으며 식품첨가제표준은 주로 제품표준, 식용위생표준, 검침방법표준 등
- GB2760-2007 “식품첨가제 사용위생표준”은 중국 현행 강제성 첨가제 사용표준으로서

식품첨가제의 사용원칙, 사용품목, 사용범위,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물을 규정

(3) 식품안전통제와 관리표준

- 2007년 말까지 중국에서 발표한 식품안전통제와 관리와 연관되는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은 각각 58개, 3개이며, 그 중에서 GB14881-1994 “식품기업 통용위생규범”, GB/T19538-2004 “HACCP체계 및 그 응용지침” 등 일부 중요한 표준을 포함

【 일부 식품안전생산통제표준 】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T20014.1-2005 | 양호농업규범 제1부분 : 용어 |
| 2 | GB/T20014.2-2008 | 양호농업규범 제2부분 : 농업 기초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3 | GB/T20014.3-2008 | 양호농업규범 제3부분 : 농작물 기초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4 | GB/T20014.4-2008 | 양호농업규범 제4부분 : 경작지 농작물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5 | GB/T20014.5-2008 | 양호농업규범 제5부분 : 과일과 채소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6 | GB/T20014.6-2008 | 양호농업규범 제6부분 : 가축 기초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7 | GB/T20014.7-2008 | 양호농업규범 제7부분 : 소, 양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8 | GB/T20014.8-2008 | 양호농업규범 제8부분 : 젖소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9 | GB/T20014.9-2008 | 양호농업규범 제9부분 : 돼지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0 | GB/T20014.10-2008 | 양호농업규범 제10부분 : 가금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1 | GB/T20014.11-2005 | 양호농업규범 제11부분 : 가금 도로운송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2 | GB/T20014.12-2008 | 양호농업규범 제12부분 : 칠면조 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3 | GB/T20014.13-2008 | 양호농업규범 제13부분 : 수산물 양식 기초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4 | GB/T20014.14-2008 | 양호농업규범 제14부분 : 수산물 연못양식 기초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5 | GB/T20014.15-2008 | 양호농업규범 제15부분 : 수산물 공장화 양식 기초통제 포인트와 부합성규범 |
| 16 | GB8950-1988 | 통조림공장 위생규범 |
| 17 | GB8951-1988 | 백주공장 위생규범 |
| 18 | GB8952-1988 | 맥주공장 위생규범 |
| 19 | GB8953-1988 | 간장공장 위생규범 |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20 | GB8954-1988 | 식초공장 위생규범 |
| 21 | GB8955-1988 | 식용식물유공장 위생규범 |
| 22 | GB8956-2003 | 견과기업 양호생산규범 |
| 23 | GB8957-1988 | 케이크공장 위생규범 |
| 24 | GB12693-2003 | 유제품기업 양호생산규범 |
| 25 | GB12694-1990 | 육류가공공장 위생규범 |
| 26 | GB12695-2003 | 음료기업 양호생산규범 |
| 27 | GB12696-1990 | 포도주공장 위생규범 |
| 28 | GB12697-1990 | 과일주공장 위생규범 |
| 29 | GB12698-1990 | 황주공장 위생규범 |
| 30 | GB13122-1991 | 밀가루공장 위생규범 |
| 31 | GB14881-1994 | 식품기업 통용위생규범 |
| 32 | GB16330-1996 | 천연광천수공장 위생규범 |
| 33 | GB16568-2006 | 젓소양식장 위생규범 |
| 34 | GB17403-1998 | 초콜릿공장 위생규범 |
| 35 | GB19303-2003 | 가공육제품기업 생산위생규범 |
| 36 | GB19304-2003 | 포장음용수기업 생산위생규범 |
| 37 | GB/T19479-2004 | 돼지도살 양호조작규범 |
| 38 | GB/T19537-2004 | 채소가공기업 HACCP체계 심사지침 |
| 39 | GB/T19538-2004 | HACCP체계 및 그 응용지침 |
| 40 | GB/T19838-2005 | 수산물 HACCP체계 및 그 응용지침 |
| 41 | SN/T1346-2004 | 수출육류 도살가공기업등기 위생등기규범 |
| 42 | SB/T10395-2005 | 가축육제품 유통위생작업 기술규범 |
| 43 | WS103-1999 | 학생 영양음식 생산기업 위생규범 |

4) 식품검험방법표준

- 식품검험방법표준은 식품의 품질요소에 대한 측정, 시험, 계량의 통일 규정을 가리키며 감각, 물리, 화학, 미생물학, 생물화학분석을 포함

(1) 식품 감각검험방법표준

- 중국은 1988년부터 감각분석방법 국가표준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표준은 일반적으로 국제표준(ISO)을 참조하여 비교적 높은 권위성과 비교성이 있음

【 식품 감각분석방법표준 】

| 구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T10220-1988 | 감각분석방법 총론 |
| 2 | GB/T10221-1988 | 감각분석 용어 |
| 3 | GB/T12310-1990 | 감각분석방법 1 : 1 비교검험 |
| 4 | GB/T12311-1990 | 감각분석방법 3점검험 |
| 5 | GB/T12312-1990 | 감각분석 미각 민감도 측정 |
| 6 | GB/T12313-1990 | 감각분석방법 맛 단면 검험 |
| 7 | GB/T12314-1990 | 감각분석방법 직접 감각분석을 할 수 없는 샘플 제작준칙 |
| 8 | GB/T12315-2008 | 감각분석 방법학 배열법 |
| 9 | GB/T12316-1990 | 감각분석방법 “A” - “비A” 검험 |
| 10 | GB/T13868-1992 | 감각분석 감각분석실험실 구축의 일반원칙 |
| 11 | GB/T14195-1993 | 감각분석 선발과 교육 감각분석 우선평가원 원칙 |
| 12 | GB/T15549-1995 | 감각분석 방법학 냄새 측정과 식별에서 평가원의 입문과 교육 |
| 13 | GB/T16291-1996 | 감각분석 전문가 선발, 교육과 관리원칙 |
| 14 | GB/T16860-1997 | 감각분석방법 재질 단면 검험 |
| 15 | GB/T16861-1997 | 감각분석 통용 다원분석방법 감정과 감각단면 구축에 사용되는 서술용어 |
| 16 | GB/T17321-1998 | 감각분석방법 2, 3점 검험 |
| 17 | GB/T19547-2004 | 감각분석 방법학 수량예측법 |
| 18 | GB/T21172-2007 | 감각분석 식품색깔 평가의 총칙과 검험방법 |
| 19 | GB/T22366-2008 | 감각분석 방법학 3-AFC방법으로 후각, 미각, 입맛 감지 경계치 측정의 일반원칙 |

(2) 식품 물리화학검험방법표준

- 식품 물리화학검험은 주로 물리, 화학 및 측정기구 등 분석방법으로 식품 중의 각종 영양성분, 첨가제, 광물질 등을 검험하며 식품 중에 각종 원인으로 휴대한 유해유독 화학성분에 대해 검험을 진행
- 현재 중국 식품위생 물리화학검험방법표준은 210개이며 그 중에 GB/T5009시리즈 206개 표준을 포함하며 그 외에 GB19648-2006 “과일과 채소 중의 500가지 농약 및 관련 화학품 잔류량의 측정 가스색층분석법 질량분석법”, GB18932.1~ GB18932.28시리즈 꿀벌 중 화학품 잔류량 측정방법표준 등임

(3) 식품위생 미생물검험방법표준

- 식품위생 미생물검험은 주로 세균총수, 대장균, 병원균 등을 검사
- 현재 중국 식품위생 미생물검험방법표준은 36개이며 그 중에는 GB/T4789.1-2003 “식품위생 미생물학검험 총칙”, GB/T4789.10-2003 “식품위생 미생물학검험 금황색 포도상구균검험”, GB/T4789.18-2003 “식품위생 미생물학검험 우유와 유제품검험” 등을 포함

(4) 식품안전성 독리학 평가절차와 방법

- 식품용기와 포장재료, 복사식품, 식품 및 식품공구와 설비용 세척소독제, 농약 잔류물과 가축약 잔류물의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확실한 작업방법을 제공
- 식품 안전학 독리학 평가절차와 방법표준은 주로 GB15193.1-2003 “식품 안전성 독리학 평가절차”, GB15193.2-2003 “식품 독리학 실험실 작업규범”, GB15193.3-2003 “급성 독성시험” 등임

5) 식품 포장 재료와 용기 위생표준

- 현재 중국은 플라스틱, 고무, 도료, 금속, 종이 등 69가지 식품용기와 포장 재료의 법규를 제정
- 식품포장의 국가 위생표준은 GB18706-2002 “식용식물유 판매포장”, GB/T9106-2001 “식품공업용 스테인리스 박막 용기” GB9683-1988 “복합식품포장봉지 위생표준”, GB/T5009.60-2003 “식품포장용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성형물 위생표준의 분석방법”, GB4803-1994 “식품용기, 포장재료용 폴리에틸렌수지 위생표준”,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표준” 등 45가지이며 통제지표는 특이성 지표와 비특이성 지표로 분류
- 중국 식품포장표준은 표준수량이 너무 적고, 검사항목이 적으며, 표준체계가 규범화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

6) 식품 유통표준

(1) 운송공구표준

- 운송공구표준은 주로 운송 차량, 선박, 운반 차량, 적재공구 등 관련 용어, 유형 코드, 규격과 성능표준 및 관련된 작업방법표준 등을 포함
- GB/T14521.1~14521.9-1993 “운송기계 용어”는 운송기계의 유형, 주요 치수, 장치와 부품, 컨베이어, 승강기에 대해 제정한 시리즈 표준

(2) 장소 기술표준

- 장소 기술표준은 주로 플랫폼, 퇴적장 등 기술규범과 기술표준을 포함하며, 관련 표준은 GB/T11601-2000 “컨테이너 출입항구 검사인수요구”, GB/T13145-1991 “기계식 냉장 컨테이너 퇴적장 기술관리요구”가 있음

(3) 운송방식과 작업규범표준

- GB/T6512-1998 “운송방식 코드”는 UN/ECE/WP.4의 제19호 추천표준인 “운송방식 코드”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기술내용과 구조 등에서 제19호 추천표준을 채택했으며, GB/T6512표준은 운송방식의 기본분류 코드구조와 운송공구 유형을 표시한 운송방식 코드를 규정
- 운송작업규범에서 중국은 GB/T20014.11-2005 “양호농업규범 제11부분 : 가축 도로운송 통제품과 복합성 규범”을 발표

(4) 식품 저장표준

- 저장개념은 상품의 분류, 계량, 입고, 보관, 출고, 재고 통제 및 배송 등을 포함
- 중국 식품 저장과 연관되는 표준은 주로 GB50072-2001 “냉장 창고 설계규범”, GB/T15034-1994 “망고 저장원칙”, GB/T18518-2001 “오이 저장과 냉장운송” 등임

(5) 식품포장기술표준

- 포장기술표준은 용량 표준화, 제품의 상태조건과 표준화, 포장재료 표준화, 포장속도 규범화, 포장절차 설명, 규정한 품질통제 요구 등을 포함

(6) 하역운반표준

- 하역표준은 GB/T8487-1987 “항구하역용어” GB/T13561.3-1992 “항구 연속하역설비 안전규범 벨트식 컨베이어”, GB/T13561.4-1992 “항구 연속하역설비 안전규범 스크레이퍼식 컨베이어” 등임
- 운송표준은 GB/T12738-2006 “삭도 용어”, GB/T17119-1997 “연속운송설비”, GB/T19400-2003 “공업용 로버터” 등임

(7) 식품 판매표준

- 상무부 등 8개 부서는 GB/T19220-2003 “농부산물 녹색 도매시장”과 GB/T19221-2003 “농부산물 녹색 소매시장” 등 2개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장소환경, 시설설비, 상품관리, 시장관리 등 차원에서 판매시장에 대해 규정

7) 식품 라벨표준

(1)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

- GB7718-2004표준은 포장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포장식품라벨에 적용

(2) GB13432-2004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

- GB13432-2004표준은 포장특수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 허용표시내용, 추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일부 특정인의 생리요구 또는 일부 질환환자의 영양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수 배합으로 가공한 포장식품라벨에 적용

(3) GB10344-2005 “포장음료주라벨통칙”

- GB10344-2005표준은 알코올(에탄올 함량) 농도가 0.5% 이상 모든 포장음료주의 라벨에 적용하며 주로 표준의 적용범위,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

(4) 관련 식품표준이 라벨에 대한 특별규정

- 상기 3개 라벨표준 외에 많은 제품표준도 라벨에 대해 특별표시내용을 규정

* 예) GB2746-1999 “요구르트(yoghurt)” 표준과 GB5408.1-1999 “저온살균우유 (pasteurized milk)” 표준은 제품종류와 단백질, 지방, 비지방 우유고체 함량 등을 규정했으며, GB8537-1995 “음용천연광천수” 표준은 제품라벨에 반드시 광천수 원지의 명칭 및 일부 이온의 함량범위 등을 표시해야 함

【 특수표시내용을 규정한 제품표준 】

| 구 분 | 표준번호 | 표준명칭 |
|-----|----------------|-----------------------------|
| 1 | GB2746-1999 | 요구르트(yoghurt) |
| 2 | GB5408.1-1999 |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 |
| 3 | GB5408.2-1999 | 살균우유(sterilized milk) |
| 4 | GB5410-2008 | 분유 |
| 5 | GB5415-2008 | 크림(cream) |
| 6 | GB5417-2008 | 연유 |
| 7 | GB8537-1995 | 음용천연광천수 |
| 8 | GB10765-1997 | 유아 처방분유 I |
| 9 | GB10755-1997 | 유아 처방분유 II, III |
| 10 | GB10767-1997 | 영아/유아 처방분 및 영아/유아 보충곡분 통용조건 |
| 11 | GB10769-1997 | 영아/유아 이유기 보조식품 |
| 12 | GB10770-1997 | 영아/유아 이유기 보충식품 |
| 13 | GB10792-2008 | 탄산음료(사이다) |
| 14 | GB15266-2000 | 운동음료 |
| 15 | GB16740-1997 |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 |
| 16 | GB17946-2000 | 소흥주(소흥향주) |
| 17 | GB18186-2000 | 양조간장 |
| 18 | GB18187-2000 | 양조식초 |
| 19 | GB/T19343-2003 |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
| 20 | QB/T2300-2006 | 식물단백질음료 야자주스 및 복원성 야자주스 |
| 21 | QB/T2301-1997 | 식물단백질음료 호두주스 |
| 22 | QB/T2438-2006 | 식물단백질음료 아몬드(almond)주스 |
| 23 | QB/T2439-1999 | 식물단백질음료 땅콩주스 |
| 24 | SB/T10013-2008 | 아이스크림(ice cream) |
| 25 | SB/T10014-2008 | 아이스마이어(ice mire) |
| 26 | SB/T10015-2008 | 아이스케이크(ice cake) |
| 27 | SB/T10016-2008 | 하드아이스크림(hard ice cream) |
| 28 | SB/T10018-2008 | 캔디(candy) 경질캔디 |
| 29 | SB/T10329-2000 | 케이크장식(decorating cake) |
| 30 | SB10336-2000 | 조제간장 |
| 31 | SB10337-2000 | 조제식초 |
| 32 | SB10338-2000 | 산분해 식물단백질 조미료(액체) |

다. 유전자 변형식품 관리제도

1) 관리현황

(1) 관련 법규 제정

- 1996년 농업부는 “농업생물유전자공정안전관리실시방법”을 제정했으며, 2001년, 국무원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를 발표하여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과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
-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5개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유전자 변형생물 라벨목록을 발표하고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수입 등의 허가과 라벨관리제도를 발표
- 2007년 7월, 위생부는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유전자변형식품위생관리방법”(2002년 발표)과 “신자원위생관리방법”(1990년 발표)을 폐지하고 “유전자 변형식품과 식품첨가제의 관리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 한다.”라고 규정

【 관련 법규 】

| 구분 | 세 부 사 항 |
|----|--|
| 1 | “농업생물유전자공정안전관리방법실시방법” (1996년, 농업부) |
| 2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2002년, 국무원 제304호령) |
| 3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라벨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허가관리방법” (2002년, 농업부) |
| 4 |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비준방법” (2006년, 농업부) |
| 5 | “신자원식품관리방법” (2007년, 위생부) |

(2) 기술체계 구축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 부급연합회의 회원업체(기관)의 추천을 받아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 전국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를 설립했으며 35개 검측기관은 국가계량인증과 농업부 심사인가를 취득

- 유전자 변형생물의 특징, 환경안전과 식용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현재 62가지 기술표준을 발표

(3) 과학적 안전평가 진행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는 관련법규와 기술표준의 요구에 따라 국제조직의 평가지침을 참조하여 평가업무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2009년 말까지 유전자 변형 목화, 토마토, 고추, 파파야, 피튜니아, 벼, 옥수수 등 식물의 안전증서를 발급

(4) 행정 감독관리 강화

- 각급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논밭 시험, 품목 심사, 종자 생산경영과 제품 라벨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법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2)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비준

(1) 외국 R&D업체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처음 신청할 경우

■ 심사내용

- 유전자 변형생물의 환경안전성
- 유전자 변형생물의 식용안전성
- 유전자 변형생물의 안전등급
- 유전자 변형생물이 국외에서의 비준현황
- 신청인의 관련 자격

■ 법률근거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2004년 농업부령 제38호)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2002년 농업부령 제9호)

■ 제출서류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신청서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등급 및 안전등급 확정근거
- 수출국(지역)의 시장공급 증명
- 수출국(지역)의 안전성 자료
- 농업부에서 위탁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기술검측기구에서 발급한 검측보고서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농업부 행정비준 종합사무실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평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며 초심을 진행
- 항목심사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
- 재료입국비준서 발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심사의견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재료 입국비준서 처리절 차에 따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재료입국비준서”를 발급
- 전문검사 진행 : 농업부에서 위탁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기술검측기관은 환경과 식 용 안전에 대한 검측을 진행하며 검측보고서를 제출
- 전문가평가 진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국가농업유전자변 형생물안전위원회를 조직하여 신청서류와 검측보고서에 대해 평가심사를 진행
- 비준증서 발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평가심사결과에 따 라 비준방안을 제출하며 부장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 비준증서 발급

(2) 수입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직접 소비품으로 사용할 경우

■ 심사내용

- 유전자 변형생물 특성
- 유전자 변형생물 용도와 운송과정에서의 안전성
- 유전자 변형생물 동향
- 유전자 변형생물이 국외에서의 비준현황

■ 법률근거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2004년 농업부령 제38호)
- “수입 농업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해 정상적 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2004년, 농업부령 제349호)

■ 제출서류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등기표(직접 소비품으로 사용)
- 농업부에서 발급한 외국 R&D업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수입)”(복사본)
- 수입과정에서의 안전예방조치 설명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농업부 행정비준 종합사무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등기표(직접 소비품으로 사용)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초심을 진행
- 전문가평가 진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청서류에 대해 평가심사를 진행
- 비준증서 발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평가심사결과에 따라 비준방안을 제출하며 부장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 비준증서를 발급

(3) 외국 무역업체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수입)를 신청할 경우

■ 심사내용

- 유전자 변형생물 특성
- 유전자 변형생물 용도와 운송과정에서의 안전성
- 유전자 변형생물 동향
- 유전자 변형생물이 국외에서의 비준현황

■ 법률근거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2004년 농업부령 제38호)
- “수입 농업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해 정상적 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2004년, 농업부령 제349호)

■ 제출서류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등기표(가공원료로 사용)
- 농업부에서 발급한 외국 R&D업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수입)”(복사본)
- 수입과정에서의 안전예방조치 설명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농업부 행정비준 종합사무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등기표(가공원료로 사용)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초심을 진행
- 전문가평가 진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청서류에 대해 평가심사 진행
- 비준증서 발급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평가심사결과에 따라 비준방안을 제출하며 부장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 비준증서를 발급

5 수출입 규제제도

가. 수출입 금지·제한화물

1) 수출입 금지화물

| 구분 | 세부내용 |
|---------|---|
| 수입 금지화물 | ① “수입금지화물목록”에 포함된 상품(6회) - “수입금지화물목록” 제1회, 제6회 : 국제조약협정에 의한 수입 금지화물 - “수입금지화물목록” 제2회 : 낮은 기계전기제품류 - “수입금지화물목록” 제3회, 제4회, 제5회 : 환경오염이 있는 고체폐기물류 |
| | ②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서 수입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상품 - 식물 전염병 유행국가(지역)의 관련 동식물 및 그 제품 및 기타 검역물 - 동식물 병인과 기타 유해생물, 동물시체 - “하나 중국” 원칙내용을 위반한 화물과 화물포장 - 불화염탄소를 냉각제, 발포제로 하는 가전제품과 불화염탄소물질을 냉각매질로 하는 가전제품용 콤프레셔 |
| 수출 금지화물 | ① “수출금지화물목록”에 포함된 상품 - “수출금지화물목록”(제1회, 제3회) : 국제조약협정에 의한 수출 금지화물 - “수출금지화물목록”(제2회) : 삼림자원을 보호 - “수출금지화물목록”(제4회) : 석영모래, 규석모래, 기타 천연모래 |
| | ②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서 수출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상품 - 명명하지 않았거나 새로 발견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야생식물 - 원료 열장 - 상업성 수출의 야생주목과 그 일부 제품 - 노동개조제품 - 불화염탄소를 냉각제, 발포제로 하는 가전제품과 불화염탄소물질을 냉각매질로 하는 가전제품용 콤프레셔 |

2) 수출입 제한화물

-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은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하며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은 최소 정식 시행일의 21일 전에 발표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시행일 전에 발표

【 수출입 제한화물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수입 제한화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 - 국내 특정산업의 건설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 - 어떠한 형식의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 - 국가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평형 보장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 -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의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 |
| 수출 제한화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화물 - 국내 공급부족 또는 거의 소모한 국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화물 - 수출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규모가 제한되었을 경우 -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의해 수출제한이 필요할 경우 |

나. 수출입 규제제도

1) 수입 규제제도

(1) 수입제한 화물관리

- 수입제한화물 관리는 관리방식에 따라 허가증 관리와 관세할당 관리로 분류
- 수입화물 허가증 관리는 주로 수입허가증, 멸종위기물종 수입허가관리, 수입 폐기물관리, 수입 약품 관리, 수입 음향제품 관리, 수입 황금 및 황금제품 관리 등임
- 수입화물 관세할당 관리는 일정 기간 일부 상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할당 세율을 확정하며 그 상품의 수입수량을 규정하여 한도액 내에서 국가 비준을 받은 후 관세할당 세율로 관세를 징수하여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면 할당 외 세율로 관세를 징수하여 수입

(2) 수입관세 할당제도

① 관련법규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관리 임시시행방법”은 “대외무역법”, “세관법”,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수출입관세조례”에 의해 제정

② 관련품목

- 수입관세 할당관리를 실시하는 농산물 품목은 밀(가루와 낱알을 포함), 옥수수(가루와 낱알을 포함), 쌀(가루와 낱알을 포함), 두유, 채유, 종려유, 설탕, 목화, 양모 및 섬수모임

③ 할당관리

- 할당량 내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관세할당 세율을 적용하고, 할당량 외에 수입하는 농산물은 “수출입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
- 관세할당 관리를 실시하는 농산물의 수입 세목, 세칙번호와 세율은 별도로 발표
- 밀, 옥수수, 쌀, 두유, 채유, 종려유, 설탕, 목화의 수입관세 할당은 국영무역 할당과 비국영무역 할당으로 분류하며 국영무역 할당은 반드시 국영무역업체를 통해 수입해야 하며 비국영무역 할당은 무역권이 있는 업체를 통해 수입해야 하며 무역권이 있는 업체도 스스로 수입할 수도 있음
- 양모, 섬수모에 대해 수입 지정회사 경영제도를 실시하며 수입경영은 “화물수입지정 경영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 두유, 채유, 종려유,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관세 할당은 상무부에서 분배하고 밀, 옥수수, 쌀, 목화의 수입관세 할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상무부와 회동하여 분배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은 일반무역, 가공무역, 화물교환무역, 변경지역 소액무역, 원조, 증정 등 무역방식의 수입에 적용하며 보세창고,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수입제품에 대해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을 면제

④ 할당신청

- 수입관세 할당의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신청기간 1개월 전에 “國際商報”, “中國經濟導報” 및 상무부 웹사이트(www.mofcom.gov.c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www.sdpc.gov.cn)에 다음 해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 및 관세할당 신청조건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확정된 관세할당 농산물의 세칙번호와 세율을 발표하고 있음

- 상무부 수권기구는 관할지역의 두유, 채유, 종려유,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관세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발전개혁위원회 수권기구는 관할지역의 밀, 옥수수, 쌀, 목화의 수입관세 할당신청을 접수
- 상무부 수권기구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두유, 채유, 종려유, 설탕, 양모, 섬수모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11월 30일 전에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
- 발전개혁위원회 수권기구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밀, 옥수수, 쌀, 목화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11월 30일 전에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보고

⑤ 할당분배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은 신청업체의 신청수량과 과거 수입실적, 생산능력, 기타 관련된 상업표준 또는 선후순서에 따라 분배하며 분배하는 최소수량은 각종 농산물이 상업적으로 가능한 적재량으로 확정
- 매년 1월 1일 전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는 각자 수권기구를 통해 수입업체에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을 발급하며 “상무부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 전용장”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 전용장”을 날인
- 국영무역 할당은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에 표기

⑥ 신청기한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양력 연도 내 유효하며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유효
- 선후순서방식으로 분배하는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의 유효기간은 발표한 실시세칙에 따라 집행
- 당해 12월 31일 전에 출발항에서 적출하여 다음 해에 도착하는 수입관세 할당 농산물에 대해 업체는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증서 발급기구에 제출하여 연기해야 하며 증서 발급기구는 사실확인 후 연기할 수 있지만 다음 해 2월 말을 초과하지 못함

⑦ 할당집행

- 가공무역 수입방식의 관세할당 관리를 실시하는 농산물에 대해 세관은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에 따라 가공무역계약 등록수속을 처리하며 “무역방

- 식”란에 “가공무역”을 표기한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리
- 수입업체가 여러 차례 수입할 경우,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으로 여러 차례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음

【 2010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

(단위 : 만 톤, %)

| 구분 | 품목 | 할당량 | 국영무역 | 신청조건 |
|----|-----|-------|------|---|
| 1 | 밀 | 963.6 | 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업체 -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 2009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일가공량 400톤 이상의 생산업체 - 2009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 2 | 옥수수 | 700.0 | 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업체 -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 2009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옥수수를 원료로 하며 연간 수요량이 5만 톤 이상인 배합원료 생산업체 - 옥수수를 원료로 하며 연간 수요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타 생산업체 - 2009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 3 | 쌀 | 532.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업체 -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 2009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식량 도소매자격을 가진 연간 매출액이 1억 위안 이상 식량업체 - 식량 연간 수출입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 2009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 4 | 목화 | 89.4 | 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업체 - 2009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방적설비 5만 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
| 5 | 설탕 | 194.5 | 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업체 -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 2009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일가공량 ≥ 600톤, 등록자본금 ≥ 1,000만 위안, 연간 매출액 ≥ 2억위안인 제당업체 |

| 구분 | 품목 | 할당량 | 국영무역 | 신청조건 |
|----|-----|------|------|---|
| 6 | 양모 | 28.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양모, 섬수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신설 가동한 양모, 섬수모 가공능력이 5,000톤 이상인 업체 - 2010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를 통과한 업체 |
| 7 | 섬수모 | 8.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험, 외환,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행방법”, “2009년 양모, 섬수모 수입 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09년 양모, 섬수모 수입국가별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

※ 자료 : 상무부

【 2010년 수입관세 할당상품의 관세율 】

| 구 분 | 상품유형 | 세칙번호 | 할당외 세율(%) | | 할당내 세율(%) |
|-----|------|----------|-----------|------|-----------|
| | | | 최혜국세율 | 일반세율 | |
| 1 | 밀 | 10011000 | 65 | 180 | 1 |
| | | 10019010 | 65 | 180 | 1 |
| | | 10019090 | 65 | 180 | 1 |
| | | 11010000 | 65 | 130 | 6 |
| | | 11031100 | 65 | 130 | 9 |
| | | 11032010 | 65 | 180 | 10 |
| 2 | 옥수수 | 11051000 | 20 | 180 | 1 |
| | | 10059000 | 65 | 180 | 1 |
| | | 11022000 | 40 | 130 | 9 |
| | | 11031300 | 65 | 130 | 9 |
| | | 11042300 | 65 | 180 | 10 |
| 3 | 벼와 쌀 | 11061011 | 65 | 180 | 1 |
| | | 10061019 | 65 | 180 | 1 |
| | | 10061091 | 65 | 180 | 1 |
| | | 10061099 | 65 | 180 | 1 |
| | | 10062010 | 65 | 180 | 1 |
| | | 10062090 | 65 | 180 | 1 |
| | | 10063010 | 65 | 180 | 1 |
| | | 10063090 | 65 | 180 | 1 |
| | | 10064010 | 65 | 180 | 1 |
| | | 10064090 | 65 | 180 | 1 |

| 구 분 | 상품유형 | 세칙번호 | 할당외 세율(%) | | 할당내 세율(%) |
|-----|------|----------|-----------|------|-----------|
| | | | 최혜국세율 | 일반세율 | |
| 4 | 설탕 | 11029011 | 40 | 130 | 9 |
| | | 11029019 | 40 | 130 | 9 |
| | | 11031921 | 10 | 70 | 9 |
| | | 11031929 | 10 | 70 | 9 |
| | | 17011100 | 50 | 125 | 15 |
| | | 17011200 | 50 | 125 | 15 |
| | | 17019100 | 50 | 125 | 15 |
| | | 17019910 | 50 | 125 | 15 |
| | | 17019920 | 50 | 125 | 15 |
| | | 17019990 | 50 | 125 | 15 |
| 5 | 양모 | 51011100 | 38 | 50 | 1 |
| | | 51011900 | 38 | 50 | 1 |
| | | 51012100 | 38 | 50 | 1 |
| | | 51012900 | 38 | 50 | 1 |
| | | 51013000 | 38 | 50 | 1 |
| | | 51031010 | 38 | 50 | 1 |
| 6 | 섬수모 | 51051000 | 38 | 50 | 3 |
| | | 51052100 | 38 | 50 | 3 |
| | | 51052900 | 38 | 50 | 3 |
| 7 | 목화 | 52010000 | 40[비고1] | 125 | 1 |
| | | 52030000 | 40 | 125 | 1 |
| 8 | 화학비료 | 31021000 | 50 | 150 | 4 |
| | | 31052000 | 50 | 150 | 4 |
| | | 31053000 | 50 | 150 | 4 |

※ 비고 1 : 할당외 목화의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슬라이딩세형식으로 잠정관세를 적용하며, 구체적 방식은 아래와 같음

1) 수입목화 과세가격 ≥ 11.397 위안/kg일 경우, 0.570 위안/kg으로 종량세를 계산하여 징수

2) 수입목화 과세가격 < 11.397 위안/kg일 경우, 잠정 관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

$$R_i = 8.686 / P_i + 2.526\% \times P_i - 1$$

* 상기 계산결과에 대해 사사오입하며 R(잠정관세세율), 상기 계산수치)40%일 경우, R(관세 과세가격)를 40%로 하고, P이므로서 단위는 위안/kg임

(3) 자동수입 허가제도

- 국가에서 금지, 제한하는 수입화물 외의 기타 화물은 모두 자유수입 범위에 속하며 자유수입 화물은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진행하며 수입업체는 주관부서에 자동수입 허가신청을 제출하고 상무 주관부서 또는 관련 경제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자동수입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수속을 밟음

-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에 따라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2010년 자동수입 허가관리상품을 조절하여 2010년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을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0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 구 분 | 세척번호 | 상품명 |
|------------|------------|------------------------|
| 육계 | 0207110000 | 신선 또는 냉장 절단하지 않은 육계 |
| | 0207120000 | 냉동 절단하지 아니한 육계 |
| | 0207131100 | 신선 또는 냉장 뼈가 있는 닭고기 |
| | 020713190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닭고기 |
| | 0207132100 | 신선 또는 냉장 닭 날개 |
| | 020713290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내장 |
| | 0207141100 | 냉동 뼈가 있는 닭고기 |
| | 0207141900 | 냉동 뼈가 없는 닭고기 |
| | 0207142100 | 냉동 닭 날개 |
| | 0207142200 | 냉동 닭발 |
| | 0207142900 | 냉동 기타 식용 내장 |
| | 0504002100 | 냉장, 냉동 닭 위 |
| | 식물유 | 1507100000 |
| 1507900000 | | 정제 দুয় 및 그 분리물 |
| 1511100000 | | 초급 종려유 |
| 1511901000 | | 종려유 |
| 1511902001 | | 고체 종려 스테아린(50도≤용점≤56도) |
| 1511909000 | | 기타 정제 종려유 |
| 1514110000 | | 초급 낮은 시나핀산 채유 |
| 1514190000 | | 기타 낮은 시나핀산 채유 |
| 1514911000 | | 초급 비시나핀산 채유 |
| 1514919000 | | 초급 겨자유 |
| 1514990000 | | 정제 비시나핀산 채유, 겨자유 |

| 구 분 | 세칙번호 | 상품명 |
|----------|------------|--|
| 산선 우유 | 0401100000 | 지방분≤1%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설탕과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
| | 0401200000 | 1%(지방분≤6%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설탕과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
| | 0401300000 | 지방분)6%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설탕과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
| | 0402100000 | 지방분≤1.5%인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
| 분유 | 0402210000 | 지방분)1.5%인 설탕 미첨가한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
| | 0402290000 | 지방분)1.5%인 설탕 첨가한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 |
| | 1901100010 | 유아용 소매포장 식품(코코아)40%인 분말, 전분 또는 맥아엑스 또는 코코아(5% 유제품) |
| 유장 | 0404100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 여부를 불문) |
| 대두 | 1201001000 | 종자용 대두 |
| | 1201009100 | 비종자용 황대두(파쇄 여부를 불문) |
| | 1201009200 | 비종자용 흑대두(파쇄 여부를 불문) |
| | 1201009300 | 비종자용 청대두(파쇄 여부를 불문) |
| | 1201009900 | 비종자용 기타 대두(파쇄 여부를 불문) |
| 유채씨 | 1205101000 | 종자용 낮은 시나핀산 유채씨 |
| | 1205109000 | 기타 낮은 시나핀산 유채씨(파쇄 여부를 불문) |
| | 1205901000 | 기타 종자용 유채씨 |
| | 1205909000 | 기타 유채씨(파쇄 여부를 불문) |
| 대두박 | 2304001000 | 두유 추출에서 얻는 오일-케이크(두병) |
| | 2304009000 | 두유 추출에서 얻는 기타 고체 찌꺼기(분쇄 또는펠리트상 여부를 불문) |

| 구 분 | 세칙번호 | 상품명 |
|-------------------|------------|----------------------------------|
| 돼지 고기 및 부산물 | 0203111010 | 신선 또는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멧돼지고기 |
| | 020311109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돼지고기 |
| | 020311901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멧돼지고기 |
| | 020311909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돼지고기 |
| | 0203120010 | 신선 또는 냉장 뼈가 있는 멧돼지 앞다리, 뒷다리, 살덩이 |
| | 0203120090 | 신선 또는 냉장 뼈가 있는 돼지 앞다리, 뒷다리, 살덩이 |
| | 020319001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멧돼지고기 |
| | 020319009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 돼지고기 |
| | 0203211010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멧돼지고기 |
| | 0203211090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돼지고기 |
| | 0203219010 | 기타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멧돼지고기 |
| | 0203219090 | 기타 도체와 이분도체 새끼 돼지고기 |
| | 0203220010 | 냉동 뼈가 있는 멧돼지 앞다리, 뒷다리와 살덩이 |
| | 0203220090 | 냉동 뼈가 있는 돼지 앞다리, 뒷다리와 살덩이 |
| | 0203290010 | 냉동 멧돼지 기타 고기 |
| | 0203290090 | 기타 냉장 돼지고기 |
| | 0206300000 | 신선 또는 냉장 돼지 내장 |
| | 0206410000 | 냉동 돼지 간 |
| | 0206490000 | 기타 냉동 돼지 내장 |

※ 자료 : 상무부

2) 수출 규제제도

(1) 수출제한 화물관리

- 수출제한 화물의 관리방식은 수출할당제한과 수출비할당제한(허가증 관리)가 있으며 수출할당 제한은 수출할당 허가증관리와 수출할당 입찰관리가 있음
 - 수출할당 허가증관리는 국가에서 일부 상품의 수출에 대해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1년)에 수량총액을 확정하고 국가의 비준을 받아 할당을 취득할 경우에 수출을 허용하며 할당 주관부서는 신청을 거쳐 할당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신청인에게 각종 할당증명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취득한 후 국무원 상무부서와 그 수권기구에 수출허가증을 신청
 - 수출할당 입찰관리는 국가에서 일부 상품의 수출에 대해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1년) 수출물량을 확정하고 입찰분배의 원칙으로 입찰을 통해 할당을 취득할 경우 수출을 허용하며 할당 주관부서는 낙찰자에게 각종 할당증명을 발급하고 낙찰자는 이를 취득한 후 국무원 상무부서와 그 수권기구에 수출허가증을 신청

(2) 수출 할당제도

①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와 “수출상품할당관리방법”에 의해 수량제한이 있는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할당 관리를 실시

② 주관부서

- 상무부는 수출상품 할당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배정도시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청, 국)는 상무부의 권한을 받아 관할지역의 수출 상품 할당 관리를 책임

③ 할당품목

- 할당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 목록은 상무부에서 제정하고 조절하며 발표
- 할당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 목록은 반드시 적어도 시행일로부터 20일 전에

발표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시행일 전에 발표

④ 할당신청

- 지방 경영기업은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수출할당 신청을 제출하며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이를 심사하여 상무부에 보고하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은 직접 상무부에 수출상품 할당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기업은 반드시 서면방식으로 할당신청을 제출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
- 할당 신청인은 매년 11월 1일~11월 15일 수출할당 관리부서에 다음 년도 수출할당을 신청

⑤ 할당분배

- 수출할당 관리부서는 반드시 매년 12월 15일 전 다음 해 수출할당을 할당 신청인에게 분배
- 수출할당은 직접 분배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입찰 등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음
- 수출할당 관리부서는 반드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당해 12월 15일 전에 할당 발급 여부를 결정
- 국제시장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할 경우, 상무부는 차년도 수출할당을 두차례 나누어 분배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15일 전 차년도 70% 이상의 할당을 분배하며 나머지는 당해 6월 30일 전 분배
- 상무부와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수출할당을 분배할 때, 반드시 신청기업 또는 지역의 최근 3년 내 상품 수출실적, 할당 사용률, 경영능력, 생산규모, 자원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 2009-2011년 수출할당 농산물 】

| 상품품목 | 할당량 | | | 단위 |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제재목 | 11 | 26 | 26 | 만m ³ |
| 돼지(大) | 180 | 180 | 180 | 만마리 |
| - 홍콩 | 165 | 165 | 165 | 만마리 |
| 마카오 | 15 | 15 | 15 | 만마리 |
| 돼지(中) | 8.24 | 8.24 | 8.24 | 만마리 |
| - 홍콩 | 8.0 | 8.0 | 8.0 | 만마리 |
| 마카오 | 0.24 | 0.24 | 0.24 | 만마리 |
| 소 | 5.72 | 5.72 | 5.72 | 만마리 |
| - 홍콩 | 5 | 5 | 5 | 만마리 |
| 마카오 | 0.72 | 0.72 | 0.72 | 만마리 |
| 닭 | 1,340 | 1,340 | 1,340 | 만마리 |
| - 홍콩 | 1,000 | 1,000 | 1,000 | 만마리 |
| 마카오 | 340 | 340 | 340 | 만마리 |
| 난초 및 그 제품 | 3,200 | 3,200 | 3,200 | 만kg |

※ 자료 : 상무부

(3) 수출 허가제도

①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의해 “2010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제정

② 관리품목

- 2010년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49가지 화물은 각각 수출할당허가증, 수출할당입찰과 수출허가증 관리를 진행

【 2010년 수출허가증 관리 농산물 】

| 관리방식 | 해당품목 |
|----------|--|
| 수출할당허가증 |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제재목, 소(홍콩, 마카오), 돼지(홍콩, 마카오), 닭(홍콩, 마카오) |
| 수출할당 입찰 | 감초 및 감초제품, 난초 및 난초제품 |
| 수출허가증 관리 | 소(홍콩, 마카오 외), 돼지(홍콩, 마카오 외), 닭(홍콩, 마카오 외), 신선 소고기, 냉동 소고기, 신선한 돼지고기, 냉동 돼지고기, 신선 닭고기, 냉동 닭고기 |

※ 자료 : 상무부

③ 허가관리

- 홍콩, 마카오에 수출하는 소, 돼지, 닭에 대해 국가별 할당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에 수출하는 천연모래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며 이외 기타지역은 수출을 금지하며 표준모래에 대해 세계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
- 옥수수, 쌀, 석탄, 원유, 가공유, 목화, 안티몬과 안티몬제품, 텅스텐과 텅스텐 제품, 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리 실시
- 수출할당 입찰을 실시하는 화물은 어떤 무역방식을 막론하고 수권기구는 모두 상무부에서 하달한 낙찰업체 리스트와 그 낙찰수량과 입찰사무소에서 발급한 “할당신청 입찰화물 수출허가증 증명서”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

가. 원산지규정사례

- 2009년 5월 12일 남경시 현무공상관리분국이 남경시 ○○식품경영부에 대한 현장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 정찰, 점포 포스트, 홍보자료에 판매하는 제비집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로 표기되었지만 실제 원산지는 싱가포르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산 제비집이 타지역 대비 지명도가 높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임
 - 당 업체의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품 원산지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허위 홍보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반부정당경쟁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상관리부서는 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음

나. 허가증규정사례

- 2005년 1월 12일, ○○회사는 일반무역방식으로 A세관에 화물가치가 50만위안의 수입농약을 신고했고 A세관의 심사결과, ○○회사가 수입한 농약은 수입제한 화물이지만 통관 신고시 관련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아 “세관법” 관련규정을 위반
 - 2005년 1월 25일, A세관은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세관의 감독관리규정 위반으로 5만 위안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통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세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이의 제출 없이 규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했으며 A세관에 화물 통관수속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수입허가증이 없어 비준하지 않았음
 - ☞ 본 사례에서 “허가증 없는 수출입” 행위는 수출입 관리 관련법률, 법규를 위반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함부로 수입하는 행위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현재 “세관법”과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는 모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리원칙과 처벌표준을 명확히 규정

다. 검험검역규정사례

- 2001년 6월 25일, A 품질기술감독국은 ○○냉장창고 검사시 약 4톤의 소 위장을 발견, 즉시 검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창고에 보관한 육류제품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냉동 소 위장은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입되었으며 화주와 냉장창고는 모두 수입 동물 및 동물제품을 경영, 가공, 판매, 저장할 자격이 없는 경우로 화주는 규정에 따라 검역 비준수속을 밟지 않아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10조를 위반했음
 - 화주는 상기 냉동 소 위장의 수출국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를 제공할 수 없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화주는 제때에 소재지 검역 검역부서에 검험검역을 신청하지 않아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13조를 위반
 - 낙양검험검역국은 “동식물검역법”에 따라 상기 수입 소 위장을 등기하여 보관했으며 냉장창고와 주변환경에 대해 즉시 검역소독을 진행했으며 “출입국검험검역 행정 처벌방법”에 따라 입안조사를 진행했으며 100% 소각처리를 진행

라. 기술무역장벽사례

- 2004년 4월 22일, 상무부는 강소성 김협회의 신청에 따라 일본의 김 수입에 관한 관리조치에 대해 무역장벽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본 관련부서와 3차례 협상을 진행, 일본은 적극적 해결방안을 채택하기로 약속
 - 2004년 10월 21일, 상무부는 “대외무역장벽조사임시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5호 공고를 발표하여 무역장벽조사를 중지했으며 이후 중·일 쌍방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피조사조치”를 조절하고 2005년 2월 21일 일본경제산업성은 일본의 2005년도 김 수입할당 방안을 발표하여 김과 조미료 김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을 취소
 - 조사결과에 일본이 중국산 마른 김과 조미료 김에 대한 차별성 조치를 취소한 것을 감안 “대외무역장벽조사임시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2004년 2월 22일부터 가동한 일본 김 수입 관리조치에 대한 무역장벽조사를 종결한다고 결정

-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WTO/TBT 협의서에 의해 진행된 무역장벽 조사사례이며 일본의 김 무역할당 분배조치는 제품 원산지를 한국으로 제한하고 중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제품을 제외하여 중국을 포함한 기타 김 생산수출국에 대한 차별을 형성하여 TBT협약서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 위반 및 WTO의 공평무역원칙을 위반

마. 반덤핑사례

1)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해 반덤핑 조사

- 2006년 2월 6일, 상무부는 2005년 12월 29일 흑룡강, 내몽고, 청해, 감숙 등 지역 7개 업체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따라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2006년 제4호 공고로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이 최초로 농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사례임

- 상무부는 “반덤핑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자격, 조사신청제품의 관련 상황, 중국 동류 제품의 관현 상황, 조사신청제품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 신청국가(지역)의 관련 상황 등을 심사했으며 동시에 신청서에서 제공한 덤핑, 손해 및 덤핑과 손해의 인과관계 등의 증거를 심사

-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신청인이 “반덤핑조례”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국내산업이 반덤핑 조사신청을 제출하는 데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동시에 신청서에는 “반덤핑조례”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한 반덤핑 조사입안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2월 6일부터 유럽산 감자전분(Potato Starch)에 대해 반덤핑 입안조사를 진행한다고 결정

- 반덤핑 조사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임

- 2006년 8월 18일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반덤핑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유럽산 감자전분은 덤핑현상이 존재한다고 제60호 공고로 발표했으며 2007년 2월 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고 결정

2) 미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 2009년 8월 14일 중국목축업협회는 닭고기산업(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을 대표하여 상무부에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제출

■ 2009년 9월 27일 상무부는 제74호 공고를 발표하여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자격, 조사신청제품의 관련 상황, 중국 동류 제품의 관련 상황, 조사신청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신청국가(지역)의 관련 상황 등을 심사했으며 동시에 신청서에서 제공한 덤핑, 손해 및 덤핑과 손해의 인과관계 등의 증거를 심사한다고 결정

■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에 의해 중국목축업협회가 대표하는 닭고기제품 (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 생산량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중국 동류 제품의 50.7%, 55.1%, 56.5%, 62.5%를 차지하여 “반덤핑조례”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국내산업이 반덤핑 조사신청을 제출하는 데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동시에 신청서에는 “반덤핑조례”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한 반덤핑 조사입안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2009년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결정

- 반덤핑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며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임

■ 2010년 2월 5일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반덤핑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은 덤핑현상이 존재한다고 제8호 공고로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27일에 제51호 공고를 발표하여 2010년 9월 27일부터 반덤핑관세 징수를 결정

바. 반보조사례

1) 미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반보조 조사

● 2009년 8월 14일 중국목축업협회는 닭고기산업(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을 대표하여 상무부에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한 반보조 조사신청을 제출

- 2009년 9월 16일, 상무부는 “반보조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반보조 조사사항에 관해 미국정부에 협상요청을 제출하고 9월 25일 미국과 협상을 진행
- 2009년 9월 27일 상무부는 제75호 공고를 발표하여 “반보조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자격, 조사신청제품의 관련 상황, 중국 동류 제품의 관련 상황, 조사신청 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신청국가(지역)의 관련 상황 등을 심사했으며 동시에 신청서에서 제공한 보조, 손해 및 보조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의 증거를 심사한다고 결정
-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에 의해 중국목축업협회가 대표하는 닭고기제품 (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 생산량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중국 동류 제품의 50.7%, 55.1%, 56.5%, 62.5%를 차지하여 “반보조조례”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국내 산업이 반보조 조사신청을 제출하는 데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동시에 신청서에는 “반보조조례”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한 반보조 조사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2009년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반보조 조사를 진행한다고 결정
 - 반보조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며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임
- 2010년 4월 28일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반보조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은 보조현상이 존재한다고 제26호 공고로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27일에 제52호 공고를 발표하여 2010년 9월 27일부터 반보조관세를 징수한다고 결정

2)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해 반보조 조사

● 2010년 8월 30일 상무부는 중국전분공업협회 감자전분전문위원회가 중국 감자전분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반보조 조사신청에 의해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해 반보조 조사를 진행한다고 2010년 제48호 공고로 발표

- 2010년 8월 6일, 상무부는 “반보조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보조 조사사항에 관해 유럽정부에 협상요청을 제출하고 8월 23일에 유럽과 협상을 진행
- 상무부는 “반보조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자격, 조사신청제품의 관련 상황, 중국 동류 제품의 관현 상황, 조사신청제품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신청국가(지역)의 관련 상황 등을 심사했으며 동시에 신청서에서 제공한 보조, 손해 및 보조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의 증거를 심사
-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신청인이 “반보조조례”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국내산업이 반보조 조사신청을 제출하는 데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동시에 신청서에는 “반보조조례”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한 반보조 조사입안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2010년 8월 30일부터 유럽산 감자전분(Potato Starch)에 대해 반보조 조사를 진행한다고 결정
 - 반보조 조사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임
- 2006년 8월 18일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반덤핑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유럽산 감자전분은 덤핑현상이 존재한다고 제60호 공고로 발표했으며 2007년 2월 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고 결정



참고 : 2010년 중국 주요 농수산물 관세율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 03.01 | 활어 | | | | | | |
| 0301.1000 | ·관상어 | 17.5 | 80 | 13 | 5 | kg/ 마리 | |
| | ·기타 활어 | | | | | | |
| | ·송어 | | | | | | |
| 0301.9110 | ·치어 | 0 | 0 | 13 | 5 | kg | AB |
| 0301.9190 | ·기타 | 10.5 | 40 | 13 | 5 | kg | AB |
| | ·뱀장어 | | | | | | |
| 0301.9210 | ·치어 | 0 | 0 | 13 | | kg | |
| 0301.9290 | ·기타 | 10 | 40 | 13 | 5 | kg | |
| | ·잉어 | | | | | | |
| 0301.9310 | ·치어 | 0 | 0 | 13 | | kg | |
| 0301.9390 | ·기타 | 10.5 | 40 | 13 | | kg | |
| | ·참다랑어 | | | | | | |
| 0301.9410 | ·치어 | 0 | 0 | 13 | 5 | kg | AB |
| 0301.9490 | ·기타 | 10.5 | 40 | 13 | 5 | kg | AB |
| | ·남부 참다랑어 | | | | | | |
| 0301.9510 | ·치어 | 0 | 0 | 13 | 5 | kg | AB |
| 0301.9590 | ·기타 | 10.5 | 4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 ·치어 | | | | | | |
| 0301.9911 | ·농어의 것 | 0 | 0 | 13 | 5 | kg | AB |
| 0301.9912 | ·철갑상어의 것 | 0 | 0 | 13 | 5 | kg | ABFE |
| 0301.9919 | ·기타 | 0 | 0 | 13 | | kg | |
| | ·기타 | | | | | | |
| 0301.9991 | ·틸라피아 | 10.5 | 40 | 13 | 5 | kg | AB |
| 0301.9992 | ·복어 | 10.5 | 40 | 13 | 5 | kg | AB |
| 0301.9999 | ·기타 활어 | 10.5 | 40 | 13 | | kg | |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 | | | | | | |
| | ·연어(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2.1100 | ·송어 | 12 | 40 | 13 | 5 | kg | AB |
| | ·태평양 연어, 대서양 연어 및 다뉴브 연어 | | | | | | |
| 0302.1210 | ·대서양연어 | 10 | 40 | 13 | 5 | kg | AB |
| 0302.1220 | ·태평양 연어 및 다뉴브 연어 | 10 | 40 | 13 | 5 | kg | AB |
| 0302.1900 | ·기타 | 12 | 40 | 13 | 5 | kg | |
| | ·넙치류(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302,2100 | ··넙치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2200 | ··가자미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2300 | ··서대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2900 | ··기타 | 12 | 40 | 13 | 5 | kg | AB |
| | ·다랑어, 가다랑어(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2,3100 | ··날개다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3200 | ··황다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3300 | ··가다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3400 | ··눈다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3500 | ··참다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3600 | ··남방 참다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3900 | ··기타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4000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5000 | ·대구(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12 | 40 | 13 | 5 | kg | AB |
| | ·기타 어류(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2,6100 |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팅 또는 스프랫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200 | ··해덕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300 | ··검정대구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400 | ··고등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500 | ··곱상어 및 기타 상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600 | ··뱀장어 | 12 | 40 | 13 | 5 | kg | |
| 0302,6700 | ··철갑상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800 | ··남극 치어 | 12 | 4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2,6910 | ··갈치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920 | ··민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930 | ··병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940 | ··틸라피아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950 | ··복어 | 12 | 40 | 13 | 5 | kg | AB |
| 0302,6990 | ··기타 | 12 | 40 | 13 | | kg | |
| 0302,7000 | ·간장 및 어란 | 12 | 50 | 13 | | kg | |
| 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 | | | | | | |
| | ·태평양 연어(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3,1100 | ··홍연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1900 | ··기타 | 10 | 40 | 13 | 13 | kg | AB |
| | ·기타 연어(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3,2100 | ··송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 ··대서양연어와 다뉴브연어 | | | | | | |
| 0303,2210 | ··대서양연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2220 | ··다뉴브연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303,2900 | ·기타 | 10 | 40 | 13 | 5 | kg | |
| | ·넙치(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 ·넙치 | | | | | | |
| 0303,3110 | ·...그리인랜드 넙치 | 5 | 40 | 13 | 13 | kg | AB |
| 0303,3190 | ·...기타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3200 | ·가자미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3300 | ·서대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3900 | ·기타 | 10 | 40 | 13 | 13 | kg | AB |
| | ·다랑어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3,4100 | ·날개다랑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4200 | ·황다랑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4300 | ·가다랑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4400 | ·눈다랑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4500 | ·참다랑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4600 | ·남방 참다랑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4900 | ·기타 | 12 | 40 | 13 | 13 | kg | AB |
| | ·청어, 대구(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3,5100 | ·청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5200 | ·대구 | 10 | 40 | 13 | 13 | kg | AB |
| | ·철갑상어와 치어(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3,6100 | ·철갑상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6200 | ·남극 치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 ·기타 어류(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 | | | | | | |
| 0303,7100 |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7200 | ·해덕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7300 | ·검정대구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7400 | ·고등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7500 | ·곰상어와 기타 상어 | 12 | 40 | 13 | 13 | kg | |
| 0303,7600 | ·뱀장어 | 12 | 40 | 13 | 13 | kg | |
| 0303,7700 | ·농어 | 12 | 40 | 13 | 13 | kg | AB |
| 0303,7800 | ·민대구 | 12 | 4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3,7910 | ·...갈치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7920 | ·...민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7930 | ·...병어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7940 | ·...틸라피아 | 10 | 40 | 13 | 13 | kg | AB |
| 0303,7950 | ·...기타 | 10 | 40 | 13 | | kg | |
| 0303,8000 | ·간장 및 어란 | 10 | 50 | 13 | | kg | |
| 03,04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한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 관세 환급율(%)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0304.1000 | ··철갑상어 | 12 | 70 | 13 | 5 | kg | AB |
| 0304.1200 | ··남극 치어 | 12 | 70 | 13 | 5 | kg | AB |
| 0304.1900 | ··기타 | 12 | 70 | 13 | | kg | |
| | ·냉동 피레트 | | | | | | |
| 0304.2100 | ··철갑상어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4.2200 | ··남극 치어 | 10 | 7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4.2910 | ···틸라피아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4.2990 | ···기타 | 10 | 70 | 13 | | kg | |
| | ·기타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4.9100 | ··철갑상어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4.9200 | ··남극 치어 | 10 | 70 | 13 | | kg | |
| 0304.9900 | ··기타 | | | | | | |
| 03.05 |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305.1000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10 | 80 | 13 | 13,15 | kg | AB |
| 0305.2000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 10 | 80 | 13 | | kg | |
| 0305.3000 | ·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 | 10 | 80 | 13 | | kg | |
| | ·태평양 연어, 대서양 연어 및 다뉴브 연어 | | | | | | |
| 0305.4110 | ···대서양 연어 | 14 | 80 | 13 | 13 | kg | AB |
| 0305.4120 | ···태평양 연어, 다뉴브 연어 | 14 | 80 | 13 | 13 | kg | AB |
| 0305.42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16 | 80 | 13 | 13 | kg | AB |
| 0305.4900 | ··기타 | 14 | 80 | 13 | 13 | kg | AB |
| |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 | | | | | | |
| 0305.5100 | ··대구 | 16 | 8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5.5910 | ···해마 | 2 | 20 | 13 | 13 | kg | FEAB |
| 0305.5920 | ···상어 지느러미 | 15 | 80 | 13 | 13 | kg | |
| 0305.5990 | ···기타 | 16 | 80 | 13 | | kg | |
|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 및 염수장한 어류 | | | | | | |
| 0305.61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16 | 80 | 13 | 13 | kg | AB |
| 0305.6200 | ··대구 | 16 | 80 | 13 | 13 | kg | AB |
| 0305.6300 | ··멸치 | 16 | 8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5.6910 | ···갈치 | 16 | 80 | 13 | 13 | kg | AB |
| 0305.6920 | ···민어 | 16 | 80 | 13 | 13 | kg | AB |
| 0305.6930 | ···병어 | 16 | 80 | 13 | 13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305.6940 | …틸라피아 | 16 | 80 | 13 | 13 | kg | AB |
| 0305.6990 | …기타 | 16 | 80 | 13 | | kg | |
|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 | | | | | | |
| | ·냉동한 것 | | | | | | |
| 0306.1100 | …닭새우류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6.1200 | …바다가재 | 10 | 70 | 13 | 13 | kg | AB |
| | ·새우와 참새우 | | | | | | |
| | …새우 | | | | | | |
| 0306.1311 | …탈각한 것 | 8 | 70 | 13 | 13 | kg | AB |
| 0306.1312 | …북방 분홍새우 | 5 | 70 | 13 | 13 | kg | AB |
| 0306.1319 | …기타 | 5 | 70 | 13 | 13 | kg | AB |
| | …참새우 | | | | | | |
| 0306.1321 | …탈각한 것 | 8 | 70 | 13 | 13 | kg | AB |
| 0306.1329 | …기타 | 5 | 70 | 13 | 13 | kg | AB |
| | …계 | | | | | | |
| 0306.1410 | …꽃게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6.1490 | …기타 | 10 | 70 | 13 | 13 | kg | AB |
|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담수 가재 | | | | | | |
| 0306.1911 | …탈각한 것 | 16 | 70 | 13 | 13 | kg | AB |
| 0306.1919 | …기타 | 16 | 70 | 13 | 13 | kg | AB |
| 0306.1990 | …기타 | 16 | 70 | 13 | 13 | kg | AB |
| | ·냉동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닭새우류 | | | | | | |
| 0306.2110 | …종묘 | 0 | 0 | 13 | 13 | kg | AB |
| 0306.2190 | …기타 | 15 | 70 | 13 | 13 | kg | |
| | ·바다가재 | | | | | | |
| 0306.2210 | …종묘 | 0 | 0 | 13 | 13 | kg | AB |
| 0306.2290 | …기타 | 15 | 70 | 13 | 13 | kg | |
| | ·새우와 참새우 | | | | | | |
| 0306.2310 | …종묘 | 0 | 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6.2391 | …신선, 냉장한 참새우 | 15 | 70 | 13 | 13 | kg | |
| 0306.2399 | …기타 | 12 | 70 | 13 | 13 | kg | |
| | …계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306,2410 | …종묘 | 0 | 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6,2491 | …담수 계 | 14 | 70 | 13 | 13 | kg | AB |
| 0306,2492 | …꽃게 | 14 | 70 | 13 | 13 | kg | AB |
| 0306,2493 | …기타 | 14 | 70 | 13 | 13 | kg | AB |
|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306,2910 | …종묘 | 0 | 0 | 13 | 13 | kg | AB |
| 0306,2990 | …기타 | 14 | 70 | 13 | 13,15 | kg | AB |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 | | | | |
| | ·굴 | | | | | | |
| 0307,1010 | …종묘 | 0 | 0 | 13 | 5 | kg | AB |
| 0307,1090 | …기타 | 14 | 70 | 13 | 5 | kg | AB |
| | ·가리비 | | | | | | |
| | ..산 것과 신선, 냉장한 것 | | | | | | |
| 0307,2110 | …종묘 | 0 | 0 | 13 | 5 | kg | |
| 0307,2190 | …기타 | 14 | 70 | 13 | 5 | kg | |
| 0307,2900 | …기타 | 14 | 80 | 13 | 13 | kg | |
| | ·홍합 | | | | | | |
| | ..산 것과 신선, 냉장한 것 | | | | | | |
| 0307,3110 | …종묘 | 0 | 0 | 13 | 5 | kg | AB |
| 0307,3190 | …기타 | 14 | 70 | 13 | 5 | kg | |
| 0307,3900 | …기타 | 14 | 80 | 13 | 13 | kg | |
| | ·갑오징어와 오징어 | | | | | | |
| | ..산 것과 신선, 냉장한 것 | | | | | | |
| 0307,4110 | …종묘 | 0 | 0 | 13 | 5 | kg | AB |
| 0307,4190 | …기타 | 12 | 70 | 13 | 5 | kg | AB |
| 0307,4900 | …기타 | 12 | 70 | 13 | 13 | kg | AB |
| | ·문어 | | | | | | |
| 0307,5110 | ..산 것과 신선, 냉장한 것 | 17 | 70 | 13 | 5 | kg | |
| 0307,5900 | …기타 | 17 | 70 | 13 | 5 | kg | AB |
| | ·달팽이와 소라 | | | | | | |
| 0307,6010 | …종묘 | 0 | 0 | 13 | | kg | |
| 0307,6090 | …기타 | 14 | 70 | 13 | | kg | |
| |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산 것과 신선, 냉장한 것 | | | | | | |
| 0307.9110 | ··종묘 | 0 | 0 | 13 | | kg | |
| | ··기타 | | | | | | |
| 0307.9191 | ···전복 | 14 | 80 | 13 | 5 | kg | AB |
| 0307.9192 | ···갯지렁이 | 14 | 70 | 13 | 5 | kg | AB |
| 0307.9193 | ···대합조개 | 14 | 70 | 13 | 5 | kg | AB |
| 0307.9199 | ···기타 | 14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307.9910 | ··전복 | 10 | 80 | 13 | 13 | kg | |
| 0307.9920 | ··해삼 | 10 | 80 | 13 | 13 | kg | |
| 0307.9930 | ··대합조개 | 10 | 70 | 13 | 13 | kg | AB |
| 0307.9990 | ··기타 | 10 | 70 | 13 | | kg | |
| 제4류 |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 | | |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401.1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 15 | 40 | 17 | 5,15 | kg | AB |
| 0401.2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 15 | 40 | 17 | 5,15 | kg | AB |
| 0401.3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15 | 40 | 17 | 5,15 | kg | AB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402.1000 |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 10 | 40 | 17 | 15 | kg | 7AB |
| |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 | | | | |
| 0402.210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10 | 40 | 17 | 15 | kg | 7AB |
| 0402.2900 | ·기타 | 10 | 90 | 17 | 15 | kg | 7AB |
| | ·기타 | | | | | | |
| 0402.910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10 | 90 | 17 | 5,15 | kg | AB |
| 0402.9900 | ·기타 | 10 | 90 | 17 | 5,15 | kg | AB |
| 04.03 |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 첨가여부를 불문) | | | | | | |
| 0403.1000 | ·요구르트 | 10 | 90 | 17 | 15 | kg | AB |
| 0403.9000 | ·기타 | 20 | 90 | 17 | 15 | kg | AB |
| 04.04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여부를 불문)과 따로 분류 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여부를 불문) | | | | | | |
| 0404.1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 6 | 30 | 17 | 15 | kg | 7AB |
| 0404.9000 | ·기타 | 20 | 90 | 17 | 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4.05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 | | | | | |
| 0405.1000 | ·버터 | 10 | 90 | 17 | 15 | kg | AB |
|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 | 10 | 90 | 17 | 15 | kg | AB |
| 0405.9000 | ·기타 | 10 | 90 | 17 | 15 | kg | AB |
| 04.06 | 치즈와 커드 | | | | | | |
| 0406.100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와 커드 | 12 | 90 | 17 | 15 | kg | AB |
| 0406.200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 12 | 90 | 17 | 15 | kg | AB |
|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 | 12 | 90 | 17 | 15 | kg | AB |
|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 | 15 | 90 | 17 | 15 | kg | AB |
| 0406.9000 | ·기타 치즈 | 12 | 90 | 17 | 15 | kg | AB |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407.0010 | ·부화 조란 | 0 | 0 | 13 | | kg/개 | |
| | ·기타 껍질이 붙은 신선한 조란 | | | | | | |
| 0407.0021 | ·계란 | 20 | 80 | 13 | 5 | kg/개 | AB |
| 0407.0022 | ·오리알 | 20 | 80 | 13 | 5 | kg/개 | AB |
| 0407.0023 | ·거위알 | 20 | 80 | 13 | 5 | kg/개 | AB |
| 0407.0029 | ·기타 | 20 | 80 | 13 | | kg/개 | |
| | ·기타 | | | | | | |
| 0407.0091 | ·절인 조란 | 20 | 90 | 13 | 5 | kg/개 | AB |
| 0407.0092 | ·송화단 | 20 | 90 | 13 | 5 | kg/개 | AB |
| 0407.0099 | ·기타 | 20 | 90 | 13 | | kg/개 | |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여부를 불문) | | | | | | |
| | ·난황 | | | | | | |
| 0408.1100 | ·건조한 것 | 20 | 90 | 13 | 5,15 | kg | AB |
| 0408.1900 | ·기타 | 20 | 9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408.9100 | ·건조한 것 | 20 | 90 | 13 | 5,15 | kg | AB |
| 0408.9900 | ·기타 | 20 | 90 | 13 | 5,15 | kg | AB |
| 04.09 | 천연벌꿀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409.0000 | ·천연벌꿀 | 15 | 80 | 13 | 5 | kg | AB |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 | | | |
| 0410.0010 | ·...살랑개 동우리 | 25 | 80 | 17 | 5 | kg | AB |
| | ·...꿀벌제품 | | | | | | |
| 0410.0041 | ·...선선한 로얄제리 | 15 | 70 | 13 | 5 | kg | AB |
| 0410.0042 | ·...선선한 로얄제리분 | 15 | 70 | 17 | 5 | kg | AB |
| 0410.0043 | ·...밀랍분 | 20 | 70 | 17 | 5 | kg | AB |
| 0410.0049 | ·...기타 | 20 | 70 | 17 | 5 | kg | AB |
| 0410.0090 | ·...기타 | 20 | 70 | 17 | | kg |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 | | | | | |
| 06.01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212호의 뿌리를 제외) | | | | | | |
|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 | | | | | |
| 0601.1010 | ·...암술머리 크로커스 구경 | 4 | 14 | 13 | 5 | 개/kg | AB |
| | ·...백합화 구경 | | | | | | |
| 0601.1021 | ·...종자용 | 0 | 0 | 13 | | 개/kg | AB |
| 0601.1029 | ·...기타 | 5 | 40 | 13 | 5 | 개/kg | AB |
| | ·...기타 | | | | | | |
| 0601.1091 | ·...종자용 | 0 | 0 | 13 | | 개/kg | |
| 0601.1099 | ·...기타 | 5 | 40 | 13 | | 개/kg | |
| 0601.2000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 15 | 80 | 13 | | 개/kg | |
| 06.02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 | | | | | |
| 0602.1000 |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 0 | 0 | 13 | | 포기/kg | |
| | ·식용과일 또는 식용견과의 나무, 관목(접목 여부를 불문) | | | | | | |
| 0602.2010 | ·...종묘 | 0 | 0 | 13 | 5 | 포기/kg | AB |
| 0602.2090 | ·...기타 | 10 | 80 | 13 | 5 | 포기/kg | AB |
| |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 여부를 불문) | | | | | | |
| 0602.3010 | ·...종묘 | 0 | 0 | 13 | 5 | 포기/kg | AB |
| 0602.3090 | ·...기타 | 15 | 80 | 13 | 5 | 포기/kg | AB |
| | ·장미(접목 여부를 불문)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602,4010 | …종묘 | 0 | 0 | 13 | 5 | 포기/ kg | AB |
| 0602,4090 | …기타 | 15 | 80 | 13 | 5 | 포기/ kg | AB |
| | ·기타 | | | | | | |
| 0602,9010 | …버섯의 종균 | 0 | 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602,9091 | …종묘 | 0 | 0 | 13 | | 포기/ kg | |
| 0602,9092 | …난초 | 10 | 80 | 13 | 5 | 포기/ kg | AFEB |
| 0602,9093 | …국화 | 10 | 80 | 13 | 5 | 포기/ kg | AB |
| 0602,9094 | …백합 | 10 | 80 | 13 | 5 | 포기/ kg | |
| 0602,9095 | …카네이션 | 10 | 80 | 13 | 5 | 포기/ kg | AB |
| 0602,9099 | …기타 | 10 | 80 | 13 | | 포기/ kg | |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신선한 것 | | | | | | |
| 0603,1000 | ·장미 | 10 | 100 | 13 | 5 | kg | AB |
| 0603,1200 | ·카네이션 | 10 | 100 | 13 | 5 | kg | AB |
| 0603,1300 | ·난초 | 10 | 100 | 13 | 5 | kg | AB |
| 0603,1400 | ·국화 | 10 | 10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603,1910 | ·백합화 | 10 | 100 | 13 | 5 | kg | AB |
| 0603,1990 | ·기타 | 10 | 100 | 13 | | kg | AB |
| 0603,9000 | ·기타 | 23 | 100 | 17 | | kg | |
| 06.04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604,1000 | ·이끼와 지의 | 23 | 10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604,9100 | ·신선한 것 | 10 | 100 | 13 | | kg | |
| 0604,9900 | ·기타 | 10 | 100 | 17 | | kg | |
|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 | | | | |
| 07.01 | 신선 또는 냉장한 감자 | | | | | | |
| 0701,1000 | ·총자용 | 13 | 70 | 13 | 5 | kg | AB |
| 0701,900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07.02 | 신선 또는 냉장한 토마토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702.0000 | 신선 또는 냉장한 토마토 | 13 | 70 | 13 | 5 | kg | AB |
| 07.03 |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양파와 쪽파 | | | | | | |
| 0703.1010 | ··양파 | 13 | 70 | 13 | 5 | kg | AB |
| 0703.1020 | ··쪽파 | 13 | 70 | 13 | 5 | kg | |
| | ·마늘 | | | | | | |
| 0703.2010 | ··통 마늘 | 13 | 70 | 13 | 5 | kg | AB |
| 0703.2020 | ··마늘대 및 마늘 종대(꽃마늘) | 13 | 70 | 13 | 5 | kg | AB |
| 0703.209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 | | | | | |
| 0703.9010 | ··리크 | 13 | 70 | 13 | 5 | kg | AB |
| 0703.9020 | ··대파 | 13 | 70 | 13 | 5 | kg | AB |
| 0703.9090 | ·기타 파속채소 | 13 | 70 | 13 | 5 | kg | AB |
| 07.04 | 신선, 냉장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704.1000 |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 10 | 70 | 13 | 5 | kg | |
|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 13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704.9010 | ··양배추 | 13 | 70 | 13 | 5 | kg | AB |
| 0704.9020 | ··브로콜리 | 13 | 70 | 13 | 5 | kg | AB |
| 0704.909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
| 07.05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상추 | | | | | | |
| 0705.1100 | ··결구 상추 | 10 | 70 | 13 | 5 | kg | AB |
| 0705.1900 | ··기타 상추 | 10 | 70 | 13 | 5 | kg | AB |
| | ·치커리 | | | | | | |
| 0705.2100 | ··위트루우프 꽃상추 | 13 | 70 | 13 | 5 | kg | AB |
| 0705.290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07.06 | 신선 또는 냉장한 당근, 순무, 샐러드용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706.1000 | ·당근 및 순무 | 13 | 70 | 13 | 5 | kg | |
| 0706.900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07.07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707.0000 | ·신선 또는 냉장한 오이 및 작은 오이 | 13 | 70 | 13 | 5 | kg | AB |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708.1000 | ·완두 | 13 | 70 | 13 | 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708,2000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 13 | 70 | 13 | 5 | kg | AB |
| 0708,9000 | ·기타 투류채소 | 13 | 70 | 13 | 5 | kg | AB |
| 07,09 | 신선 또는 냉장의 기타 채소 | | | | | | |
| 0709,1000 | ·구상의 양영경귀 | 13 | 70 | 13 | 5 | kg | AB |
| 0709,2000 | ·아스파라거스 | 13 | 70 | 13 | 5 | kg | AB |
| 0709,3000 | ·가지 | 13 | 70 | 13 | 5 | kg | AB |
| 0709,4000 | ·샐러리(샐러리악은 제외) | 10 | 70 | 13 | 5 | kg | AB |
| | ·버섯과 송로 | | | | | | |
| 0709,51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13 | 9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709,5910 | ·송이 | 13 | 90 | 13 | 5 | kg | ABE |
| 0709,5920 | ·표고버섯 | 13 | 90 | 13 | 5 | kg | AB |
| 0709,5930 | ·바늘 버섯 | 13 | 90 | 13 | 5 | kg | AB |
| 0709,5940 | ·양귀비줄기 버섯 | 13 | 90 | 13 | 5 | kg | AB |
| 0709,5950 | ·균류 버섯 | 13 | 90 | 13 | 5 | kg | AB |
| 0709,5990 | ·기타 | 13 | 90 | 13 | 5 | kg | AB |
| 0709,6000 | ·고추류(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13 | 70 | 13 | 5 | kg | AB |
| 0709,7000 | ·시금치류 | 13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709,9010 | ·죽순 | 13 | 70 | 13 | 5 | kg | |
| 0709,909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
| 07,10 | 냉동 채소(조리 여부를 불문) | | | | | | |
| 0710,1000 | ·감자 | 13 | 70 | 13 | 5 | kg | AB |
|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0710,2100 | ·완두(피섬 새티범) | 13 | 70 | 13 | 5 | kg | AB |
|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 | | | | | |
| 0710,2210 | ·팻 | 13 | 70 | 13 | 5 | kg | AB |
| 0710,229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0710,290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0710,3000 | ·시금치류 | 13 | 70 | 13 | 5 | kg | AB |
| 0710,4000 | ·사탕옥수수 | 10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채소 | | | | | | |
| 0710,8010 | ·송이 | 13 | 70 | 13 | 5 | kg | ABE |
| 0710,8020 | ·마늘 줄기, 마늘 종묘 | 13 | 70 | 13 | 5 | kg | AB |
| 0710,8030 | ·통 마늘 | 13 | 70 | 13 | 5 | kg | AB |
| 0710,8090 | ·기타 | 13 | 70 | 13 | 5 | kg | |
|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 10 | 70 | 13 | 5 | kg | AB |
| 07,11 | 일시 저장 채소(직접식용 부적합한 것) | | | | | | |
| 0711,2000 | ·올리브 | 13 | 70 | 13 | 5 | kg | AB |
| 0711,4000 | ·오이류 | 13 | 70 | 13 | 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버섯과 송로 | | | | | | |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 | | | | |
| | ··염수장한 것 | | | | | | |
| 0711,5112 | ···주름버섯의 일종(식용) | 13 | 90 | 13 | 5 | kg | AB |
| 0711,5119 | ···기타 | 13 | 90 | 13 | 5 | kg | AB |
| 0711,5190 | ··기타 | 13 | 9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 ··염수장한 것 | | | | | | |
| 0711,5911 | ···송이 | 13 | 90 | 13 | 5 | kg | EAB |
| 0711,5919 | ···기타 | 13 | 90 | 13 | 5 | kg | |
| 0711,5990 | ··기타 | 13 | 90 | 13 | 5 | kg | |
| |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 | | | | | |
| | ··염수장한 것 | | | | | | |
| 0711,9031 | ···죽순 | 13 | 70 | 13 | 5 | kg | |
| 0711,9034 | ···마늘 | 13 | 70 | 13 | 5 | kg | |
| 0711,9039 | ···기타 | 13 | 70 | 13 | 5 | kg | AB |
| 0711,9039 | ··기타 | 13 | 90 | 13 | 5 | kg | AB |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 | | | | | |
| 0712,2000 | ·양파 | 13 | 80 | 13 | 5,15 | kg | AB |
| | ·버섯, 목이버섯, 젤리균류 및 송로 | | | | | | |
| 0712,31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13 | 80 | 13 | 5,15 | kg | AB |
| 0712,3200 | ··목이버섯 | 13 | 100 | 13 | 5,15 | kg | AB |
| 0712,3300 | ··젤리균류 | 13 | 90 | 13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0712,3910 | ···표고버섯 | 13 | 100 | 13 | 5,15 | kg | AB |
| 0712,3920 | ···바늘 버섯 | 13 | 100 | 13 | 5,15 | kg | AB |
| 0712,3930 | ···양귀비줄기 버섯 | 13 | 100 | 13 | 5,15 | kg | AB |
| 0712,3940 | ···Fair-ring버섯 | 13 | 100 | 13 | 5,15 | kg | AB |
| 0712,3950 | ···bolete | 13 | 100 | 13 | 5,15 | kg | AB |
| 0712,3990 | ···기타 | 13 | 100 | 13 | 5,15 | kg | |
| 0712,9010 | ···죽순 | 13 | 80 | 13 | 5,15 | kg | |
| 0712,9020 | ···고비 | 13 | 80 | 13 | 5,15 | kg | AB |
| 0712,9030 | ···원추리 | 13 | 80 | 13 | 5,15 | kg | AB |
| 0712,9040 | ···고사리 | 13 | 80 | 13 | 5,15 | kg | AB |
| 0712,9050 | ···마늘 | 13 | 80 | 17 | 5,15 | kg | |
| 0712,9060 | ···고추류 | 13 | 80 | 13 | 5,15 | kg | AB |
| 0712,9090 | ···기타 | 13 | 80 | 13 | 5,15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완두 | | | | | | |
| 0713.1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1090 | …기타 | 5 | 20 | 13 | 5 | kg | AB |
| | ·이집트 콩(가반조스) | | | | | | |
| 0713.2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2090 | …기타 | 7 | 20 | 13 | 5 | kg | AB |
|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 | | | | | |
| | …녹두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 | | | | | | |
| 0713.31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3190 | …기타 | 3 | 11 | 13 | 5 | kg | AB |
| | ·팥 | | | | | | |
| | …종자 | | | | | | |
| 0713.3211 | …팥(rice bean) | 0 | 0 | 13 | 5 | kg | AB |
| 0713.3219 | …기타 | 0 | 0 | 13 | 5 | kg | AB |
| 0713.3290 | …기타 | 3 | 14 | 13 | 5 | kg | AB |
| | ·강남콩 | | | | | | |
| 0713.33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3390 | …기타 | 7.5 | 20 | 13 | 5 | kg | AB |
| 0713.3900 | …기타 | 7 | 20 | 13 | 5 | kg | AB |
| | ·렌즈콩 | | | | | | |
| 0713.4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4090 | …기타 | 7 | 20 | 13 | 5 | kg | AB |
| | ·잠두 | | | | | | |
| 0713.5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5090 | …기타 | 7 | 2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713.9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3.9090 | …기타 | 7 | 20 | 13 | 5 | kg | AB |
| 07.14 | 매니옥·취뿌리·살렘·국야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교야자의 수 | | | | | | |
| | ·매니옥(카사바) | | | | | | |
| 0714.1010 | …신선한 것 | 10 | 30 | 13 | 5 | kg | AB |
| 0714.1020 | …건조한 것 | 5 | 30 | 13 | 5 | kg | AB |
| 0714.1030 | …냉장 또는 냉동한 것 | 10 | 80 | 13 | 5 | kg | AB |
| | ·고구마 | | | | | | |
| | …신선한 것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714.2011 | …종자 | 0 | 50 | 13 | 5 | kg | AB |
| 0714.2019 | …기타 | 13 | 50 | 13 | 5 | kg | AB |
| 0714.2020 | …건조한것 | 13 | 50 | 13 | 5 | kg | AB |
| 0714.2030 | …냉장 또는 냉동한 것 | 13 | 8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714.9010 | …마름 | 13 | 50 | 13 | 5 | kg | AB |
| | …연 | | | | | | |
| 0714.9021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714.9029 | …기타 | 13 | 50 | 13 | 5 | kg | AB |
| 0714.9030 | …토란 | 13 | 50 | 13 | 5 | kg | AB |
| 0714.9090 | …기타 | 13 | 50 | 13 | | kg |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 | | | |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 | | | | | | |
| | ·코코넛 | | | | | | |
| 0801.1100 | ..건조한 것 | 12 | 8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801.19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0801.1990 | …기타 | 12 | 80 | 13 | 5 | kg | |
| | ·브라질넛 | | | | | | |
| 0801.2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10 | 80 | 13 | 5 | kg | AB |
| 0801.2200 | ..탈각한 것 | 10 | 80 | 13 | 5 | kg | AB |
| | ·캐슈넛 | | | | | | |
| 0801.3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0 | 70 | 13 | 5 | kg | AB |
| 0801.3200 | ..탈각한 것 | 10 | 70 | 13 | 5 | kg | AB |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아몬드 | | | | | | |
| 0802.1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4 | 70 | 13 | 5 | kg | AB |
| 0802.1200 | ..탈각한 것 | 10 | 70 | 13 | 5 | kg | AB |
| | ·헤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 | | | | | |
| 0802.2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5 | 70 | 13 | 5 | kg | AB |
| 0802.2200 | ..탈각한 것 | 10 | 70 | 13 | 5 | kg | AB |
| | ·호도 | | | | | | |
| 0802.3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5 | 70 | 13 | 5 | kg | AB |
| 0802.3200 | ..탈각한 것 | 20 | 70 | 13 | 5 | kg | AB |
| | ·밤 | | | | | | |
| 0802.4010 | …밤(chinese chestnuts) | 25 | 70 | 13 | 5 | kg | AB |
| 0802.4090 | …기타 | 25 | 70 | 13 | 5 | kg | AB |
| 0802.5000 | ·피스타치오 | 5 | 70 | 13 | 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하와이 견과 | | | | | | |
| 0802.6010 | ···종자 | 0 | 70 | 13 | 5 | kg | AB |
| 0802.6090 | ···기타 | 24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802.9010 | ··빈랑나무 | 10 | 30 | 13 | 5 | kg | |
| 0802.9020 | ··은행나무 | 25 | 70 | 13 | 5 | kg | ABE |
| 0802.9030 | ··pine-nuts, shelled | 25 | 70 | 13 | | kg | |
| 0802.9090 | ··기타 | 24 | 70 | 13 | | kg | |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03.0000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10 | 40 | 13 | 5 | kg | AB |
| 08.04 |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애버카도우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04.1000 | ·대추야자 | 15 | 40 | 13 | 5 | kg | AB |
| 0804.2000 | ·무화과 | 30 | 70 | 13 | 5 | kg | AB |
| 0804.3000 | ·파인애플 | 12 | 80 | 13 | 5 | kg | AB |
| 0804.4000 | ·애버카도우 | 25 | 80 | 13 | 5 | kg | AB |
| |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 | | | | |
| 0804.5010 | ··과이버 | 15 | 80 | 13 | 5 | kg | |
| 0804.5020 | ··맹고 | 15 | 80 | 13 | 5 | kg | |
| 0804.5030 | ··맹고스틴 | 15 | 80 | 13 | 5 | kg | AB |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05.1000 | ·오렌지 | 11 | 100 | 13 | 5 | kg | AB |
| | ·감귤, 감귤류 잡종 | | | | | | |
| 0805.2010 | ··맨더린 | 12 | 100 | 13 | 5 | kg | AB |
| 0805.2020 | ··활엽맨더린 | 12 | 100 | 13 | 5 | kg | AB |
| 0805.2090 | ··기타 | 12 | 100 | 13 | 5 | kg | AB |
|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 | 12 | 100 | 13 | 5 | kg | |
| 0805.5000 | ·레몬과 라임 | 11 | 100 | 13 | 5 | kg | AB |
| 0805.9000 | ·기타 | 30 | 100 | 13 | 5 | kg | AB |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06.1000 | ·신선한 것 | 13 | 80 | 13 | 5 | kg | AB |
| 0806.1000 | ·건조한 것 | 10 | 80 | 13 | 5 | kg | AB |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 | | | | | |
| 0807.1100 | ··수박 | 25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807.1910 | ··하미과(hami melons) | 12 | 70 | 13 | 5 | kg | AB |
| 0807.1920 | ··캔털루프 및 마스크 멜론 | 12 | 70 | 13 | 5 | kg | AB |
| 0807.1990 | ··기타 | 12 | 70 | 13 | 5 | kg | AB |
| 0807.2000 | ·포포우(파파야) | 25 | 70 | 13 | 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8.08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08,1000 | ·사과 | 10 | 100 | 13 | 5 | kg | AB |
| | ·배 및 마르멜로 | | | | | | |
| | ·배 | | | | | | |
| 0808,2012 | ···鴨梨(ya pears) 및 hsueh pears | 12 | 100 | 13 | 5 | kg | AB |
| 0808,2013 | ···xiang pears | 12 | 100 | 13 | 5 | kg | AB |
| 0808,2019 | ···기타 | 10 | 100 | 13 | 5 | kg | AB |
| 0808,2020 | ···마르멜로(Quinces) | 16 | 100 | 13 | 5 | kg | AB |
| 08.09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09,1000 | ·살구 | 25 | 70 | 13 | 5 | kg | AB |
| 0809,2000 | ·버찌 | 10 | 70 | 13 | 5 | kg | AB |
| 0809,3000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10 | 70 | 13 | 5 | kg | AB |
| 0809,4000 | ·자두 및 슬로우 | 10 | 70 | 13 | 5 | kg | |
| 08.10 | 기타 신선한 과일 | | | | | | |
| 0810,1000 | ·딸기 | 14 | 80 | 13 | 5 | kg | AB |
|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다·로간베리 | 25 | 80 | 13 | 5 | kg | AB |
| 0810,4000 |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일 | 30 | 80 | 13 | 5 | kg | AB |
| 0810,5000 | ·키위프루트 | 20 | 80 | 13 | 5 | kg | AB |
| 0810,6000 | ·두리언 | 20 | 8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810,9010 | ···여지 | 30 | 80 | 13 | 5 | kg | AB |
| 0810,9020 |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 25 | 80 | 13 | 5 | kg | AB |
| 0810,9030 | ···용안(longan). | 12 | 80 | 13 | 5 | kg | AB |
| 0810,9040 | ···람부탄(rambutan) | 20 | 80 | 13 | 5 | kg | AB |
| 0810,9050 | ···번려지 | 20 | 80 | 13 | 5 | kg | AB |
| 0810,9060 | ···오렴자 | 20 | 80 | 13 | 5 | kg | AB |
| 0810,9070 | ···Lotus-Fog fruit | 20 | 80 | 13 | 5 | kg | AB |
| 0810,9080 | ···dragon fruit | 20 | 80 | 13 | 5 | kg | AB |
| 0810,9090 | ···기타 | 20 | 80 | 13 | 5 | kg | |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 여부를 불문) | | | | | | |
| 0811,1000 | ·딸기 | 30 | 80 | 13 | 5 | kg | AB |
| 0811,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다·로간베리와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 30 | 8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0811,9010 |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 | 30 | 80 | 13 | 5 | kg | AB |
| 0811,9090 | ···기타 | 30 | 80 | 13 | 5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12.1000 | ·버찌 | 30 | 80 | 13 | 5 | kg | AB |
| 0812.9000 | ·기타 | 25 | 80 | 13 | 5 | kg | |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 | |
| 0813.1000 | ·살구 | 25 | 70 | 13 | 5 | kg | AB |
| 0813.2000 | ·프룬 | 25 | 70 | 13 | 5 | kg | AB |
| 0813.3000 | ·사과 | 25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견과류 | | | | | | |
| 0813.4010 | …용안 및 용안 | 20 | 70 | 13 | 5 | kg | AB |
| 0813.4020 | …감 | 25 | 70 | 13 | 5 | kg | AB |
| 0813.4030 | …대추 | 25 | 70 | 13 | 5 | kg | AB |
| 0813.4040 | …여지 | 25 | 70 | 13 | 5 | kg | AB |
| 0813.4090 | …기타 | 25 | 70 | 13 | 5 | kg | |
| 0813.500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18 | 70 | 13 | 5 | kg | AB |
| | | | | | | | |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0814.0000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 25 | 70 | 13 | 5 | kg | AB |
| 제9류 |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 | | |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 제거 여부를 불문)·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
| | ·볶지 아니한 것 | | | | | | |
| 0901.11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8 | 50 | 17 | 5 | kg | AB |
| 0901.12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8 | 50 | 17 | 5 | kg | AB |
| | ·볶은 것 | | | | | | |
| 0901.21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15 | 80 | 17 | 15 | kg | AB |
| 0901.22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15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0901.9010 | …커피의 각과 피 | 10 | 30 | 17 | 5 | kg | AB |
| 0901.9020 |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30 | 80 | 17 | 15 | kg | AB |
| 09.02 | 차류(가향 여부를 불문) | | | | | | |
|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 | | | | | |
| 0902.1010 | …화차 | 15 | 100 | 13 | 5,15 | kg | AB |
| 0902.1090 | …기타 | 15 | 100 | 13 | 5,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 | | | | | |
| 0902.2010 | ···화차 | 15 | 100 | 13 | 5,15 | kg | AB |
| 0902.2090 | ···기타 | 15 | 100 | 13 | 5,15 | kg | AB |
|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 | | | | | |
| 0902.3010 | ···오롱차 | 15 | 100 | 13 | 5,13 | kg | AB |
| 0902.3020 | ···보이차 | 15 | 100 | 13 | 5,13 | kg | AB |
| 0902.3090 | ···기타 | 15 | 100 | 13 | 5,13 | kg | AB |
|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 | | | | |
| 0902.4010 | ···오롱차 | 15 | 100 | 13 | 5,15 | kg | AB |
| 0902.4020 | ···보이차 | 15 | 100 | 13 | 5,15 | kg | AB |
| 0902.4090 | ···기타 | 15 | 100 | 13 | 5,15 | kg | AB |
| 09.03 | 마태차 | | | | | | |
| 0903.0000 | 마태차 | 10 | 100 | 13 | 15 | kg | AB |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 | ·후추 | | | | | | |
| 0904.11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20 | 70 | 13 | 5 | kg | |
| 0904.12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20 | 70 | 13 | 15 | kg | |
| | ·후추 | | | | | | |
| 0904.2010 | ···고추(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20 | 70 | 13 | 5 | kg | |
| 0904.2020 | ···고추가루(파쇄 또는 분쇄한 것) | 20 | 70 | 13 | 15 | kg | |
| 09.05 | 바닐라두 | | | | | | |
| 0905.0000 | 바닐라두 | 15 | 50 | 13 | 5 | kg | AB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 | |
| |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 | |
| 0906.1000 | ··계피나무 | 5 | 50 | 13 | 5 | kg | AB |
| 0906.1900 | ··기타 | 5 | 50 | 13 | 5 | kg | AB |
| 0906.20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15 | 50 | 13 | 15 | kg | QAB |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 | | | | |
| 0907.0000 |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3 | 14 | 13 | 5 | kg | QAB |
| 09.08 |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 | | | | |
| 0908.1000 | ·육두구 | 8 | 30 | 13 | 5 | kg | QAB E |
| 0908.2000 | ·메이스 | 8 | 30 | 13 | 5 | kg | AEB |
| 0908.3000 | ·소두구 | 3 | 14 | 13 | 5,15 | kg | QAB E |
| 09.09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 | | | | | |
|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 | | | | | |
| 0909.1010 | ···아니스의 열매 | 20 | 90 | 13 | 5,15 | kg | Q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0909.1090 | ·기타 | 15 | 50 | 13 | 5,15 | kg | AB |
| 0909.2000 | ·코리앤더의 씨 | 15 | 50 | 13 | 5,15 | kg | AB |
| 0909.3000 | ·커민의 씨 | 15 | 50 | 13 | 5,15 | kg | AB |
| 0909.4000 | ·캐러웨이씨 | 15 | 50 | 13 | 5,15 | kg | AB |
| 0909.5000 |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 15 | 50 | 13 | 5,15 | kg | QAB |
| 09.10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암·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0910.1000 | ·생강 | 15 | 50 | 13 | 5,15 | kg | AB |
| 0910.2000 | ·샤프란 | 2 | 14 | 13 | 5,15 | kg | QAB |
| 0910.3000 | ·심황(강황) | 15 | 50 | 13 | 5,15 | kg | QAB |
| | ·기타 향신료 | | | | | | |
| 0910.9100 | ·혼합물(제9류 주1 "나"에 규정한 것) | 15 | 50 | 17 | 15 | kg | AB |
| 0910.9900 | ·기타 | 15 | 50 | 17 | 5,15 | kg | AB |
| 제10류 | 곡물 | | | | | | |
| 10.01 | 밀과 메슬린 | | | | | | |
| 1001.1000 | ·듀럼종의 밀 | T3 | T3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001.9010 | ·종자 | T3 | T3 | 13 | | kg | |
| 1001.9090 | ·기타 | T3 | T3 | 13 | | kg | |
| 10.02 | 호밀 | | | | | | |
| 1002.0010 |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002.0090 | ·기타 | 3 | 8 | 13 | | kg | AB |
| 10.03 | 보리 | | | | | | |
| 1003.0010 | ·종자 | 0 | 160 | 13 | | kg | AB |
| 1003.0090 | ·기타 | 3 | 160 | 13 | | kg | AB |
| 10.04 | 귀리 | | | | | | |
| 1004.0010 |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004.0090 | ·기타 | 2 | 8 | 13 | | kg | AB |
| 10.05 | 옥수수 | | | | | | |
| 1005.1000 | ·종자 | T3 | T3 | 13 | | kg | |
| 1005.9000 | ·기타 | T3 | T3 | 13 | | kg | |
| 10.06 |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
| | ·벼 | | | | | | |
| | ·종자 | | | | | | |
| 1006.1011 | ····렙쌀 | T3 | T3 | 13 | | kg | |
| 1006.1019 | ····기타 | T3 | T3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006.1091 | ····렙쌀 | T3 | T3 | 13 | | kg | |
| 1006.1099 | ····기타 | T3 | T3 | 13 | | kg | |
| | ·현미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006,2010 | ...엿쌀 | T3 | T3 | 13 | | kg | |
| 1006,2090 | ...기타 | T3 | T3 | 13 | | kg | |
| | ·정미(연마·광택 여부를 불문) | | | | | | |
| 1006,3010 | ...엿쌀 | T3 | T3 | 13 | | kg | |
| 1006,3090 | ...기타 | T3 | T3 | 13 | | kg | |
| | ·쇄미 | | | | | | |
| 1006,4010 | ...엿쌀 | T3 | T3 | 13 | | kg | |
| 1006,4090 | ...기타 | T3 | T3 | 13 | | kg | |
| 10,07 | 수수 | | | | | | |
| 1007,0010 |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007,0090 | ...기타 | 2 | 8 | 13 | | kg | AB |
| 10,08 |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 | | | |
| 1008,1000 | ·메밀 | 2 | 8 | 13 | | kg | AB |
| 1008,2000 | ·조 | 2 | 8 | 13 | | kg | AB |
| 1008,3000 | ·카나리시드 | 2 | 8 | 13 | 5 | kg | AB |
| | ·기타의 곡물 | | | | | | |
| 1008,9010 |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008,9090 | ...기타 | 3 | 8 | 13 | | kg | AB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선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 | | |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 | | | | |
| 1101,0000 |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T3 | T3 | 13 | | kg |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 | | | | | | |
| 1102,1000 | ·호밀가루 | 5 | 14 | 13 | | kg | AB |
| 1102,2000 | ·옥수수가루 | T3 | T3 | 13 | | kg | |
| | ·기타 | | | | | | |
| | ...쌀가루 | | | | | | |
| 1102,9011 | ...엿쌀의 것 | T3 | T3 | 13 | | kg | |
| 1102,0919 | ...기타 | T3 | T3 | 13 | | kg | |
| 1102,9090 | ·기타 | 5 | 14 | 13 | | kg | AB |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
| | ·분쇄물 및 조분 | | | | | | |
| 1103,1100 | ..밀의 것 | T3 | T3 | 13 | | kg | |
| 1103,1300 | ..옥수수의 것 | T3 | T3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103,1910 | ...귀리의 것 | 5 | 14 | 13 | | kg | AB |
| | ...쌀의 것 | | | | | | |
| 1103,1921 | ...엿쌀의 것 | T3 | T3 | 13 | | kg | |
| 1103,1929 | ...기타 | T3 | T3 | 13 | | kg | |
| 1103,1990 | ...기타 | 5 | 14 | 13 | 5 | kg | AB |
| | ·펠리트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103,2010 | …밀의 것 | T3 | T3 | 13 | | kg | |
| 1103,2090 | …기타 | 20 | 50 | 13 | 5 | kg | AB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 | | | | | |
| 1104,1200 | …귀리의 것 | 20 | 50 | 17 | | kg | AB |
| | …기타 | | | | | | |
| 1104,1910 | …보리의 것 | 20 | 50 | 17 | | kg | AB |
| 1104,1990 | …기타 | 20 | 50 | 17 | | kg | AB |
| | ·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 | | | | | |
| 1104,2200 | …귀리의 것 | 20 | 50 | 17 | | kg | AB |
| 1104,2300 | …옥수수의 것 | T3 | T3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104,2910 | …보리의 것 | 65 | 114 | 13 | | kg | AB |
| 1104,2990 | …기타 | 20 | 50 | 13 | | kg | AB |
| 1104,3000 | ·물의 배아(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20 | 50 | 17 | | kg | AB |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 | | | | |
| 1105,1000 | ·분·조분과 분말 | 15 | 50 | 17 | 15 | kg | AB |
| 1105,2000 |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15 | 50 | 17 | 15 | kg | AB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과·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 | | | | |
| 1106,1000 |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 | 10 | 30 | 17 | 15 | kg | AB |
| 1106,2000 | ·사과·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 20 | 50 | 17 | 15 | kg | AB |
| 1106,3000 | ·제8류 물품의 것 | 20 | 80 | 17 | 5,15 | kg | AB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1107,1000 | ·볶은 것 | 10 | 50 | 17 | 15 | kg | AB |
| 1107,2000 | ·볶지 아니한 것 | 10 | 50 | 17 | 15 | kg | AB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 | | | | |
| | ·전분 | | | | | | |
| 1108,1100 | …밀의 것 | 20 | 50 | 17 | | kg | AB |
| 1108,1200 | …옥수수의 것 | 20 | 50 | 17 | 5 | kg | AB |
| 1108,1300 | …감자의 것 | 15 | 50 | 17 | 15 | kg | AB |
| 1108,1400 | …매니옥(카사바)의 것 | 10 | 50 | 17 | 15 | kg | AB |
| 1108,1900 | …기타의 것 | 20 | 50 | 17 | 15 | kg | AB |
| 1108,2000 | ·이눌린 | 20 | 50 | 17 | 15 | kg | AB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 여부를 불문) | | | | | | |
| 1109,0000 | 밀의 글루텐(건조 여부를 불문) | 18 | 80 | 17 | 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 | | | |
| 12.01 | 대두(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1201.0091 | ...황대두 | 3 | 180 | 13 | | kg | 7AB |
| 1201.0092 | ...흑대두 | 3 | 180 | 13 | | kg | 7AB |
| 1201.0093 | ...청대두 | 3 | 180 | 13 | | kg | 7AB |
| 1201.0099 | ...기타 | 3 | 180 | 13 | | kg | 7AB |
| 12.02 | 낙화생(복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 | | | | |
| 1202.1010 |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202.1090 | ...기타 | 15 | 70 | 13 | | kg | AB |
| 1202.2000 | ·탈각한 것(파쇄 여부를 불문) | 15 | 70 | 13 | | kg | AB |
| 12.03 | Gopra(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1203.000 | Gopra(파쇄 여부를 불문) | 15 | 30 | 13 | 5 | kg | AB |
| 12.04 | 아마인(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1204.000 | 아마인(파쇄 여부를 불문) | 15 | 70 | 13 | 5 | kg | AB |
| 12.05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 | | | | | |
| 1205.1010 | ...종자 | 0 | 80 | 13 | | kg | 7AB |
| 1205.1090 | ...기타 | 9 | 80 | 13 | 5 | kg | 7AB |
| | ·기타 | | | | | | |
| 1205.9010 | ...종자 | 0 | 80 | 13 | | kg | 7AB |
| 1205.9090 | ...기타 | 9 | 80 | 13 | 5 | kg | 7AB |
| 12.06 | 해바라기씨(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1206.0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1206.0090 | ...기타 | 15 | 70 | 13 | 5 | kg | AB |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 여부를 불문) | | | | | | |
| | ·면실 | | | | | | |
| 1207.2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1207.2090 | ...기타 | 15 | 70 | 13 | 5 | kg | AB |
| | ·참깨 | | | | | | |
| 1207.4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1207.4090 | ...기타 | 10 | 70 | 13 | 5 | kg | AB |
| | ·겨자씨 | | | | | | |
| 1207.50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1207.5090 | ...기타 | 15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1207.9100 | ·양귀비씨 | 20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207,9910 |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1207,9991 | …시어넛(캐리트넛) | 20 | 70 | 13 | 5 | kg | AB |
| 1207,9992 | …기름야자 | 10 | 70 | 13 | 5 | kg | AB |
| 1207,9993 | …피마자 | 15 | 70 | 13 | 5 | kg | AB |
| 1207,9994 | …홍화씨 | 20 | 70 | 13 | 5 | kg | AB |
| 1207,9999 | …기타 | 10 | 70 | 13 | 5 | kg | AB |
|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거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 | | | | | | |
| 1208,1000 | ·대두분 | 9 | 70 | 17 | | kg | AB |
| 1208,9000 | ·기타 | 15 | 80 | 17 | 15 | kg | AB |
| 12,09 |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 | | | | | |
| 1209,1000 | ·사탕무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 ·사료용 식물의 종자 | | | | | | |
| 1209,2100 | ·루산 종자 | 0 | 0 | 13 | 5 | kg | AB |
| 1209,2200 | ·클로버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209,2300 | ·페스큐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209,2400 | ·켄터키블루그래스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209,2500 | ·라이그래스 종자 | 0 | 0 | 13 | | kg | AB |
| | ·기타 | | | | | | |
| 1209,2910 | …사탕무우 종자(기타 사탕무 종자를 제외.) | 0 | 0 | 13 | 5 | kg | AB |
| 1209,2990 | …기타 | 0 | 0 | 13 | | kg | AB |
| 1209,30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 0 | 0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209,9100 | ·채소 종자 | 0 | 0 | 13 | | kg | AB |
| | ·기타 | | | | | | |
| 1209,9910 | …수박 종자 | 0 | 0 | 13 | | kg | AB |
| 1209,9920 | …멜론 종자(수박 종자를 제외.) | 0 | 0 | 13 | | kg | AB |
| 1209,9990 | …기타 | 0 | 0 | 13 | | kg | |
| 12,10 |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루플린 | | | | | | |
| 1210,1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을 제외) | 20 | 50 | 17 | 15 | kg | AB |
| 1210,2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에 한한다.)와 루플린 | 10 | 50 | 17 | 15 | kg | AB |
| 12,11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여부를 불문) | | | | | | |
| | ·인삼 | | | | | | |
| 1211,2010 | …서양삼 | 7,5 | 70 | 13 | 5 | kg | AQB FE |
| 1211,2020 | …야생삼(서양삼을 제외.) | 20 | 90 | 13 | 5 | kg | ABFE |
| | …기타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211,2091 | ...신선한 것 | 20 | 50 | 13 | 5 | kg | AB |
| 1211,2099 | ...기타 | 20 | 50 | 13 | 5 | kg | ABQ |
| 1211,3000 | ·코카잎 | 9 | 50 | 13 | 5 | kg | |
| 1211,4000 | ·양귀비줄기 | 9 | 50 | 13 | 5 | kg | |
| | ·기타 | | | | | | |
| |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의 것 | | | | | | |
| 1211,9011 | ...당귀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2 | ...삼철초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3 | ...당삼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4 | ...황련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5 | ...국화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6 | ...동충하초 | 6 | 20 | 13 | 5,15 | kg | AQB E |
| 1211,9017 | ...패모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8 | ...천궁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19 | ...반하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1 | ...Radix paeoniae lactiflorae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2 | ...천마 | 6 | 20 | 13 | 5 | kg | AQB FE |
| 1211,9023 | ...Radix astragali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4 | ...대황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5 | ...백출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6 | ...지황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7 | ...flos sophorae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8 | ...두충나무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29 | ...복령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31 | ...구기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32 | ...bantaroi seeds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33 | ...침향 | 3 | 20 | 13 | 5 | kg | AQF EB |
| 1211,9034 | ...Adenophora axilliflora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35 | ...sweet wormwood herb | 6 | 20 | 13 | 5 | kg | AQB |
| 1211,9039 | ...기타 | 6 | 20 | 13 | 5 | kg | |
| 1211,9050 | ...주로 향의용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의 것 | 8 | 50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211,9091 | ...데리스뿌리와 제충국 | 3 | 11 | 13 | 5 | kg | AB |
| 1211,9099 | ...기타 | 9 | 30 | 13 |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 여부를 불문)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복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해초류와 기타 조류 | | | | | | |
| 1212,2010 | …다시마 | 20 | 70 | 13 | 5 | kg | |
| 1212,2020 | …Black moss | 20 | 70 | 13 | 5 | kg | |
| | …미역 | | | | | | |
| 1212,2031 | …건조한 것 | 15 | 70 | 13 | 5,15 | kg | AB |
| 1212,2032 | …신선한 것 | 15 | 70 | 13 | 5 | kg | AB |
| 1212,2039 | …기타 | 15 | 70 | 13 | 5,15 | kg | AB |
| | …김(해태) | | | | | | |
| 1212,2041 | …건조한 것 | 15 | 70 | 13 | 5,15 | kg | AB |
| 1212,2042 | …신선한 것 | 15 | 70 | 13 | 5 | kg | AB |
| 1212,2049 | …기타 | 15 | 70 | 13 | 5,15 | kg | AB |
| | …유케마 | | | | | | |
| 1212,2061 | …건조한 것 | 15 | 70 | 13 | 5,15 | kg | AB |
| 1212,2069 | …기타 | 15 | 70 | 13 | 5,15 | kg | AB |
| | …꼬시래기 | | | | | | |
| 1212,2071 | …건조한 것 | 15 | 70 | 13 | 5,15 | kg | AB |
| 1212,2079 | …기타 | 15 | 70 | 13 | 5,15 | kg | AB |
| 1212,2090 | …기타 | 15 | 70 | 13 | | kg | |
| | ·기타 | | | | | | |
| 1212,9100 | ·사탕무우 | 20 | 7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 …살구, 복숭아(유도 포함), 매실 또는 자두의 씨와 속살 | | | | | | |
| 1212,9911 | …쓴 살구 | 20 | 80 | 13 | 5 | kg | QAB |
| 1212,9912 | …단 살구 | 20 | 80 | 13 | 5 | kg | AB |
| 1212,9919 | …기타 | 20 | 80 | 13 | 5 | kg | AB |
| 1212,9920 | …로커스트두 | 20 | 8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1212,9991 | …검은 수박씨 | 20 | 80 | 13 | 5 | kg | AB |
| 1212,9992 | …빨간 수박씨 | 20 | 80 | 13 | 5 | kg | AB |
| 1212,9993 | …흰 수박씨 | 20 | 80 | 13 | 5 | kg | AB |
| 1212,9994 | …연꽃씨 | 20 | 80 | 13 | 5 | kg | AB |
| 1212,9995 | …사탕수수 | 20 | 70 | 13 | 5 | kg | |
| 1212,9999 | …기타 | 30 | 70 | 13 | 5 | kg | |
| 12,13 | 곡물의 껍질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여부를 불문)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213,0010 | …조제하지 않은 벚짚의 짚 | 12 | 35 | 13 | 5 | kg | AB |
| 1213,0090 | …기타 | 12 | 35 | 13 | 5 | kg | AB |
| 12,14 | 스워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 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 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 상으로 여부를 불문) | | | | | | |
| 1214,1000 |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 5 | 35 | 13 | | kg | AB |
| 1214,9000 | ·기타 | 9 | 35 | 13 | | kg | AB |
|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 | | | |
| 13,01 |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 | | | | | |
| 1301,2000 | ·아라비아 검 | 15 | 40 | 13 | 5 | kg | AB |
| | ·기타 | | | | | | |
| 1301,9010 | …Gum tranacanth | 15 | 40 | 13 | 5 | kg | AB |
| 1301,9020 | …유향, 몰약 및 dragon's blood | 3 | 17 | 13 | 5 | kg | ABQ |
| 1301,9030 | …아워 | 3 | 17 | 13 | 5 | kg | AB |
| 1301,9040 | …송진 | 15 | 45 | 13 | 5 | kg | |
| 1301,9090 | …기타 | 15 | 45 | 13 | 5 | kg | |
|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 여부를 불문) | | | | | | |
|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 | | | | | |
| 1302,1100 | ·아편 | 0 | 0 | 0 | 15 | kg | WB9 |
| 1302,1200 | ·감초의 것 | 6 | 20 | 17 | 15 | kg | 4xAB y |
| 1302,1300 | ·호프의 것 | 10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1302,1910 | ·생칠 | 20 | 90 | 17 | 5 | kg | AB |
| 1302,1920 | ·Azadirachtin | 3 | 11 | 17 | 5 | kg | AB |
| 1302,1930 | ·제충국 또는 로테논이 포함된 식물뿌리의 것 | 3 | 11 | 17 | 15 | kg | AB |
| 1302,1990 | ·기타 | 20 | 80 | 17 | | kg | |
| 1302,2000 |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20 | 80 | 17 | 15 | kg | AB |
|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 여부를 불문) | | | | | | |
| 1302,3100 | ·한천 | 10 | 80 | 17 | 15 | kg | AB |
| 1302,3200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 여부를 불문) | 15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 ·해초 및 기타 넝쿨류 제품 | | | | | | |
| 1302,3911 | ·카라기난 | 15 | 80 | 17 | 15 | kg | AB |
| 1302,3912 | ·알진 | 15 | 80 | 17 | 15 | kg | AB |
| 1302,3919 | ·기타 | 15 | 80 | 17 | 15 | kg | AB |
| 1302,3990 | ·기타 | 15 | 80 | 17 |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제외) | | | | | | |
| 1501.0000 | 돈지(라드를 포함)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제외) | 10 | 35 | 17 | 15 | kg | AB |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 | | | | | | |
| 1502.0010 | …정제하지 않은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 8 | 70 | 17 | 5 | kg | AB |
| 1502.0090 | …기타 | 8 | 70 | 17 | 15 | kg | AB |
| 15.03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탈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 | | | | |
| 1503.0000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탈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10 | 30 | 17 | 15 | kg | AB |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1504.1000 |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 12 | 30 | 17 | 15 | kg | AB |
| 1504.2000 |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 | 12 | 50 | 17 | 15 | kg | AB |
| 1504.3000 |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 14.4 | 50 | 17 | | kg | |
| 15.05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 | | | | 1 |
| 1505.0000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20 | 70 | 17 | 15 | kg | AB |
| 15.06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1506.0000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12 | 70 | 17 | 15 | kg | |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1507.1000 | ·조유(검질을 제거 여부를 불문) | 9 | 190 | 13 | | kg | 7AB |
| 1507.9000 | ·기타 | 9 | 190 | 13 | | kg | 7AB |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1 |
| 1508.1000 | ·조유 | 10 | 100 | 13 | | kg | AB |
| 1508.9000 | ·기타 | 10 | 100 | 13 | | kg | AB |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1509.1000 | ·조유 | 10 | 30 | 13 | | kg | AB |
| 1509.9000 | ·기타 | 10 | 30 | 17 | | kg | AB |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510,00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 | 10 | 30 | 17 | | kg | AB |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1511,1000 | ·조유 | 9 | 60 | 13 | | kg | 7AB |
| | ·기타 | | | | | | |
| 1511,9010 | ··Palm liquid oil(융해점이 19℃~24℃) | 9 | 60 | 13 | | kg | 7AB |
| 1511,9020 | ··Palm hard-fat(융해점이 44℃~56℃) | | 60 | 13 | | kg | AB |
| 1511,9090 | ··기타 | 9 | 60 | 17 | | kg | 7AB |
| 15,12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 | | |
| 1512,1000 | ··조유 | 9 | 160 | 13 | | kg | AB |
| 1512,1900 | ··기타 | 9 | 160 | 17 | | kg | AB |
| | ·면실유와 그 분획물 | | | | | | |
| 1512,2100 | ··조유(고시폴을 제거 여부를 불문) | 10 | 70 | 13 | | kg | AB |
| 1512,2900 | ··기타 | 10 | 70 | 17 | | kg | AB |
| 15,13 | 아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아자유와 그 분획물 | | | | | | |
| 1513,1100 | ··조유 | 9 | 40 | 13 | | kg | AB |
| 1513,1900 | ··기타 | 9 | 40 | 13 | | kg | AB |
| |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 | | | | |
| 1513,2100 | ··조유 | 9 | 40 | 13 | | kg | AB |
| 1513,2900 | ··기타 | 9 | 40 | 17 | | kg | AB |
| 15,14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 | | | | | |
| 1514,1100 | ··조유 | 9 | 170 | 13 | | kg | 7AB |
| 1514,1900 | ··기타 | 9 | 170 | 13 | | kg | 7AB |
| | ·기타 | | | | | | |
| | ··조유 | | | | | | |
| 1514,9110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 9 | 170 | 13 | | kg | 7AB |
| 1514,9190 | ··겨자유 | 9 | 170 | 13 | | kg | 7AB |
| 1514,9900 | ··기타 | 9 | 170 | 17 | | kg | 7AB |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515,1100 | ·조유 | 15 | 30 | 13 | | kg | AB |
| 1515,1900 | ·기타 | 15 | 30 | 17 | | kg | AB |
|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 | | | | |
| 1515,2100 | ·조유 | 10 | 160 | 13 | | kg | AB |
| 1515,2900 | ·기타 | 10 | 160 | 17 | | kg | AB |
|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10 | 70 | 17 | 5 | kg | AB |
|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12 | 20 | 13 | | kg | AB |
| | ·기타 | | | | | | |
| 1515,9010 |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 20 | 70 | 17 | 5 | kg | AB |
| 1515,9020 | ·Nim and its extract | 20 | 70 | 17 | 5 | kg | AB |
| 1515,9090 | ·기타 | 20 | 70 | 17 | 5 | kg | AB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드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1516,1000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5 | 70 | 17 | 5 | kg | AB |
| 1516,200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25 | 70 | 17 | | kg | AB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 | | | | | | |
| 1517,1000 | ·마가린(엑상마가린을 제외한다) | 30 | 80 | 17 | | kg | AB |
| | ·기타 | | | | | | |
| 1517,9010 | ·쇼트닝 | 25 | 70 | 13 | | kg | AB |
| 1517,9090 | ·기타 | 25 | 70 | 13 | | kg | AB |
| 15,18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1518,0000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10 | 70 | 17 | 13 | kg | AB |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 | | | | | |
| 1520,000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 8 | 50 | 17 | 13 | kg | AB |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 여부를 불문) | | | | | | |
| 1521,1000 | ·식물성 납 | 20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1521,9010 | ·밀납 | 20 | 80 | 17 | 15 | kg | AB |
| 1521,9090 | ·기타 | 20 | 80 | 17 | 15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 | | | | |
| 1522.0000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20 | 50 | 17 | 15 | kg | 9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 | |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 | | | | | |
| 1601.0010 | …천연 외피로 포장한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90 | 17 | | kg | |
| 1601.0020 | …기타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90 | 17 | | kg | |
| 1601.0030 | …소시지를 기제로 한 조제식품 | 15 | 90 | 17 | | kg |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 | | | | | |
| 1602.1000 | ·균질화한 조제품 | 15 | 90 | 17 | | kg | |
| 1602.2000 | ·동물간장의 것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100 | ·칠면조의 것 ·닭의 것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210 | ·통조림 ·기타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291 | ·…닭 가슴고기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292 | ·…닭 다리고기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299 | ·…기타 ·기타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910 | ·통조림 ·기타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3991 | ·…오리의 것 | 15 | 90 | 17 | 5,15 | kg | AB |
| 1602.3999 | ·…기타 ·돼지의 것 | 15 | 90 | 17 | 15 | kg | AB |
| 1602.4100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 15 | 90 | 17 | 15 | kg | |
| 1602.4200 | ·어깨살과 그 절단육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15 | 90 | 17 | 15 | kg | |
| 1602.4910 | ·통조림 | 15 | 90 | 17 | 15 | kg | |
| 1602.4990 | ·기타 ·소의 것 | 15 | 90 | 17 | 15 | kg | |
| 1602.5010 | ·통조림 | 12 | 90 | 17 | | kg | |
| 1602.5090 | ·기타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 12 | 90 | 17 | | kg | |
| 1602.9010 | ·통조림 | 15 | 90 | 17 | | kg | |
| 1602.9090 | ·기타 | 15 | 90 | 17 | | kg | |
|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603,0000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23 | 90 | 17 | | kg |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 | | | | |
| |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 | | | | | | |
| | ·연어 | | | | | | |
| 1604,1110 | ··대서양연어(살모살라) | 12 | 90 | 17 | 15 | kg | AB |
| 1604,1190 | ··기타 | 12 | 90 | 17 | 15 | kg | |
| 1604,1200 | ··칭어 | 12 | 90 | 17 | 15 | kg | AB |
| 1604,1300 |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킹 또는 스프릿 | 5 | 90 | 17 | 15 | kg | AB |
| 1604,1400 |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 종) | 5 | 90 | 17 | 15 | kg | AB |
| 1604,1500 | ··고등어 | 12 | 90 | 17 | 15 | kg | AB |
| 1604,1600 | ··멸치 | 12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1604,1920 | ··틸라피아 | 12 | 90 | 17 | 15 | kg | AB |
| | ··메기 | | | | | | |
| 1604,1931 | ···얼룩메기 | 12 | 90 | 17 | 15 | kg | AB |
| 1604,1939 | ···기타 | 12 | 90 | 17 | 15 | kg | AB |
| 1604,1940 | ···뱀장어 | 12 | 90 | 17 | 15 | kg | AB |
| 1604,1990 | ··기타 | 12 | 90 | 17 | 13 | kg | |
|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 | | | | |
| | ··통조림 | | | | | | |
| 1604,2011 | ···상어 지느러미 | 12 | 90 | 17 | 15 | kg | |
| 1604,2019 | ···기타 | 12 | 90 | 17 | | kg | |
| | ··기타 | | | | | | |
| 1604,2091 | ···상어 지느러미 | 12 | 90 | 17 | 15 | kg | |
| 1604,2099 | ···기타 | 12 | 90 | 17 | | kg | |
| 1604,300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12 | 90 | 17 | 15 | kg | ABFE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 1605,1000 | ·게 | 5 | 90 | 17 | 15 | kg | AB |
| 1605,2000 | ·새우와 참새우 | 5 | 90 | 17 | 15 | kg | AB |
| 1605,3000 | ·바다가재 | 5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갑각류 | | | | | | |
| | ··담수가재 | | | | | | |
| 1605,4011 | ···껍질을 벗기고 말린 새우 | 5 | 90 | 17 | 15 | kg | AB |
| 1605,4019 | ···기타 | 5 | 90 | 17 | 15 | kg | AB |
| 1605,4090 | ··기타 | 5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1605,9010 | ···해파리 | 15 | 90 | 17 | 5,15 | kg | AB |
| 1605,9020 | ···조개 | 5 | 90 | 17 | 5,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605.9090 | …기타 | 5 | 90 | 17 | | kg | |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701.1100 | …사탕수수당 | T3 | 53 | 17 | 15 | kg | |
| 1701.1200 | …사탕무당 ·기타 | T3 | 53 | 17 | 15 | kg | |
| 1701.9100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기타 | T3 | 53 | 17 | 15 | kg | |
| 1701.9910 | …과립상 설탕 | T3 | 53 | 17 | 15 | kg | |
| 1701.9920 | …최상품 백설탕 | T3 | 53 | 17 | 15 | kg | |
| 1701.9990 | …기타 | T3 | 53 | 17 | 15 | kg |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 여부를 불문) 및 캐러멜당 ·유당과 유당시럽 | | | | | | |
| 1702.1100 | …유당과 유당시럽 | 10 | 80 | 17 | 15 | kg | AB |
| 1702.1900 | …기타 | 10 | 80 | 17 | 15 | kg | AB |
|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 30 | 80 | 17 | 15 | kg | AB |
| 1702.3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것에 한한다.) | 30 | 80 | 17 | 15 | kg | BA |
|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상이고 100분의 50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전화당을 제외. | 30 | 80 | 17 | 15 | kg | BA |
|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 30 | 80 | 17 | 15 | kg | A |
| 1702.6000 |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30 | 80 | 17 | 15 | kg | BA |
| 1702.9000 |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 | 30 | 80 | 17 | 15 | kg | |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 | | | | | |
| 1703.1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 8 | 50 | 17 | 15 | kg | ABP |
| 1703.9000 | ·기타 | 8 | 50 | 17 | 15 | kg | ABP |
| 17.04 | 설탕과재(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 | | | | | | |
| 1704.1000 |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 12 | 50 | 17 | 15 | kg | AB |
| 1704.9000 | ·기타 | 10 | 50 | 17 | 15 | kg | AB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를 포함) | | | | | | |
| 1801.0000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를 포함) | 2 | 30 | 17 | 5,15 | kg | AB |
| 18.02 |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802,0000 |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10 | 30 | 17 | 5 | kg | AB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 여부를 불문) | | | | | | |
| 1803,1000 | ·탈지하지 아니한 것 | 10 | 30 | 17 | 15 | kg | AB |
| 1803,2000 | ·전부 탈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 10 | 30 | 17 | 15 | kg | AB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 | | | |
| 1804,0000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22 | 70 | 17 | 15 | kg | |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 | | | | | | |
| 1805,0000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 | 15 | 40 | 17 | 15 | kg | AB |
| 18,06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 | | | | | |
| 1806,1000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10 | 50 | 17 | 15 | kg | AB |
| 1806,2000 |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 10 | 50 | 17 | 15 | kg | AB |
| | ·기타(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806,3100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8 | 50 | 17 | 15 | kg | AB |
| 1806,3300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 10 | 50 | 17 | 15 | kg | AB |
| 1806,9000 | ·기타 | 8 | 50 | 17 | 15 | kg | AB |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 | | |
| 19,01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1901,100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15 | 40 | 17 | 15 | kg | AB |
| 1901,200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 25 | 80 | 17 | 5,15 | kg | AB |
| 1901,9000 | ·기타 | 10 | 80 | 17 | 15 | kg | AB |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타·마카로나·누들·라사그네·그노·차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와 쿠우스쿠우스(조제 여부를 불문) | | | | | | |
| |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902,1100 | ·조란을 넣은 것 | 15 | 80 | 17 | 5 | kg | AB |
| 1902,1900 | ·기타 | 15 | 80 | 17 | 5,15 | kg | AB |
| 1902,2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여부를 불문) | 15 | 80 | 17 | 5,15 | kg | AB |
| | ·기타의 파스타 | | | | | | |
| 1902,3010 | ·Rice vermicelli, cooked | 15 | 80 | 17 | 5,15 | kg | AB |
| 1902,3020 | ·녹말로 만든 당면 | 15 | 80 | 17 | 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1902,3030 | …죽석면 | 15 | 80 | 17 | 15 | kg | AB |
| 1902,3090 | …기타 | 15 | 80 | 17 | 5,15 | kg | AB |
| 1902,4000 | ·쿠우스쿠우스 | 25 | 80 | 17 | 5,15 | kg | AB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납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903,0000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납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15 | 80 | 17 | 15 | kg | AB |
| 19,04 |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납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1904,1000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품 | 25 | 80 | 17 | 15 | kg | AB |
| 1904,2000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품 | 30 | 80 | 17 | 15 | kg | AB |
| 1904,3000 | ·불거소맥 | 30 | 80 | 17 | 15 | kg | AB |
| 1904,9000 | ·기타 | 30 | 80 | 17 | 15 | kg | AB |
| 19,05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 여부 불문)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1905,1000 | ·귀리빵 | 20 | 80 | 17 | 15 | kg | A |
| 1905,2000 |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0 | 80 | 17 | 15 | kg | A |
| |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 | | | | | |
| 1905,3100 | ·스위트 비스킷 | 15 | 80 | 17 | 15 | kg | AB |
| 1905,3200 | ·와플과 웨이퍼 | 15 | 80 | 17 | 15 | kg | AB |
| 1905,4000 |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 20 | 80 | 17 | 15 | kg | AB |
| 1905,9000 | ·기타 | 20 | 80 | 17 | 15 | kg | AB |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 | | | |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 | | | |
| 2001,1000 | ·오이류 | 25 | 70 | 17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1,9000 | ·마늘 | 25 | 70 | 17 | 5,15 | kg | |
| 2001,9090 | …기타 | 25 | 70 | 17 | 5 | kg | |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 | | | | | | |
| |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 | | | | | |
| 2002,1010 | …통조림 | 19 | 80 | 17 | 15 | kg | AB |
| 2002,1090 | …기타 | 25 | 70 | 17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2,9010 | …토마토페이스트(통조림) | 20 | 80 | 17 | 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002.9090 | …기타 | 18 | 70 | 17 | 5,15 | kg | AB |
| 20.03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 | | | | | | |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 | | | | |
| | …통조림 | | | | | | |
| 2003.1011 | …작은 백버섯 | 25 | 90 | 17 | 15 | kg | AB |
| 2003.1019 | …기타 | 25 | 90 | 17 | 15 | kg | AB |
| 2003.1090 | …기타 | 25 | 90 | 17 | 5,15 | kg | AB |
| 2003.2000 | ·송로 | 25 | 90 | 17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3.9010 | …통조림 | 25 | 90 | 17 | 15 | kg | AB |
| 2003.9090 | …기타 | 25 | 90 | 17 | 5,15 | kg | AB |
| 20.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 | | | | | | |
| 2004.1000 | ·감자 | 13 | 70 | 17 | 5,15 | kg | AB |
| 2004.9000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 25 | 70 | 17 | 5,15 | kg | |
| 20.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 | | | | | | |
| 2005.1000 | ·균질화한 채소 | 25 | 70 | 17 | 15 | kg | AB |
| 2005.2000 | ·감자 | 15 | 70 | 17 | 5,15 | kg | AB |
|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 | 15 | 70 | 17 | 5,15 | kg | AB |
|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 | | | | | |
| | ·탈각한 콩 | | | | | | |
| | …통조림 | | | | | | |
| 2005.5111 | …단팔 | 25 | 70 | 17 | 15 | kg | AB |
| 2005.5119 | …기타 | 25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5.5191 | …단팔 | 25 | 70 | 17 | 5 | kg | AB |
| 2005.5199 | …기타 | 25 | 70 | 17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5.5910 | …통조림 | 25 | 80 | 17 | 15 | kg | AB |
| 2005.5990 | …기타 | 25 | 70 | 17 | 5,15 | kg | AB |
| | ·아스파라거스 | | | | | | |
| 2005.6010 | …통조림 | 25 | 80 | 17 | 15 | kg | AB |
| 2005.6090 | …기타 | 25 | 70 | 17 | 5,15 | kg | AB |
| 2005.7000 | ·올리브 | 10 | 70 | 17 | 5,15 | kg | AB |
| 2005.8000 | ·스위트 콘 | 10 | 80 | 17 | 5,15 | kg | AB |
|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죽순 | | | | | | |
| 2005.9110 | …죽순 통조림 | 25 | 80 | 17 | 15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005,9190 | …기타 | 25 | 70 | 17 | 5,15 | kg | |
| | …기타 | | | | | | |
| 2005,9910 | …Water chestnut(통조림) | 25 | 80 | 17 | 15 | kg | AB |
| 2005,9920 | …누에콩 통조림 | 25 | 80 | 17 | 15 | kg | AB |
| 2005,9940 | …갓 장아찌 | 25 | 70 | 17 | 5,15 | kg | AB |
| 2005,9950 | …절인 고사리 | 25 | 70 | 17 | 5,15 | kg | AB |
| 2005,9960 | …절인 양파 | 25 | 70 | 17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5,9991 | …통조림 | 25 | 70 | 17 | 15 | kg | AB |
| 2005,9999 | …기타 | 25 | 70 | 17 | 5,15 | kg | |
|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 | | | | |
| 2006,0010 | …꿀에 전 대추 | 30 | 90 | 17 | 15 | kg | AB |
| 2006,0020 | …감람 | 30 | 90 | 17 | 15 | kg | AB |
| 2006,0090 | …기타 | 30 | 90 | 17 | 15 | kg | |
| 20,07 |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007,1000 | ·균질화한 조제품 | 30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7,9100 | …감귤류의 과실 | 30 | 8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7,9910 | …통조림 | 5 | 80 | 17 | 15 | kg | AB |
| 2007,9990 | …기타 | 5 | 80 | 17 | 15 | kg | AB |
|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낙화생 | | | | | | |
| 2008,1110 | …땅콩(통조림) | 30 | 90 | 17 | 15 | kg | AB |
| 2008,1120 | …볶은 땅콩 | 30 | 80 | 17 | 15 | kg | AB |
| 2008,1130 | …땅콩 버터 | 30 | 90 | 17 | 15 | kg | AB |
| 2008,1190 | …기타 | 30 | 80 | 17 | 5,15 | kg | AB |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2008,1910 | …호두의 속 알맹이(통조림)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8,1920 | …기타 과일의 핵(통조림) | 13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8,1991 | …밤의 핵 | 10 | 80 | 17 | 5,15 | kg | AB |
| 2008,1992 | …참깨 | 10 | 80 | 17 | 5,15 | kg | AB |
| 2008,1999 | …기타 | 10 | 80 | 17 | | kg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파인애플 | | | | | | |
| 2008,2010 | …통조림 | 15 | 90 | 17 | 13 | kg | AB |
| 2008,2090 | …기타 | 15 | 80 | 17 | 5,15 | kg | AB |
| | ·감귤류 과실 | | | | | | |
| 2008,3010 | …통조림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8,3090 | …기타 | 20 | 80 | 17 | 5,15 | kg | AB |
| | ·배 | | | | | | |
| 2008,4010 | …통조림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8,4090 | …기타 | 20 | 80 | 17 | 5,15 | kg | AB |
| 2008,5000 | ·살구 | 20 | 90 | 17 | 5,15 | kg | AB |
| | ·앵두 | | | | | | |
| 2008,6010 | …통조림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8,6090 | …기타 | 20 | 90 | 17 | 15 | kg | AB |
| | ·복숭아 | | | | | | |
| 2008,7010 | …통조림 | 10 | 90 | 17 | 15 | kg | AB |
| 2008,7090 | …기타 | 20 | 80 | 17 | 5,15 | kg | AB |
| 2008,8000 | ·딸기 | 15 | 90 | 17 | 5,15 | kg | AB |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 | | | | | | |
| 2008,9100 | …팜 하트 | 5 | 80 | 17 | 5,15 | kg | AB |
| 2008,9200 | …혼합물 | 10 | 80 | 17 | 5,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8,9910 | …여지 통조림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8,9920 | …용안 통조림 | 15 | 80 | 17 | 15 | kg | AB |
| | …해초 및 기타 냉콜류제품 | | | | | | |
| 2008,9931 | …조미료용 김 | 15 | 90 | 17 | 15 | kg | AB |
| 2008,9932 | …절인 다시마 | 15 | 80 | 17 | 5,15 | kg | AB |
| 2008,9933 | …절인 미역 | 15 | 80 | 17 | 5,15 | kg | AB |
| 2008,9939 | …기타 | 15 | 80 | 17 | 5,15 | kg | AB |
| 2008,9990 | …기타 | 15 | 80 | 17 | 5,15 | kg | AB |
| 20,09 |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오렌지주스 | | | | | | |
| 2009,1100 | …냉동한 것 | 7,5 | 90 | 17 | 15 | kg | AB |
| 2009,1200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90 | 17 | 15 | kg | AB |
| 2009,1900 | …기타 | 30 | 90 | 17 | 15 | kg | AB |
| |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 | | | | |
| 2009,21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15 | 90 | 17 | 15 | kg | AB |
| 2009,2900 | …기타 | 15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 | | | |
| 2009,3110 | ·레몬주스 | 18 | 90 | 17 | 15 | kg | AB |
| 2009,3190 | ·기타 | 18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009,3910 | ·레몬주스 | 18 | 90 | 17 | 15 | kg | AB |
| 2009,3990 | ·기타 | 18 | 90 | 17 | 15 | kg | AB |
| | ·파인애플주스 | | | | | | |
| 2009,41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10 | 90 | 17 | 15 | kg | AB |
| 2009,4900 | ·기타 | 10 | 90 | 17 | 15 | kg | AB |
| 2009,5000 | ·토마토주스 | 30 | 80 | 17 | 15 | kg | AB |
|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 | | | | | |
| 2009,6100 |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9,6900 | ·기타 | 20 | 90 | 17 | 15 | kg | AB |
| | ·사과주스 | | | | | | |
| 2009,71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20 | 90 | 17 | 15 | kg | aAB |
| 2009,7900 | ·기타 | 20 | 90 | 17 | 15 | kg | aAB |
|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 | | | | | |
| | ·과실주스 | | | | | | |
| 2009,8012 | ·망고주스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9,8013 | ·시계포(passionfruit)주스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9,8014 | ·과바주스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9,8019 | ·기타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9,8020 | ·채소주스 | 20 | 80 | 17 | 15 | kg | AB |
| | ·혼합주스 | | | | | | |
| 2009,9010 | ·과일주스 | 20 | 90 | 17 | 15 | kg | AB |
| 2009,9090 | ·기타 | 20 | 80 | 17 | 15 | kg | AB |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 21,01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
| |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
| 2101,1100 |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17 | 130 | 17 | 15 | kg | AB |
| 2101,1200 |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30 | 130 | 17 | 15 | kg | AB |
| 2101,200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32 | 130 | 17 | 15 | kg | AB |
| 2101,3000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32 | 130 | 17 | 15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 | | | | |
| 2102.1000 | ·활성효모 | 25 | 80 | 17 | 15 | kg | AB |
| 2102.2000 | ·불활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 25 | 70 | 17 | 15 | kg | AB |
| 2102.3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25 | 70 | 17 | 15 | kg | AB |
|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 | | | | |
| 2101.1000 | ·간장 | 28 | 90 | 17 | 15 | kg | AB |
| 2101.2000 | ·토마토 케첩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 15 | 90 | 17 | 15 | kg | AB |
| 2103.3000 |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 15 | 7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103.9010 | …화학 조미료(미원) | 21 | 130 | 17 | 15 | kg | AB |
| 2103.9020 | …방향족 술(전체 체적의 44.2%~49.2% 알콜, 전체 중량의 1.5%~6% 향료, 각종 배합원료 및 전체 중량의 4%~10% 설탕을 포함) | 21 | 90 | 17 | 15 | kg | AB |
| 2103.9090 | …기타 | 21 | 90 | 17 | 15 | kg | AB |
| 21.04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품 | | | | | | |
| 2104.1000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 15 | 90 | 17 | 15 | kg | AB |
| 2104.200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품 | 32 | 90 | 17 | 15 | kg | AB |
| | | | | | | |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 여부를 불문) | | | | | | |
| 2105.0000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9 | 90 | 17 | 15 | kg | AB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 | | | | | | |
| 2106.100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 10 | 90 | 17 | 15 | kg | AB |
| | ·기타 | | | | | | |
| 2106.9010 | …탄산음료 제조용 농축물(음료베이스) | 35 | 100 | 17 | 15 | kg | AB |
| 2106.9020 | …음료 제조용 복합 알콜제품 | 20 | 180 | 17 | 15 | kg | AB |
| 2106.9030 | …로얄제리 제재 | 3 | 80 | 17 | | kg | |
| 2016.9040 | …야자주스 | 10 | 90 | 17 | 15 | kg | AB |
| 2016.9090 | …기타 | 20 | 90 | 17 | | kg | |
| 제22류 | 음료·알콜 및 식초 | | | | | | |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 | | | | |
| | ·광천수와 탄산수 | | | | | | |
| 2201.1010 | …광천수 | 20 | 90 | 17 | | L/kg | AB |
| 2201.1020 | …탄산수 | 20 | 90 | 17 | 15 | L/kg | AB |
| | ·기타 | | | | | | |
| 2201.9010 | …천연수 | 10 | 30 | 17 | | L/톤 | AB |
| 2201.9090 | …기타 | 10 | 30 | 17 | | L/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관세환급율(%) | 계량단위 | 감독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 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 | | | | | | |
| 2202.100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 20 | 100 | 17 | 15 | L/kg | AB |
| 2202.9000 | ·기타 | 35 | 100 | 17 | | L/kg | |
| 22.03 | 맥주 | | | | | | |
| 2203.0000 | 맥주 | T1 | T1 | 17 | 15 | L/kg | AB |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 | | | | | | |
| 2204.1000 | ·발포성 포도주 | 14 | 180 | 17 | 15 | L/kg | AB |
|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2204.2100 | ·2리트 및 이하 용기에 담은 것 | 14 | 180 | 17 | 15 | L/kg | AB |
| 2204.2900 | ·기타 | 20 | 180 | 17 | 15 | L/kg | |
| 2204.3000 | ·기타 포도즙 | 30 | 90 | 17 | 15 | L/kg | A |
| 22.05 | 베르뫼트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 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2205.1000 | ·2리트 및 이하 용기에 담은 것 | 65 | 180 | 17 | 15 | L/kg | AB |
| 2205.9000 | ·기타 | 65 | 180 | 17 | 15 | L/kg | AB |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 | | | | | |
|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 | | | | | |
| 2206.0010 | ·황주 | 40 | 180 | 17 | 15 | L/kg | AB |
| 2206.0090 | ·기타 | 40 | 180 | 17 | 15 | L/kg | AB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 용량을 불문한다.) | | | | | | |
| 2207.100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40 | 100 | 17 | 5 | L/kg | ABG |
| 2207.200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30 | 100 | 17 | 5 | L/kg |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2208.200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수 | 10 | 180 | 17 | 15 | L/kg | AB |
| 2208.3000 | ·위스키류 | 10 | 180 | 17 | 15 | L/kg | AB |
| 2208.4000 | ·럼 및 태피아 | 10 | 180 | 17 | 15 | L/kg | AB |
| 2208.5000 | ·진 및 제네바 | 10 | 180 | 17 | 15 | L/kg | AB |
| 2208.6000 | ·보드카 | 10 | 180 | 17 | 15 | L/kg | AB |
| 2208.7000 | ·리큐르류 및 코디얼 | 10 | 180 | 17 | 15 | L/kg | AB |
| | ·기타 | | | | | |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208.9010 | …용설란술(Tequila) | 10 | 180 | 17 | 15 | L/kg | ABFE |
| 2208.9020 | …백주 | 10 | 180 | 17 | 15 | L/kg | AB |
| 2208.9090 | …기타 | 10 | 180 | 17 | | L/kg | |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 | | | | |
| 2209.0000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20 | 70 | 17 | 15 | L/kg | AB |
|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 | |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골분과 육분 | | | | | | |
| 2301.1011 | …소와 양 성분을 포함한 것 | 2 | 11 | 13 | 15 | kg | AB |
| 2301.1019 | …기타 | 2 | 11 | 13 | 15 | kg | AB |
| 2301.1020 | …수지박 | 5 | 50 | 13 | | kg | AB |
| 2301.1090 | …기타 | 5 | 30 | 13 | | kg | AB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 | | | | |
| 2301.2010 | …사료용 어분 | 2 | 11 | 13 | | kg | AB |
| 2301.2090 | …기타 | 5 | 30 | 13 | | kg | AB |
| 23.02 |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2302.1000 | ·옥수수의 것 | 5 | 30 | 13 | | kg | AB |
| 2302.2000 | ·쌀의 것 | 5 | 30 | 13 | | kg | AB |
| 2302.3000 | ·밀의 것 | 3 | 30 | 13 | | kg | AB |
| 2302.4000 | ·기타 곡물의 것 | 5 | 30 | 13 | | kg | AB |
| 2302.5000 | ·두류 식물의 것 | 5 | 30 | 13 | | kg | AB |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2303.1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5 | 30 | 13 | | kg | AB |
| 2303.2000 |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 5 | 30 | 13 | 5.0 | kg | AB |
| 2303.3000 |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3 | 30 | 13 | | kg | AB |
| 23.04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2304.0010 | …기름 찌끼 | 5 | 30 | 13 | 13 | kg | AB |
| 2304.0090 | …기타 | 5 | 30 | 13 | 13 | kg | AB |
| 23.05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2305.0000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5 | 30 | 13 | | kg | 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가치세율(%) | 수출 관세 환급율(%)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3.06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2306.1000 | ·면실의 것 | 5 | 30 | 13 | 13 | kg | AB |
| 2306.2000 | ·아마인의 것 | 5 | 30 | 13 | 13 | kg | AB |
| 2306.3000 | ·해바라기씨의 것 | 5 | 30 | 13 | 13 | kg | AB |
|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 | | | | | |
| 2306.4100 | ·저 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 5 | 30 | 13 | 13 | kg | AB |
| 2306.4900 | ·기타 | 5 | 30 | 13 | 13 | kg | AB |
| 2306.500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5 | 30 | 13 | 13 | kg | AB |
| 2306.6000 | ·팜넛 또는 핵의 것 | 5 | 30 | 13 | 13 | kg | AB |
| 2306.9000 | ·기타 | 5 | 30 | 13 | 0,13,15 | kg | AB |
| 23.07 | 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 |
| 2307.0000 | 포도주박과 생주석 | 5 | 30 | 13 | | kg | AB |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2308.0000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 | 35 | 13 | 0,15,5 | kg | AB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 | | | | |
| |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2309.1010 | ·통조림 | 15 | 90 | 13 | 13 | kg | AB |
| 2309.1090 | ·기타 | 15 | 90 | 13 | 13 | kg | AB |
| | ·기타 | | | | | | |
| 2309.9010 | ·사료 첨가제 | 5 | 14 | 17 | 13,15 | kg | AB |
| 2309.9090 | ·기타 | 6,5 | 14 | 13 | 11 | kg | AB |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 | |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 | | | | |
|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 |
| 2401.1010 | ·烤煙(불에 쪄서 말린 담뱃잎) | 10 | 70 | 17 | 5,15 | kg | 7AB |
| 2401.1090 | ·기타 | 10 | 70 | 17 | 5 | kg | 7AB |
| |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 | | | | | | |
| 2401.2010 | ·烤煙(불에 쪄서 말린 담뱃잎) | 10 | 70 | 17 | 5,15 | kg | 7AB |
| 2401.2090 | ·기타 | 10 | 70 | 17 | 15 | kg | 7AB |
| 2401.3000 | ·담배 부산물 | 10 | 70 | 17 | 15,5 | kg | AB7 |
| 24.02 | 시가 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2402.1000 | ·시가 셔루트·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25 | 180 | 17 | | 천대/kg | 7AB |

| HS.코드 | 품목명 | 수입 세율(%) | | 부가 가치 세율 (%) | 수출 관세 환급율 (%) | 계량 단위 | 감독 조건 |
|-----------|---|----------|-----|-----------------------|------------------------|-----------|----------|
| | | 최혜국 | 일반 | | | | |
| 2402.2000 |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25 | 180 | 17 | | 천대/ kg | 7AB |
| 2402.9000 | ·기타 | 25 | 180 | 17 | | 천대/ kg | |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 | | | |
| 2403.1000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57 | 180 | 17 | 15 | kg | 7AB |
| | ·기타 | | | | | | |
| 2403.9100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 180 | 17 | 15 | kg | |
| 2403.9900 | ··기타 | 57 | 180 | 17 | 15 | kg | |

※ 비교

코드4 : 수출허가증

코드7 : 자동수입허가증

코드9 : 수입금지상품

코드A : 입국화물통관신고서

코드B : 출국화물통관신고서

코드E : 멸종위기동·식물수출허가증

코드F : 멸종위기동·식물수입허가증

코드G : 유독화학품지정수출허가증

코드Q : 수입약품통관신고서

코드t : 관세할당증명

코드x : 수출허가증(가공무역)

코드y : 수출허가증

